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12. 14 (수요일), 13:00 ~ 19: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성락, 고혜령, 김권구, 김서현, 김왕직,
류제헌, 성종상, 심정보, 이만형, 이재범,
한필원, 허창수(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2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공 개)
3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교회본부 신축	(공 개)
4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주변 터널 개설	(공 개)
5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	(공 개)
6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주차장 조성	(공 개)
7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도로 개설	(공 개)
8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홍보판 설치	(공 개)
9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덕수궁미술관 전면 계단부 보강공사	(공 개)
10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세운 3-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 개)
11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2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3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경관조명 공사	(공 개)
14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 개)
15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주변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개설	(공 개)
16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5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17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등 9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18	사적 제259호 경주 무열왕릉 등 14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19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0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1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22	사적 제239호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23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4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5	사적 제486호 창녕 비봉리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6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9개소 주변 건축 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7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8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29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0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1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32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3	사적 제32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4	사적 제129호 울주 천황산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5	사적 제421호 삼척 이승휴 두타산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6	사적 제319호 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7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8	사적 제307호 보령 성주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39	사적 제316호 서산 보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0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1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2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공 개)

43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4	사적 제400호 충주 장미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5	사적 제445호 충주 송선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6	사적 제463호 충주 누암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7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48	사적 제527호 증평 추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공 개)
49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50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주변 지열냉난방공사를 위한 굴착 공사	(공 개)
51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52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종교시설(사찰) 건립	(공 개)
53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54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55	사적 제450호 사천 늑도 유적 주변 마을내 도로 확포장 공사	(공 개)
56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층무공 유적 내외 시설물 설치	(공 개)
57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주변 도로 확포장공사	(공 개)
58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 유적 주변 다목적광장 설치	(공 개)
59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 유적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60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내 산림경영	(공 개)
61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주변 임야 개간	(공 개)
62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탐방로 등 정비	(공 개)
63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노인복지시설 증축	(공 개)
64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65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공 개)
66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진입로 개설	(공 개)
67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가축시장 조성	(공 개)
68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 오피스텔 신축	(공 개)
69	사적 제168호 원주 거둔사지 주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 개)

70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주변 축사 신축	(공 개)
71	사적 제215호 부산 금정산성 주변 고당샘 정비사업	(공 개)
【검토사항】		
72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73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검토	(공 개)
74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75	사적 제168호 원주 거둔사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76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77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수목 및 주변 환경정비 계획 검토	(공 개)
78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 검토	(공 개)
79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내 정문 정비 공사 검토	(공 개)
【보고사항】		
8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14-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I, II권역에 속하는 3필지 354m²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 문화재 위원회 10차 회의('16.10.12.)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6.10.20. (문화재청 공고 제2016-293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332필지 385,862.3m²
 - 추가지정 신청면적
 - 추가지정 : 3필지 354m²
 - 추가지정 후 면적 : 1,335필지 386,216.3m²
- (4) 지정사유
 - 풍납토성 내 II권역(핵심권역) 및 1-1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6.09.28)

- II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24-36	대	167	167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41	대	81	81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3-5	대	106	106		
합계				354	354		

2.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시·밭굴조사 결과, 가마와 퇴적구렁이 사적 지정범위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구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과 서쪽 평탄지 일대도 요지 관련 시설들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부의하는 사항임.
- 지난 10차 사적분과 회의('16.10.26.)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16.11.3.)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사적 제345호)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번지 등
- (3) 신청내용<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2필지 4,754㎡(기 지정면적 : 9필지 22,577㎡)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12필지 27,967㎡
 - 문화재청 조정(안) 4필지 15,230㎡

라. 지정조사 보고서

고창 용계리 요지 사적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6.05.19(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발굴조사에 의해 나타난 공방지 등을 사적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의 추가지정구역으로 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로 신청함.
 - 검토의견: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와 일체성을 띤 유적으로,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일원으로, 운곡저수지 북쪽에 위치하며, 삼인리의 백화양조장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약 2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는 화시산(火矢山)을 주봉으로 삼아 좌우로 형성된 산지성 구릉들의 분지 내에 자리하고, 굴치천과 운곡천의 합류 지점 일대에 위치한다.
- 고려시대 초기청자를 생산하였던 요지로 초기청자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 1983년 고창 아산댐(운곡저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조사결과, 40×80m에 걸쳐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4개의 거대한 퇴적 구릉 및 가마터, 주변의 작업장,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즉, 유적의 가장 남측에 해당하는 가마와 퇴적구릉, 그 주변에 위치하는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고, 고려시대 초기청자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퇴적구릉 사이에서 3개의 가마가 겹쳐져 발견되었는데, 가마의 길이는 각각 38m, 31m, 14m이고 폭은 1.1~1.2m 정도이다. 가마 벽과 천장은 돌과 점토를 섞어 쌓아 올렸다. 이곳에서 제작된 청자들은 대접·접시·병·탁잔들로 다양하고, 구름무늬·꽃무늬·덩쿨무늬들이 음각으로 제작되었다. 태평임술2년(太平壬戌二年, 1022)이 새겨진 기와조각이 나와 11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한 고려 전기 청자 가마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전북지방에서 가장 오랜 청자 가마터로, 12세기에 청자가마터가 부안 일대로 옮겨가기 전까지의 청자 발생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가마터이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고려청자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청자가마의 구조와 작업장 등의 건물지가 확인 되었으며 특히, 청자의 편년을 설정할 수 있는 대평임술(1022년)명의 와편이 출토 된 고려 초기 유적임.

6. 지정 대상 및 범위

- 신청면적 : 지정구역 2필지 4,757㎡, 보호구역 12필지 27,967㎡
 - 검토의견: 지자체에서는 도로 건너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신청하였으나, 도로안쪽까 지 4필지(15,230㎡) 만 보호구역을 하여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충분할 것 으로 사료됨.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문화재구역 지번 조사

- 문화재 지정구역(2필지, 면적: 4,75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아산면 용계리	산22	임야	449,484	4,202		
2	아산면 용계리	201	유지	555	555		
계				450,039	4,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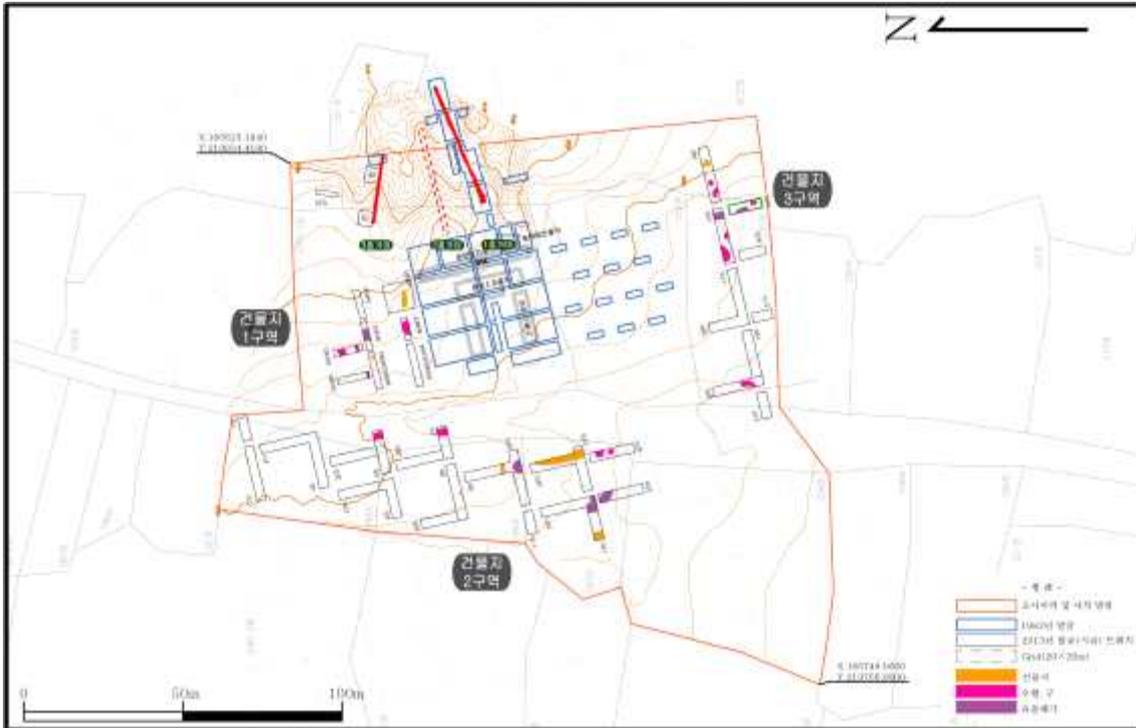
- 문화재 보호구역(12필지, 면적: 27,96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아산면 용계리	산46	임야	4,191	4,191		
2	아산면 용계리	산46-1	도	1,791	1,791		
3	아산면 용계리	산46-2	임야	7,406	7,406		
4	아산면 용계리	산47	임야	1,179	1,179		
5	아산면 용계리	산47-1	도	684	684		
6	아산면 용계리	산47-2	임	3,691	3,691		
7	아산면 용계리	산48	임	636	636		
8	아산면 용계리	산48-1	도	379	37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9	아산면 용계리	산48-2	임	1,564	1,564		
10	아산면 용계리	산49	임	2,731	2,731		
11	아산면 용계리	산49-1	도	1,146	1,146		
12	아산면 용계리	산49-2	임	2,569	2,569		
계				27,967	27,967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위치도(위성지도)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유구분포도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지적현황도



사진 1.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전경(북에서)



사진 2.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전경(서에서)



사진 3. 2013년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4. 2013년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3호가마 발굴조사(서에서)



사진 5. 2013년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및 사적경계(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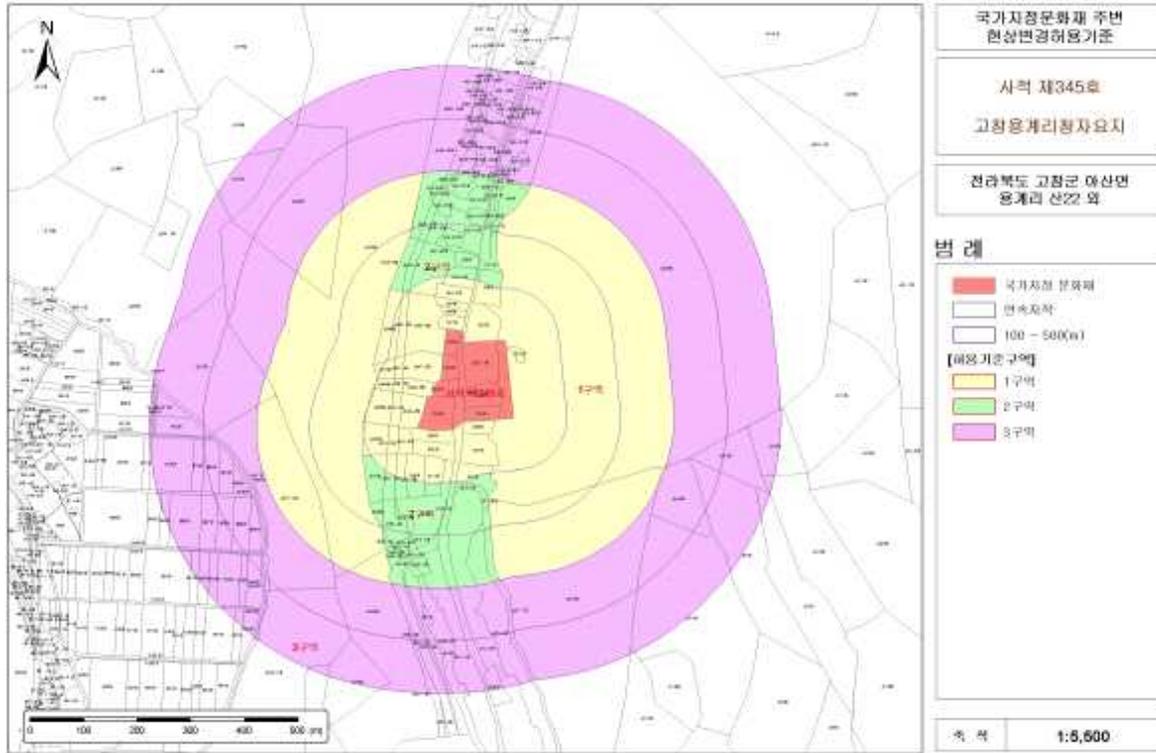


사진 6. 2013년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3호가마 및 출토유물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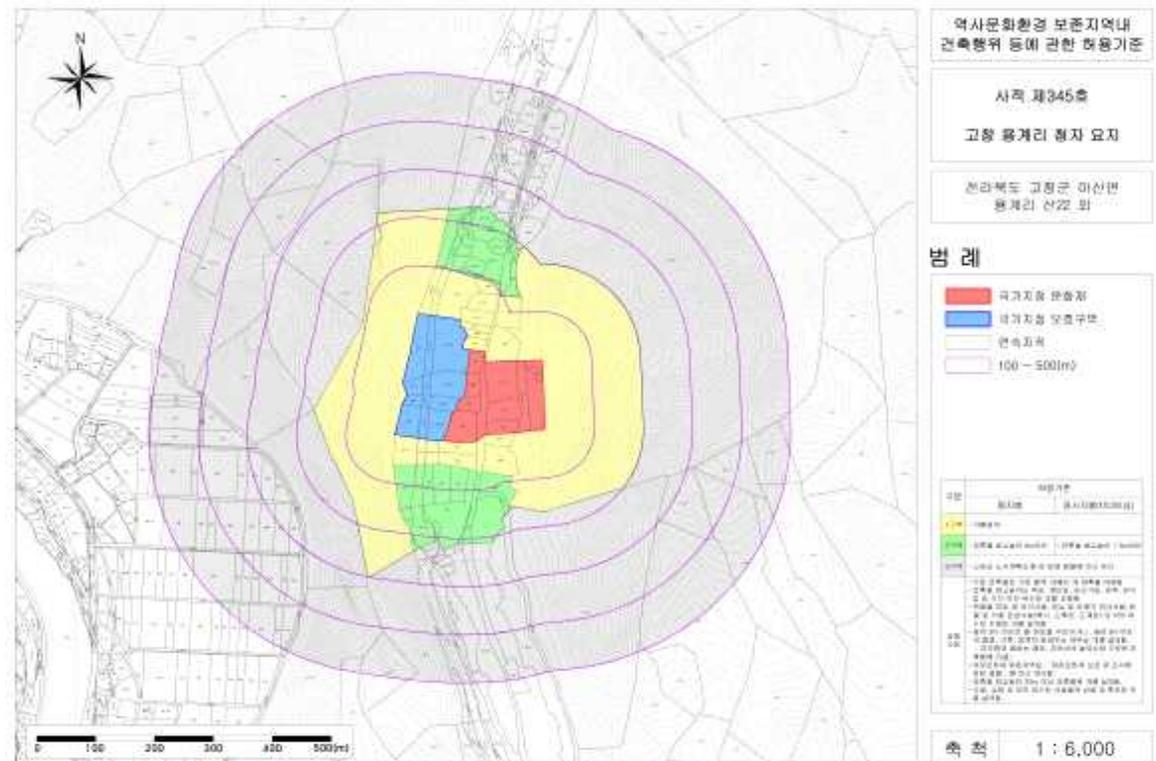
- 검토의견 : 추가지정되어 확대된 만큼 200m 범위를 유지하고 전·후변을 1구역(개별심의구역)으로 유지한다면 합리적인 허용기준이 될것임.

- 당초



본 도면은 실재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용역에 활용하려면 현장여부를 확인하여, 목적 외 이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경



본 도면은 실재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용역에 활용하려면 현장여부를 확인하여, 목적 외 이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 행위 여부 결정		
3구역	○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보존 및 활용방안

- 사적 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의 가치 재평가 및 체계적인 보존정비를 통하여 유적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증진 도모
- 주변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 및 대국민 문화 향유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 현 황

- 유 적 명 :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高敞 龍溪里 靑瓷窯址)
- 신청종별 : 사적(史蹟) 제345호(1991. 2. 21. 지정)
-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1번지 일원
- 지정면적 : 22,577㎡(9필지) / 지적측량(22,835㎡)
- 추가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4,757㎡(2필지) / 보호구역- 27,967㎡(12필지)
- 소유자·관리자(단체) : 고창군
- 유적현황 :
 - 용계리 청자요지는 1983년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유물(大平壬戌二年)로 미루어볼 때 고려 현종 13년(1022)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당시 발굴조사 결과, 갑발편 및 가마 폐기물층이 동서 40m 남북80m 규모로써 동서 방향으로 4개의 퇴적구릉을 형성하였는데, 이 중 한 개의 구릉은 동서길이 40m, 남북 폭 20m에 달함.
 - 퇴적층 서편구역은 동서 40m, 남북 약 80m 정도로 평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 대지의 서편은 약 1m의 단을 이루면서 운곡댐 입구와 통하는 도로가 놓여 있음.
 - 발굴된 가마터와 건물지는 시기와 구조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곳에서 출토된 太平壬戌二年(1022)이라고 새겨진 평기와 파편은 유적의 편년(절대연

대)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 평가되고 있음.

-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는 전라북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청자요지이자, 청자 가마와 관련 건물지 및 요지와 함께 최대의 퇴적층을 간직한 곳으로 고려시대 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임.
-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중국 월주요와 오월국(吳越國)의 도자제작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11세기 후반경 곰소만 일대의 청자요지와 관계가 추정할 수 있는 곳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 2013년도 시·발굴조사 결과, 현재의 사적범위 바깥쪽까지 가마 및 퇴적구렁이 연장됨에 따라 사적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토축요보다 이른 시기의 벽돌가마(전축요) 존재 가능성도 확인

□ 기본방침

- 발굴조사 완료된 가마 및 건물지를 비롯하여 사적지 전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복원 및 보존관리
-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와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추후 관리방안 마련
- 전시관 및 체험공간 건립 등으로 사회·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보존 및 활용계획

-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대회 개최
 - 고려 초기청자 생산 관련 요업환경 규명 및 사적의 성격과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화재 시·발굴조사 실시
 - 사적 범위 확대에 따른 사유지 매입 및 주변시설 정비(보호시설, 안내판 등)
 - 사적지를 포함하여 그 주변까지 포함한 광역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자원 활용 계획
- 전시관 및 체험공간 조성 필요
 - 운곡저수지 및 용계리 일대로는 백제 토기가마부터 조선시대 백자 가마까지 다양한 분포양상을 보임에 따라 고대부터 생산과 유통의 역할을 해 왔음
 - 고창 일대의 고려시대 청자요지에서부터 조선시대 분청사기·백자요지까지의 밀집 분포양상 및 그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창의 고려~조선시대의 많은 가마터와 관련 유물 등을 적극 알릴 수 있고, 가마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여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부각시켜 교육자료 및 관광산업으로 활용
-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인근의 죽림리 지식묘군(사적 제391호), 봉덕리고분군(사적 제531호), 서산산성(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7호) 등과 연계하여 용계리 청자요지 정비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의 문화환경까지 보존·관리·활용

9. 종합 의견

- 2013년 발굴조사를 통해 나타난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의 유적은 고려청자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청자가마의 구조와 작업장 등의 건물지가 확인되어 가마터의 전체적인 양상을 알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며, 지정에 있어서 일체화된 유적을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게다가, 청자의 편년을 설정할 수 있는 대평임술(1022년)명의 와편이 출토된 드문 고려 초기 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3.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교회본부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교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기존 교회 건물(4동)을 철거 후 신축(1동)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10.1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11.9.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원
- (3) 신청내용<철거 후 교회본부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29, 171-149(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구분	1차('16.10월) / 부결					2차('16.11월) / 부결	3차('16.12월) / 금회신청
철거 (4동)	구분	본부건물	부속1	부속2	부속3	좌동	좌동
	준공일	'63.12.8	-	-	-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높이 13.4m)	2층	1층	1층		
	건축 면적	298.9	58.8	74.2	71.8		
	계	577.9㎡					
	연면적	1,031.2	117.6	74.2	71.8		
	계	1,294.7㎡(지상층 1,280.5)					

구분	1차('16.10월) / 부결	2차('16.11월) / 부결	3차('16.12월) / 금회신청
신축 (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974.35㎡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높이 17.5m) ○ 건축면적 : 552.15㎡ ○ 연면적 : 2,759.44㎡ ○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좌동 ○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높이 13.5m) ○ 건축면적 : 578.31㎡ ○ 연면적 : 3,228.87㎡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좌동 ○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높이 13.5m) ○ 건축면적 : 572.99㎡ ○ 연면적 : 2,881.61㎡ (지상층 1,280.3)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14/문화재위원 ○○○, ○○○)

- 기존 경사지붕 건물의 높이와 매스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함
- 가능하면 지상부분의 면적이 기존건물을 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함

(2)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16.09.30, 10.31)

- 신청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별표1 양각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물 높이 계획 재검토

(3)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추가의견('16.12.05)

- 우리 시에서는 한양도성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에서 높이 3.6m를 기준하여 양각 27° 기준에 의해 건축행위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신청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양각 27° 기준에 맞지 않게 신청되어 우리 시 조례 규정에 부적합하고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 만약 조례에서 정한 양각 기준에 맞지 않게 신청된 건축물이 현상변경 허가될 경우 법규로 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높이기준을 무력화하여 향후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 등이 훼손될 우려와 양각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 양산되는 선례가 발생되어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 우리 시 조례를 준수하여 건축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내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와 우리 시 문화재 보호조례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4. 청주 상당산성 주변 터널 개설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주변에 터널을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주변에 신설할 도로의 터널을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05.4.15 조건부허가 : 문화재로부터 최대한 이격된 2안으로 검토시행할 것
 - 사업시행 연기(허가기간 만료, 재신청)
 - '16.11.23 보류 : 자료보완(단면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산성동)
- (3) 신청내용<터널 개설>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112 등{1구역(개별심의)}
 - 최단 이격거리(보호구역으로부터) : 수평 300m, 수직 273m
 - 사업내용
 -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 : 연장 5.63km, 폭 20m(왕복 4차로)
 - 터널 : 4km(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통과구간 약 1.4km, 통과깊이 273m)
 - 사업기간 : 2016~2021년
 - 공사비 : 1,822억원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진동 모니터링 계획 제출

5.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시설기준미달 도로(폭 5m)를 대체할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931
- (3) 신청내용<도로 개설>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안길 29(1구역(보존구역), 6구역(도시계획조례))
 - 사업내용(500m 이내)

구분	1안	2안	비고
허용기준	6구역(도시계획조례)	1구역(보존구역)	
최단이격 거리	270m	90m	보호구역
도로 연장	1,920m	1,130m	
도로 폭	9.5m(2차로)	9.5m(2차로)	
터널 연장	-	2개소 250m(폭 16m(4차로))	
육교	1개소 15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6.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및 내남면 용장리 등
- (3) 신청내용<주차장 조성>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132-45, 1016-9, 1132-41번지, 경북 경주시 남산동 754-2, 737-2, 1156-229, 1156-226, 1156-219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2구역, 공동사항(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사업내용 : 주차장조성 1976㎡
 - 토 공 : 터파기 512㎡, 되메우기 73㎡
 - 포장 공 : 잔디블럭 포장 A=1,976㎡, 도로 경계석 L=1,492m
 - 성토최고 높이 : 현재 도로높이와 동일
- (4) 신청인 의견
 - 산림환경연구원 주차장 협소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7.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에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부의함.
- 지난 사적분과 11차 회의('16.10.26.)에서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금회에는 노선을 지정구역 외부로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제375호)
 - 소재지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632-4 일원
- (3) 신청내용<도로 개설>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12-1 등(문화재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도로 개설(L=4.95km, B=30m, 교량 3개소, 왕복 6차로)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사업(L=1.7km, B=30m, 교량 1개소, 왕복 6차로)

구분	당초안('16.10.26.)	금회 신청안
노선연장	지정구역 280m	-
	1구역 60m	1-2구역 340m
	2-1구역 570m	2-1구역 560m
	3구역 90m	3구역 90m
	4구역 700m	4구역 710m

라.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기존도로 접속, 교량 등)

8.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홍보판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문화관광 자원 홍보 등을 위한 홍보판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 홍보판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부의하는 사항으로,
- 지난 사적분과 12차 회의('16.11.09.)에서 문화재 환경 저해 우려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금회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 일원
- (3) 신청내용<홍보판 설치>
 - 위치 : 전남 나주시 금계동 13-2(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LED 전광투광유리 홍보판

구분	당초안('16.11.9.)	금회 신청안	비고
홍보판 규격	L=15.5m, H=6.5m	L=12m, H=5.8m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 자체 자문의견('16.10.31/○○대학교 교수 ○○○, ○○○, 도 문화재전문위원 ○○○)
 - 역사문화 관광에 대한 홍보, 선양의 취지를 갖는 시설물로 문화재보호의 취지에 부합함
 -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시설로서 문화재보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 해당 문화재와 경관상 조화를 이루는 조형으로 설치 필요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환경 저해 우려

9. 덕수궁 내 덕수궁미술관 전면 계단부 보강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덕수궁미술관 전면 계단부 보강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덕수궁 내 덕수궁미술관 전면 계단부의 지반 침하 및 벽체 균열 등이 발생하여 전면계단부의 보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하였으나, 2015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재심의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 (3) 신청내용<덕수궁미술관 전면 계단부 보강공사>
 - 위치 : 덕수궁 내 미술관 전면 계단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덕수궁미술관 전면 계단과 벽체에 균열 및 이격 등이 다수 발견되어 계단부 해체 후 계단부의 지반(기초) 보강 및 벽체의 균열 등의 보수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0.12/문화재위원 ○○○, ○○○)
 - 침하, 균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입계단부의 해체가 필요함
 - 해체 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리, 보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현지조사의견('15.10.01/문화재위원 ○○○, ○○○)
 - 덕수궁미술관은 미술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으로 덕수궁미술관 전면 계단부의 남측 일부가 침하된 상태로 탐방객

들의 왕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침하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됨.

- 응급조치로 하부공극을 시멘트로 메워 기초를 보강하는 것은 문화재 보수의 근본적인 면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체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현지조사의견('15.09.02/문화재위원 ○○○)

- 덕수궁미술관 전면 계단부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초부의 부동침하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됨.
- 전면 계단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보강할 필요 있음.

(4) 추진 경과

- '15.09.09 2015년 제9차 사적분과 심의 /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 '15.10.14 2015년 제10차 사적분과 심의 / 부결(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원형 유지를 위해 전면 해체 보수가 적합)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1번의견대로 시행

10. 종묘 주변 세운 3-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세운 3-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종묘 주변 세운 3-5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사항(건축물 용도, 높이)이 있어 「세운촉진지구 구역별 협의(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항임
- ※ 2015년 제1차 합동분과(사적+세계유산, 2015.2.26.)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지하유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보존방안을 강구할 것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 1963.1.18.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2
- (3) 신청내용<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 위치 : 서울시 중구 산림동 250-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20m이격)
 - 사업내용

구분	3-5구역			비고
	1차('14.11.4.) /보류	2차('15.2.26.) /조건부가결	금차('16.12.14.)	
대지면적(m ²)	1,780.6	1,780.6	1,780.6	
연면적(m ²)	22,855.7	19,978.6	24,987.73	
규모	지하7층/지상26층, 20층	지하4층/지상20층	지하8층/지상26층	
건물높이(m) 옥탑포함	92/79.5	73	94.95	
용적률(%)	933.11	880.94	900.36	
용도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참고사항

(1) 세운 3-4~7구역 추진경과

- '14.03.27 : 서울특별시고시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4.11.04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세계유산) 심의 : 보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건축물 높이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재심의
- '15.02.03. : 현지조사 실시(문화재위원 ○○○, ○○○, ○○○, ○○○)
 - 3년여에 걸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을 통하여 세운지구 전체의 높이가 결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관련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세운 3-4~7 및 6-3-1~2 구역은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추진이 필요함
 - 세운4구역이 2014.7월 조건부 가결(종묘방향 도로변 55m, 후면 71.9m)되었고, 신청부지는 청계천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건물 등 종합적인 경관을 고려하여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신청높이를 인정하여도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일관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종로구, 중구)에 권고토록 함
 - 지하유구 보존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게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세운상가 및 각 지구별 사업이 분리되지 않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원지형을 최대한 존중하며, 녹지, 옛길, 보행로 교통 등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정비
 - 총괄건축가, 지구별 공공건축가, 세운상가 활성화 TF팀이 협력하여 권고 사항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15.02.26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세계유산) 심의 : 조건부 가결
 - 지하유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보존방안을 강구할 것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1. 고양 서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양 서오릉 주변 문화재구역과 약30m 이격된 허용기준 2구역(경사 7.5m)에 3층 높이(8.5m)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제198호)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115 외 3{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2구역(평:5m, 경사:7.5m)}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대지면적	542㎡	
건축면적	320㎡	
연면적	499㎡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경사지붕	
높이	최고높이 8.5m	
건축규모	지상3층(1층 주차장, 2층 음식점, 3층 단독주택)	

(4) 신청인 의견

- 신청지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화 된 기존 음식점을 철거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문화재 주변 도시경관을 개선 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8/문화재전문위원 ○○○, ○○○)

- 본 건물은 고양 서오릉에서 30m이격된 2구역(경사지붕 7.5m)에 건축면적:320㎡, 연면적:499㎡, 높이:8.5m의 3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변 현황이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건축이 되고 있는 점과 문화재에서 바라볼 때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는 7.5m의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단, 지붕 등을 포함한 건축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제안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높이 7.5m로 조정할 것

12.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허용기준 6구역에 화성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위원회 심의('09.7월)에서 허가 받은 사항임
- 본 건은 지난 사적분과위원회('16.11월)에서 “초장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추가 확보, 한옥호텔 및 한옥마을에 대한 규모 조정 필요” 사유로 부결 되었으며,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 심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 (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문화재구역과 연결 /6구역(신축불가,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

○ 사업내용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허가('09.7.13)		금회 신청		증 감		
		면적(m ²)	(%)	면적(m ²)	(%)			
합계		1,188,438.6	100.0	1,188,438.6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73,769.1	23.0	321,481.0	27.1	증	48,465.9	
	단독주택(일반)	68,566.0	5.8	57,581.0	4.8	감	-10,985.0	
	단독주택(한옥)	-	-	34,682.0	2.9	증	34,682.0	
	공동주택용지	203,570.7	17.1	226,652.0	19.1	증	23,081.3	
	근린생활시설	1,632.4	0.1	2,566.0	0.2	증	933.6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14,669.5	77.0	866,957.6	72.9	감	-48,465.9	
	상업 · 업무	소계	21,685.6	1.8	52,259.0	4.4	증	30,573.4
		준주거용지	-	-	10,692.0	0.9	증	10,692.0
		상업시설용지	21,685.6	1.8	11,331.0	1.0	감	-10,354.6
		숙박시설용지	-	-	30,236.0	2.5	증	30,236.0
	종교시설	-	-	16,597.0	1.4	증	16,597.0	
	문화시설	62,759.7	5.3	-	-	감	-62,759.7	
	공원 · 녹지	소계	546,364.0	46.0	483,799.0	40.7	감	-61,013.0
		근린공원	47,589.8	4.0	321,101.0	27.0	증	273,511.2
		역사공원	19,249.6	1.6	116,953.0	9.8	증	97,703.4
		어린이공원	12,846.3	1.1	1,863.0	0.2	감	-9,431.3
		소공원	-	-	989.0	0.1	증	989.0
		주제공원	411,524.3	34.6	-	-	감	-411,524.3
		완충녹지	24,967.2	2.1	32,810.0	2.8	증	7,842.8
		연결녹지	-	-	10,083.0	0.8	증	10,083.0
		경관녹지	30,186.8	2.5	-	-	감	-30,186.8
	교육 시설	소계	42,716.1	3.6	31,243.0	2.6	감	-11,473.1
		유치원	3,966.8	0.3	3,358.0	0.3	감	-608.8
		초등학교	12,341.7	1.0	15,037.0	1.3	증	2,695.3
		중학교	13,053.2	1.1	12,848.0	1.1	감	-205.2
		고등학교	13,354.4	1.2	-	-	감	-13,354.4
	광장	-	-	2,392.0	0.2	증	2,392.0	
	공공공지	-	-	12,152.0	1.0	증	12,152.0	
	주차장	8,461.3	0.7	8,304.0	0.7	감	-157.3	
	공공청사	2,439.5	0.2	-	-	감	-2,439.5	
	저류지	26,594.3	2.2	29,674.0	2.5	증	3,079.7	
	하천(소하천)	22,977.4	1.9	13,078.0	1.1	감	-9,899.4	
도로	소계	180,671.6	15.2	217,459.6	18.3	증	36,788.0	
	도로	161,995.9	13.6	206,142.6	17.3	증	44,146	
	보행자전용도로	18,675.7	1.6	11,317.0	1.0	감	-7,358.7	

<시설별 건축 계획>

구 분		면적(m ²)(세대수, 층수)		비 고	
		기 허가('09.7.13)	금회 신청		
면적 합계		411,831.5	442,819.0	증 30,987.5	
총 세대수		3,356세대	4,215세대	증 859세대	
500m 내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12,111.4 (90세대, 5층이하)	16,395.0 (130세대, 5층이하)	증 4,238.6(40세대)
		단독주택	68,566.0 (179세대, 2~3층)	92,263.0 (335세대, 2~4층)	증 23,697(156세대)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11,807.6 (6층이하)	-	감 11,807.6
		문화시설	62,759.7 (2층 이하)	-	감 62,759.7
		준주거용지	-	10,692.0 (5층이하)	증 10,692.0
		초등학교	12,341.8 (4층 이하)	15,037.0 (5층)	증 2,695.2
		중학교	13,053.2 (4층 이하)	12,848.0 (5층)	감 205.2
		고등학교	13,354.4 (5층 이하)	-	감 13,354.4
		유치원	3,966.8 (3층 이하)	3,358.0 (4층)	감 608.8
		근린생활시설	1,632.4 (2~3층)	2,566.0 (3층이하)	증 933.6
		공공청사	2,439.5 (2~3층)	-	감 2,439.5
		종교용지	-	16,597.0 (3층이하)	증 16,597.0
		숙박시설 (한옥)	-	30,236.0 (4층이하)	증 30,236.0
		주차장	7,388.3 (3~6층)	6,763.0 (3~5층이하)	감 625.3
500m 밖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191,459.4 (3,087세대, 15층이하)	210,257.0 (3,750세대, 8~15층이하)	증 18,797.6 (663세대)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9,878.0 (6층이하)	11,331 (6층이하)
	주차장	1,073.0 (6층이하)	1,540.0 (6층이하)	증 467.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2./문화재위원 ○○○, ○○○, ○○○)

- 상기 안은 '09년 7월 조정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09년 현상변경 이후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 현황과 계획이 비교될 수 있는 상세한 자료제출이 요구됨.
- 용건릉 동쪽 현황 능선(지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상세히 수립하고, 초장지 관련 유적을 온전히 보존하되, '09년 현상변경 허가 받은 사항을 존중하여 변경 사항에 대해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경과

- 지표조사('00.8), 시굴('02.4~7) 및 발굴 실시('05.9~'07.2)
 - 발굴결과, 정조 초장 관련 재실터 등 건물유적 확인
- '04.12.18 현상변경허가 / 용건릉과 용주사를 잇는 옛길 보존
- '07.10.26. 매장문화재분과 회의/ 1, 3지점을 연결하여 사적 지정토록 권고
- '07.11.23. 매장문화재분과 회의/ 사적분과와 합동현지조사 실시 후 결정토록 함
 - 합동조사 결과, 1, 3지점은 역사공원 조성 및 녹지동선 개설 등 초장 관련 지역은 보존 및 택지개발이 가능한 절충안 제시
- '08. 3월 '효테마공원'이 국정과제 포함(문화체육관광부 추진)
 - 총 36만평 중 효테마공원 17만평 조성 확정('08.5월 이후)
- '09.2.24 총리실(국무차장) 주재 관계기관 조정회의 개최
 - ※ 회의결과 : 주공 손실분(870억)은 화성시(174억), 주공(265억), 경기도(431억)가 분담토록 함
- '09.5.18 현상변경 허가기간 만료('08.12.31)로 재신청(LH 공사)
- '09.7.13 현상변경 재허가
- '13.3.8 현상변경 허가기간 연장('04.12.18~'18.12.31)
- '13.11.20 사적추가지정 민원 관련 전문가 현지조사(민원제기/경기문화연대)
 - 조사결과
 - 재실터, (추정)정자각터, 건물지는 보존조치
 - 정조 초장지와 만년재에 이르는 역사문화환경이 보존될 필요있음. 기허가 받은 사업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태안3지구 전체 사업권역 내에서 재배치 하여 소화시키도록 권고함.
- '13.12.11 문화재위원회 추가지정 검토(추가지정 보류)
- '16.10.12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11.09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

- 초장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추가 확보 필요
- 한옥호텔, 한옥마을에 대한 규모 조정 필요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한옥 호텔 신축은 별도 심의(금번 심의에서 제외하되 향후 사업시 별도 심의)
- 한옥 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
- 추정되는 정자각터 우측의 단독주택 용지의 튀어나온 부분은 없애고 재실터 왼쪽 이주자 택지 단독주택용지 중 재실터 쪽 한줄은 도로쪽으로 배치함

13. 강화산성 주변 경관조명 공사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경관조명 공사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군 일원 강화산성, 삼랑성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노후된 기설치 조명설비를 교체 하여 주민들의 야간 이용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 확보는 물론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경관조명 공사>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길상면 온수리(삼랑성)
 - 사업내용
 - 강화산성
 - 등기구 선로매설 : 외부성벽 - 1.1km , 내부산책로 - 2.25km
 - 제어반(3~14회로) ▶ 5개소(동문,서문,남문,북문,남장대)
 - CCTV(6개소)
 - 각 문루 조명 : 성벽 및 문루 투광, 여장조명, 지붕투광 폴조명(각 4개)
 - 삼랑성
 - 등기구 선로매설 : 외부성벽 - 1.45km
 - 제어반(2~13회로) ▶ 3개소(남문,동문,서문)
 - 동문 : 외부 성벽투광(72w-4개) /남문 : 성벽 및 문루 투광, 여장조명, 지붕투광 폴조명(4개)

(4) 신청인 의견

- 본 사업은 강화군 일원 강화산성, 삼랑성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노후된 기설치 조명설비를 교체 하여 주민들의 야간 이용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확보는 물론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 지역 문화유산 활용에 힘쓰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16.11/문화재위원 ○○○)

-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을 줄이고 조명시설과 전선의 설치·매립에 따른 문화재의 형질변경이 최소화되면서 경관에 어울리는 시설을 배치하려고 노력한 안을 나옴대로 만들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조명시설의 숫자를 더 줄일 수 있는지 검토요망되며 전선의 설치·매립이 필요한 구역의 최소화 및 유구없는 곳에서의 설치·매립의 측면에서 유구(추정)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점(예:해자 등)과 조명시설 설치 위치, 전선 매립위치를 도면에 중복해서 표시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성 있음
-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진행방식에 대한 제시도 필요함
- 조명시설과 전선 설치시 도착지점은 사전 시·발굴조사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4. 부여 부소산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주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부소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 부여 정림사지,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신청함
 - '15.12.09.(수)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16.04.06.(수)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16.05.11.(수) 부결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과다
 - '16.06.08.(수) 부결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과다
 - '16.07.13.(수) 부결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과다
 - '16.09.07.(수) 부결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과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 관북리 유적(사적 제428호),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 쌍북리 요지(사적 제99호)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등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공사>
 - 위치 : 충남 부여군 쌍북리 590번지{부소산성으로부터 220m, 관북리 유적으로부터 200m, 정림사지로부터 330m, 쌍북리 요지로부터 32m 이격/6구역(평슬라브 5층 17m, 경사지붕 5층 21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1차('15.12) 불허	2차('16.4) 불허	3차('16.5) 불허	4차('16.6) 불허	5차('16.7) 불허	6차('16.9) 불허	금번 ('16.12)
대지면적	27,908.35㎡	27,624.4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연면적	75,799.5㎡	77,626.㎡	74,915.㎡	73,617.4㎡	68,993.72㎡	39,817.4㎡	45,848.92㎡
최고높이 /규모	47.9m 16층 509세대	47.9 12~15층 505세대	37.3m 9~11층 465세대	36.63m 8~10층 440세대	34.83m 8~10층 432세대	32m 9층 440세대	24.13m 6층 324세대
용적률	194.7%	194.79%	183.21%	178.51%	175.31%	178.51%	132.18%

○ 사업기간 : 2016. 12월 ~ 2018. 11월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3.15/문화재위원 ○○○, ○○○)

- 본 건은 부소산성에서 조망되는 경관상 중요한 입지이므로 건축의 유형, 규모, 높이, 차폐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난 12월 문화재위원회 부결 이후, 조정하여 제출한 신청안이 높이를 낮추고 밀도(건폐율, 용적률)와 차폐도를 높인 것은 부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5.12.03/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부여 쌍북리 요지에서 약32m, 부여 부소산성에서 약220m,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약200m, 부여 정림사지에서 약 330m 이격된 6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이하)/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이하))에 건축면적 5,690㎡, 연면적 75,799㎡, 최고높이 47.9m의 15층 공동주택을 9동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여 쌍북리 요지, 부여 부소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상당한 규모와 높이로 인지되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3) 관리단체 의견

- 금번 현상변경 허가신청건은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해당사업대상지는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제6구역(평지봉시 최고높이 17m이하 / 경사지봉시 최고높이 21m이하)이며 부소산성과는 약 220m, 관북리유적과는 약 200m, 정림사지와는 약 330m, 쌍북리요지와는 40m 이격되어 있음. 해당건설사업계획은 대지면적 27,624.43㎡이며, 건축연면적 45,848.92㎡이며 총 12개동, 324세대이며, 건물최고높이 24.13m임.

- 부여는 1998년에 아파트가 조성된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아파트가 조성된 적이 없으며, 현재 부여읍 일대 주택 물량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주택공급 안정에 필요함, 또한 부여의 타지역으로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안책으로 공동주택(아파트)조성이 필요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신청자 철회

15. 남한산성 주변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개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주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터널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공구의 터널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2차 회의(2016.11.9)에서 ‘자료 보완 및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현지조사(2016.11.28)와 신청인의 자료 보완 후 다시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일원
- (3) 신청내용<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개설>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06-5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6m 이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2022년
 - 연장 : 8,338m(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통과구간 : L=799m)
 - 폭원 : 31.8m(왕복 6차로)
 - 문화재보호방안 : 발파진동 상시 모니터링(구간 : L=4.9km)

라. 참고자료

(1) 현지조사의견('16.11.28/문화재위원 ○○○, ○○○)

- 교통량 분석자료를 제시할 것.
- 신남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우회하는 안에 대한 검토내용, 단면분석 자료 등을 제시할 것.
- 발파 진동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으로 관리단체(경기도, 문화재청)에 보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파 진동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할 것

16. 경주 옥산서원 등 5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5건(통합고시)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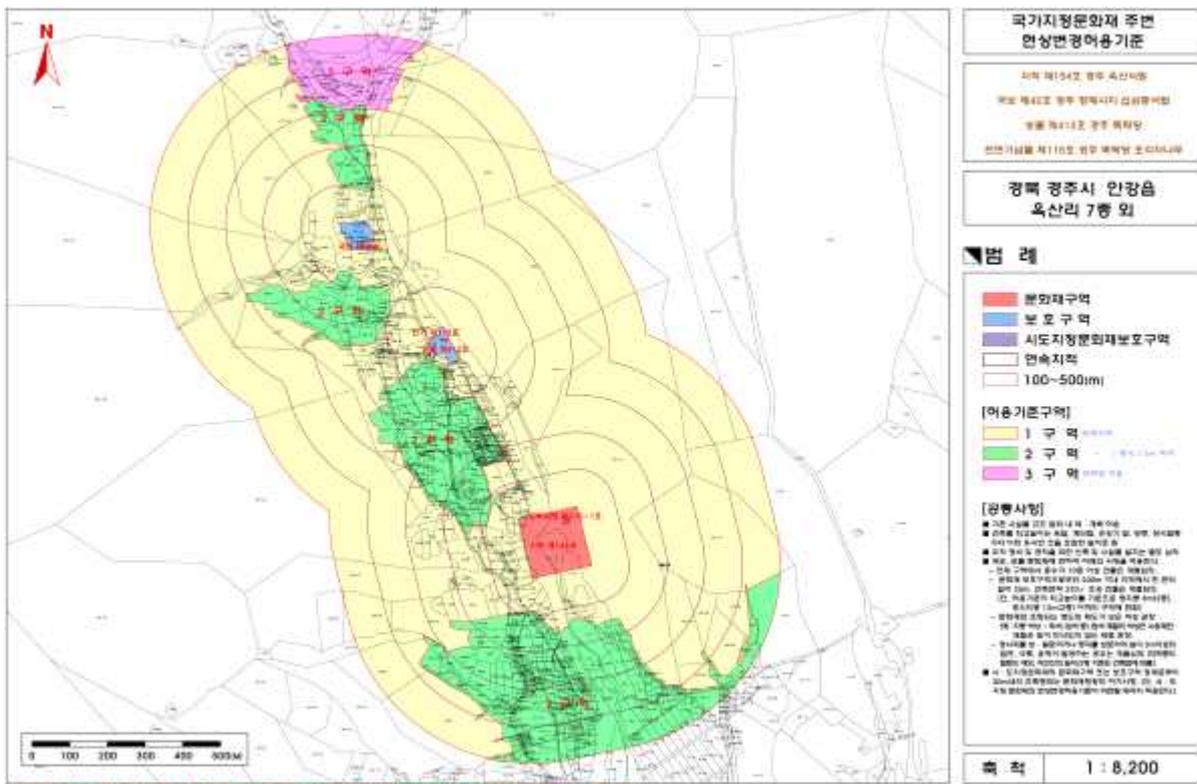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경주 옥산서원 등 5건(통합고시)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옥산서원(사적 제154호) 등 5건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옥산리)
- (3) 신청내용<경주 옥산서원 등 5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5건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국보 제40호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보물 제413호 경주 독락당, 천연기념물 제115호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 회재 이언적 신도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p> <p>○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p> <p>○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p> <p>○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p>○ 시·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m내의 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단, 시·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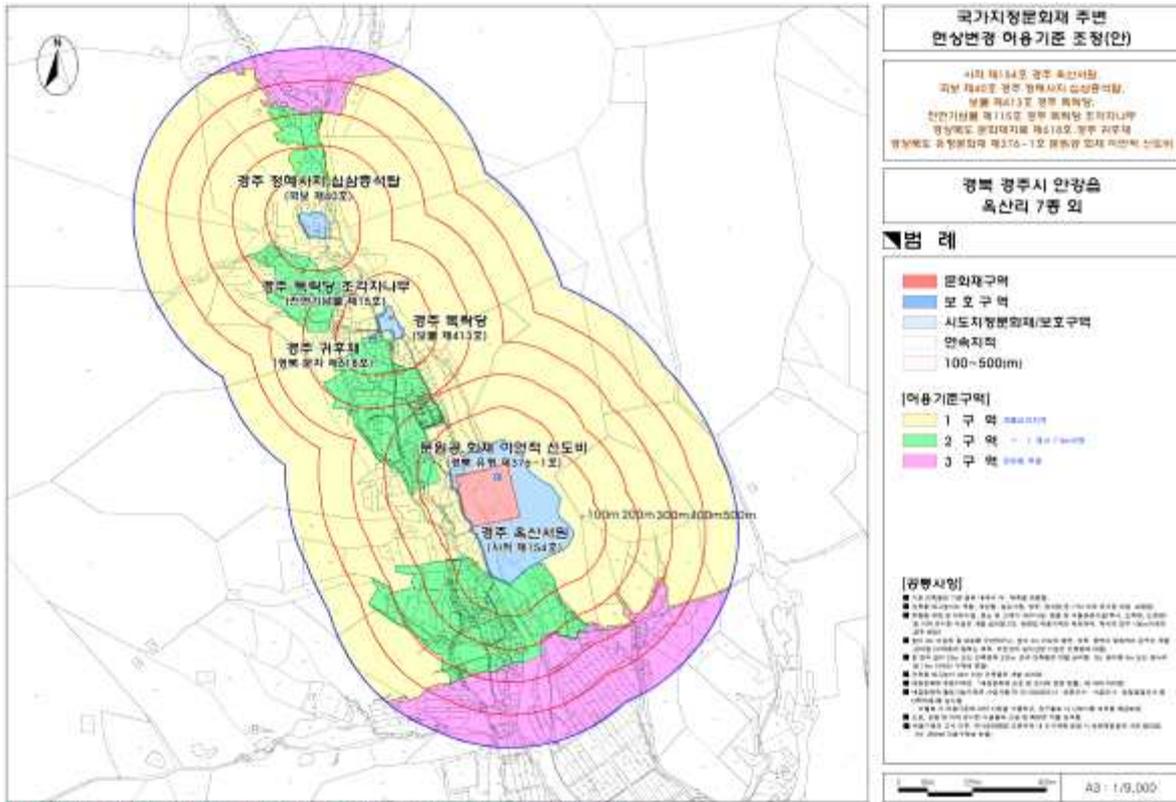
* 본 도면은 실차량탐색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표시를 위하여,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 신청안

-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등 6건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국보 제40호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보물 제413호 경주 독락당, 천연기념물 제115호 경주 독락당 조각자나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6-1호 문원공 회재 이언적 신도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18호 경주 귀후재)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지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단, 축사의 경우 100m 이내의 경우 해당)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본이슈를 꼭 확인하여 참고공공용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 지역도제 적용을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주 옥산서원 등 6개소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주 옥산서원의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이 확대되는 곳은 일체성, 경관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도시계획에 의한 곳으로 하여도 무방함.
- 그리고 주변의 임야는 각 문화재의 일체성과 경관성을 보아 개별심의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옥산서원 앞의 하천 건너 일부 구간은 연접구역과 함께 1층 규모 정도의 건축이 되더라도 조망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 경주 독락당의 서측에 있는 남천사지부도가 있는 곳은 일체성과 장소성을 위해 개별심의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공통사항에 축사는 500m 범위 내에는 전부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

(2) 지자체 의견

<시설제한 중 축사에 한정하여 거리(100m 이내)에 따른 심의 적용>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주변경관과 국민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 허용기준 범례의 공통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별표 3)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허용기준 공통사항에는 시설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 해당되며, 금번 허용기준 조정 현지조사에서는 거리 및 구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관계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는 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제한 시설 중 축사는 도축장 및 도계장과는 달리 경주 지역의 농가에서는 광범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전체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현상변경 신청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상당수 농가에서 설치된 축사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며, 경주시에는 말소, 폐업, 휴업된 상태를 제외하고 관내 전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가 2,88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시설 자체를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수요의 현상변경 신청이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의 제기와 함께 행정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설 제한 중 축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개별 심의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조정 고시되는 허용기준에 따라 축사의 신축(양성화 포함)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정 개선이라 판단합니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 확인 후 재검토

17. 경주 탈해왕릉 등 9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등 9건(통합고시)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탈해왕릉 등 9건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탈해왕릉(사적 제174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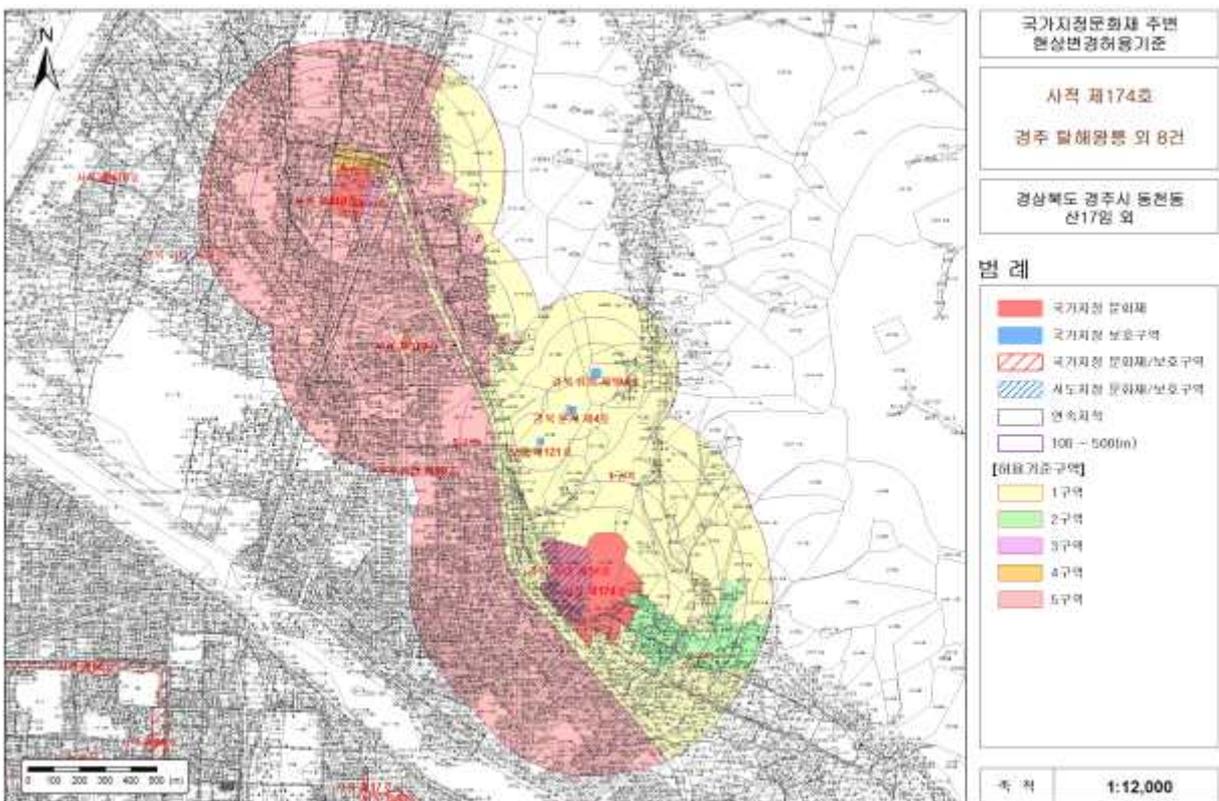
(3) 신청내용<경주 탈해왕릉 등 9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등 9건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사적 제328호 경주 용강동 고분, 사적 제419호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호 백률사 대웅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5호 송신전, 경상북도 기념물 제54호 경주 표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5호 경주 동천동 사방불탑신석,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4호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함. 		



본 도면은 입체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한 확인후에 입찰공모서만 활용하시게 바라며, 국의 모든 도면도의 책임을 금합니다.

○ 신청안

- 사적 제154호 「경주 탈해왕릉」 등 11건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사적 제328호 경주 용강동 고분, 사적 제419호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사적 제476호 경주 황성동 고분,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호 백률사 대웅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5호 송신전, 경상북도 기념물 제31호 경주 간묘, 경상북도 기념물 제54호 경주 표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5호 경주 동천동 사방불탑신석,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4호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지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단 관련법 적용구역은 제외하며, 축사의 경우는 100m 이내의 경우 해당)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관련법규 적용구역은 제외)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지자체 의견

<시설제한 중 축사에 한정하여 거리(100m 이내)에 따른 심의 적용>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주변경관과 국민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 허용기준 범례의 공통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별표 3)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허용기준 공통사항에는 시설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 해당되며, 금번 허용기준 조정 현지조사에서는 거리 및 구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관계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는 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제한 시설 중 축사는 도축장 및 도계장과는 달리 경주 지역의 농가에서는 광범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전체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현상변경 신청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상당수 농가에서 설치된 축사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며, 경주시에는 말소, 폐업, 휴업된 상태를 제외하고 관내 전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가 2,88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시설 자체를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수요의 현상변경 신청이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의 제기와 함께 행정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설 제한 중 축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개별 심의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조정 고시되는 허용기준에 따라 축사의 신축(양성화 포함)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정 개선이라 판단합니다.

<탈해왕릉 주변에 한정하여 관련법 처리 지역 내 시설제한 및 건축물 최고높이 심의 적용제외>

- 경주 탈해왕릉 주변의 도시계획 조례 상 용도지역지구는 주거지역(제1종 및 제2종)과 상업지역으로 이미 상당부분 도심화가 진행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처리 지역 내 시설 제한을 둘 경우 주유소 및 충전소와 각종 처리시설은 규모에 관계 없이 별도 심의대상이 되는 바, 이는 해당 지역 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심의 없이 설치, 신설한 기존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의 시설물과의 형평성의 차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규제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서 개발된 해당 지역 내 이러한 시설물의 신축은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탈해왕릉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한하여 관련법규 처리 지역 내에는 시설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통사항에는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탈해왕릉 주변은 층수의 제한이 없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규제 사항으로서 심의 건수가 증가될 것입니다. 공통사항에서는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변경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탈해왕릉 허용기준에 한하여 관련법규 처리 지역 내에는 건축물 최고높이의 개별 심의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18. 경주 무열왕릉 등 14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59호 「경주 무열왕릉」 등 14건(통합고시)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무열왕릉 등 14건(통합고시)의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 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무열왕릉(사적 제259호) 등 14건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서악동 84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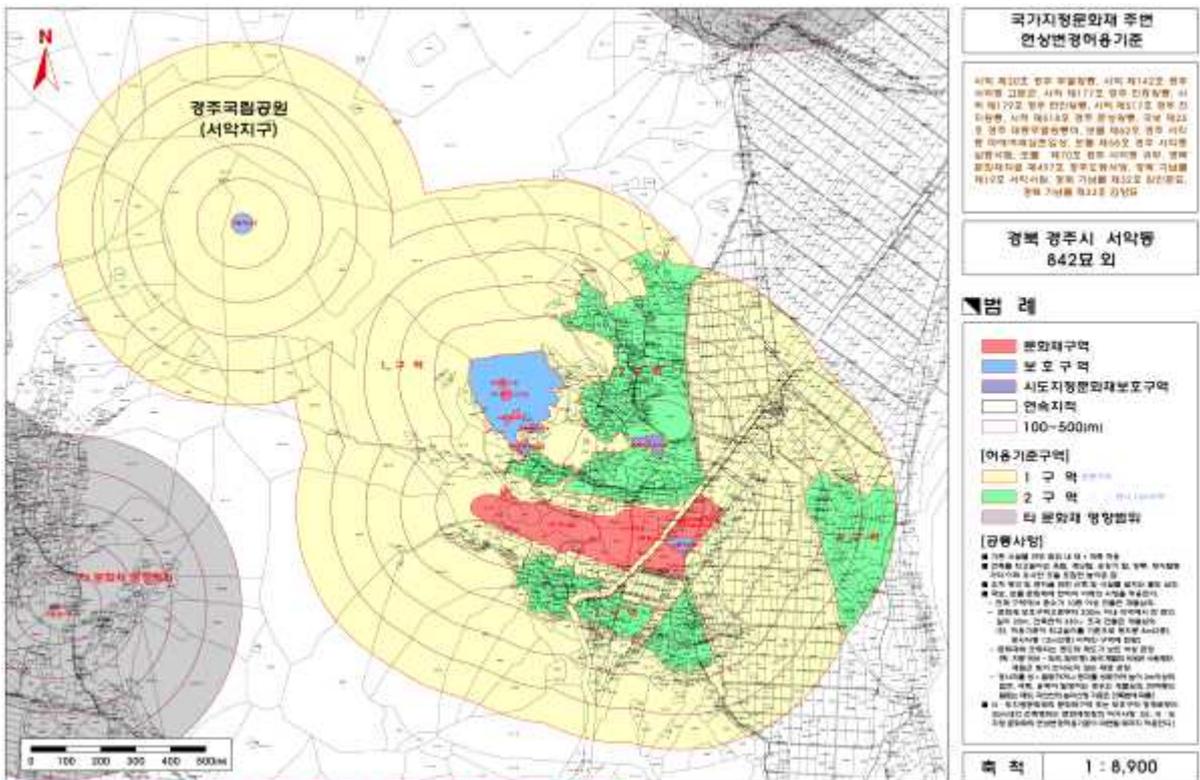
(3) 신청내용<경주 무열왕릉 등 14건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등 14건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사적 제142호 경주 서악동 고분군, 사적 제177호 경주 진흥왕릉, 사적 제179호 경주 헌안왕릉, 사적 제517호 경주 진지왕릉, 사적 제518호 경주 문성왕릉, 국보 제25호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보물 제62호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제65호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 보물 제70호 경주 서악동 귀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97호 경주 도봉사당, 경상북도 기념물 제19호 서악서원, 경상북도 기념물 제32호 김인문 묘, 경상북도 기념물 제33호 김양 묘)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국보, 보물 문화재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시·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m 내의 건축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단, 시·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한다.) 		



※ 본 도면은 실재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의 실재현황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지이용권 시용을 권합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무열왕릉 등 연접 14개소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소성으로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과 무열왕릉 주변의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을 유지함.
- 일체성에서 무열왕릉 북측의 구거도 개별심의 구역을 유지하고 무열왕릉 남측의 마을 연접지는 2구역으로 확대하여도 경관성, 일체성에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무열왕릉 전면 경관을 구성하는 전담은 개별심의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경주 서악서원 주변은 지자체의 허용기준에 맞추어 주변을 개별심의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통사항에 축사는 500m 범위 내에는 전부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

(2) 지자체 의견

<시설제한 중 축사에 한정하여 거리(100m 이내)에 따른 심의 적용>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주변경관과 국민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 허용기준 범례의 공통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별표 3)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허용기준 공통사항에는 시설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 해당되며, 금번 허용기준 조정 현지조사에서는 거리 및 구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관계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는 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제한 시설 중 축사는 도축장 및 도계장과는 달리 경주 지역의 농가에서는 광범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전체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현상변경 신청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상당수 농가에서 설치된 축사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며, 경주시에는 말소, 폐업, 휴업된 상태를 제외하고 관내 전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가 2,88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을 담당

하고 있는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시설 자체를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수요의 현상변경 신청이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의 제기와 함께 행정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설 제한 중 축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개별 심의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관리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조정 고시되는 허용기준에 따라 축사의 신축 (양성화 포함)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정 개선이라 판단합니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19.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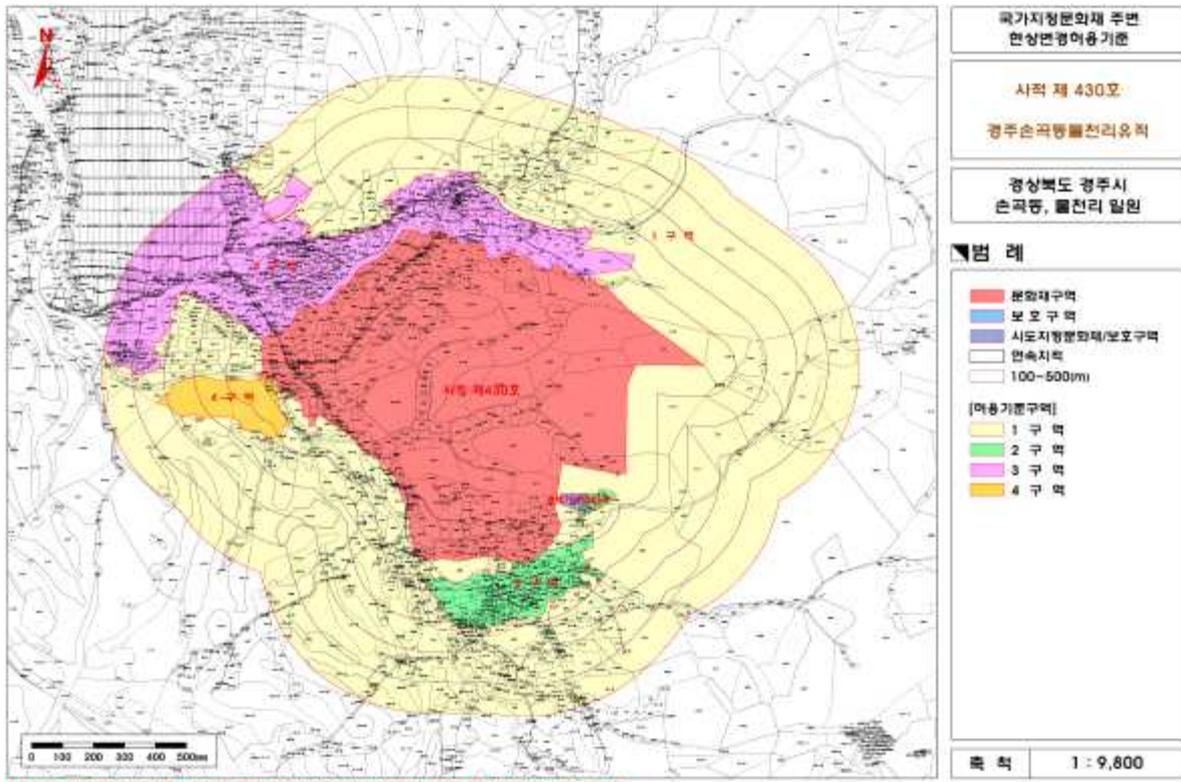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사적 제430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일원
- (3) 신청내용<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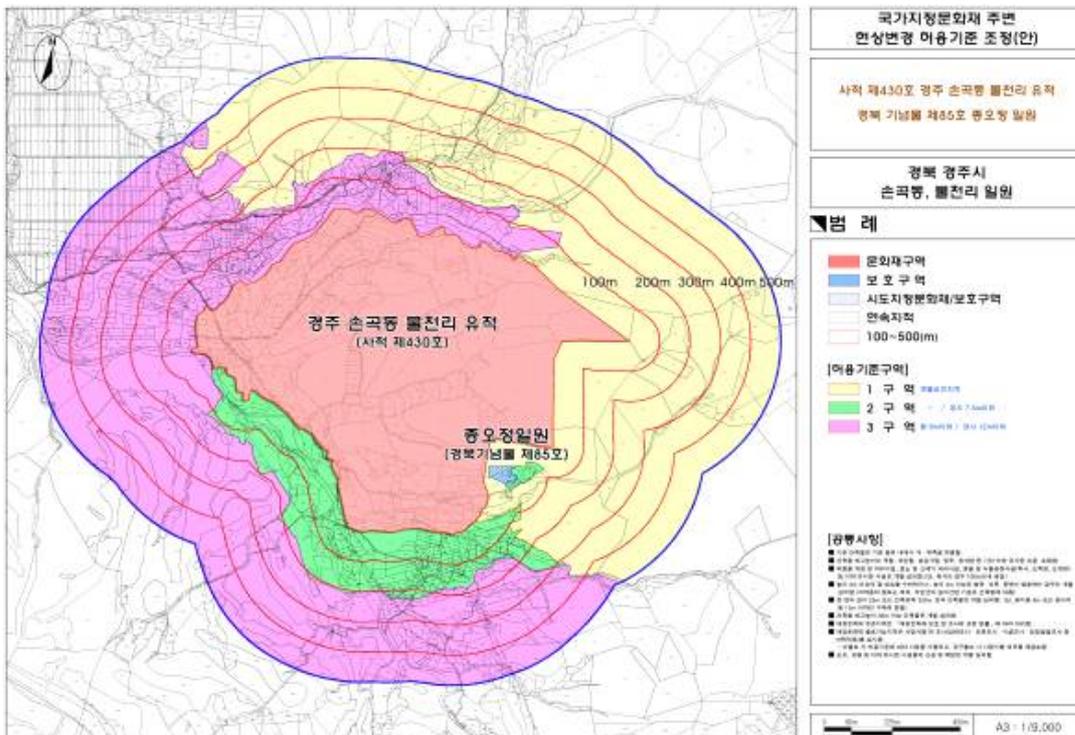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생활체육 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시설에 한하며, 별도심의 (기존 시설물 범위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신청안

-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등 2건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경상북도 기념물 제85호
중오정 일원)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지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단, 축사의 경우 100m 이내 해당)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문서 요건하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확정된 현상도면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주 손곡동 유적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측의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하되, 남서측은 조망성, 일체성에서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2층 규모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공통사항에 축사는 500m 범위 내에는 전부 적용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

(2) 경주시의견

- 1차<시설제한 중 축사에 한정하여 거리(100m 이내)에 따른 심의 적용>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주변경관과 국민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 허용기준 범례의 공통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별표 3)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 허용기준 공통사항에는 시설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 해당되며, 금번 허용기준 조정 현지조사에서는 거리 및 구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관계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는 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제한 시설 중 축사는 도축장 및 도계장과는 달리 경주 지역의 농가에서는 광범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전체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현상변경 신청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새로운 규제에 작용하여, 광범위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상당수 농가에서 설치된 축사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며, 경주시에는 말소, 폐업, 휴업된 상태를 제외하고 관내 전체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가 2,88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시설 자체를 심의대상으로 할 경우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수요의 현상변경 신청이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의 제기와 함께 행정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설 제한 중 축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개별 심의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조정 고시되는 허용기준에 따라 축사의 신축(양성화 포함)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정 개선이라 판단합니다.

○ 2차<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문화재구역 서편 1구역 일부 유지>

-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조정안에 대한 현장 조사를 문화재청에서 11월 25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조정안은 문화재 주변경관과 국민 재산권 보호의 조화에 부합되도록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은 허용기준을 완화하였으나, 당초 제출안을 수정하여 도로 필지를 경계로 하여 문화재구역 서편 일부는 1구역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 1구역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은 한국마사회, 국유(건설부), 경주시, 경상북도 관광공사, (주)경주 신라컨트리 클럽이 소유자이며, 해당 지역 내에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는 없습니다. 이 중 상당부분은 한국마사회 소유로서, 한국마사회는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지역 이외에 당해 문화재구역의 상당 면적을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은 2001년 문화재 지정 이후 별도의 정비가 없어 부지경관이 불량하며, 인근 주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적지는 향후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한국마사회 소유의 주변 지역 역시 현행대로 1구역으로 유지하여 사적지와 함께 일관성을 가지고 연계되어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이에 따라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오니 해당 제출안으로 심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 및 경주시 2차의견대로 시행

20. 군위 인각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군위군 소재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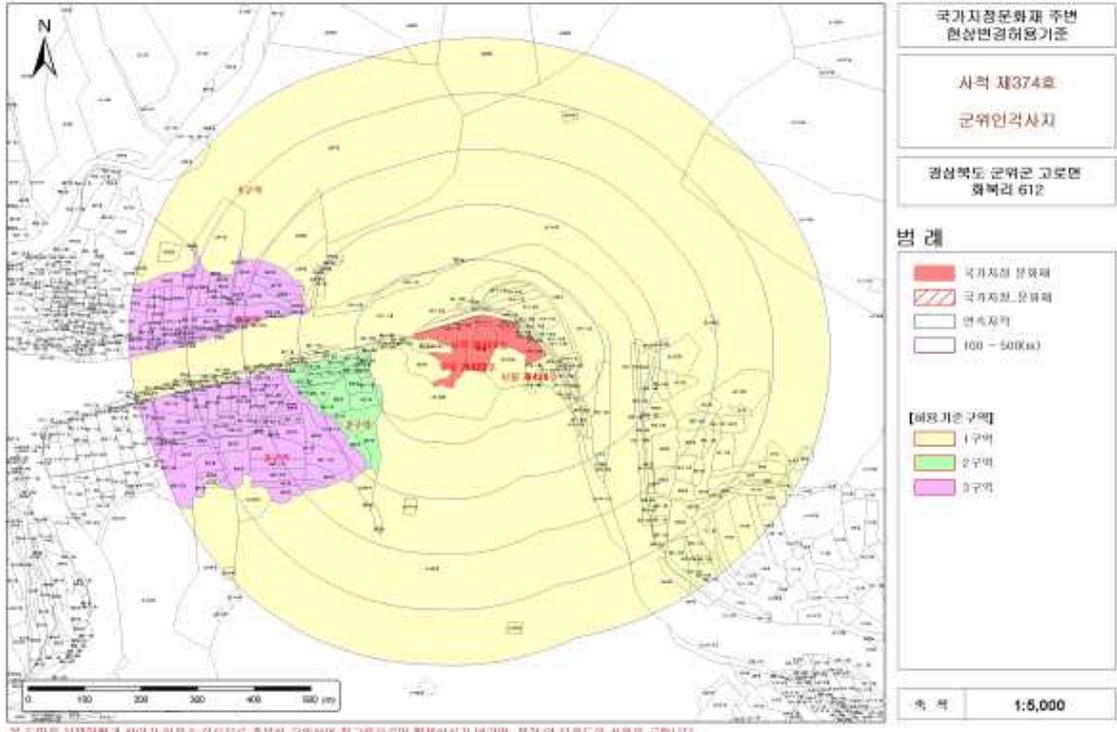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군위군 소재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군위 인각사지(사적 제374호)
 - 소재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본 도면은 상세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반에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군위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21.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주변 건축 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사적 제167호)
 -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
- (3) 신청내용<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경사지붕으로 할 것(경사도 3:10 이상)	
3구역	○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17/문화재전문위원 ○○○, 전남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5대 지표(장소성, 일체성, 조망성, 마루선, 왜소화)에 의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택의 경우 왜소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왜소화 방지를 위해 공통사항(한변의 길이 25m 이상 또는 건축면적 330㎡ 이상일 경우)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22.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사적 제239호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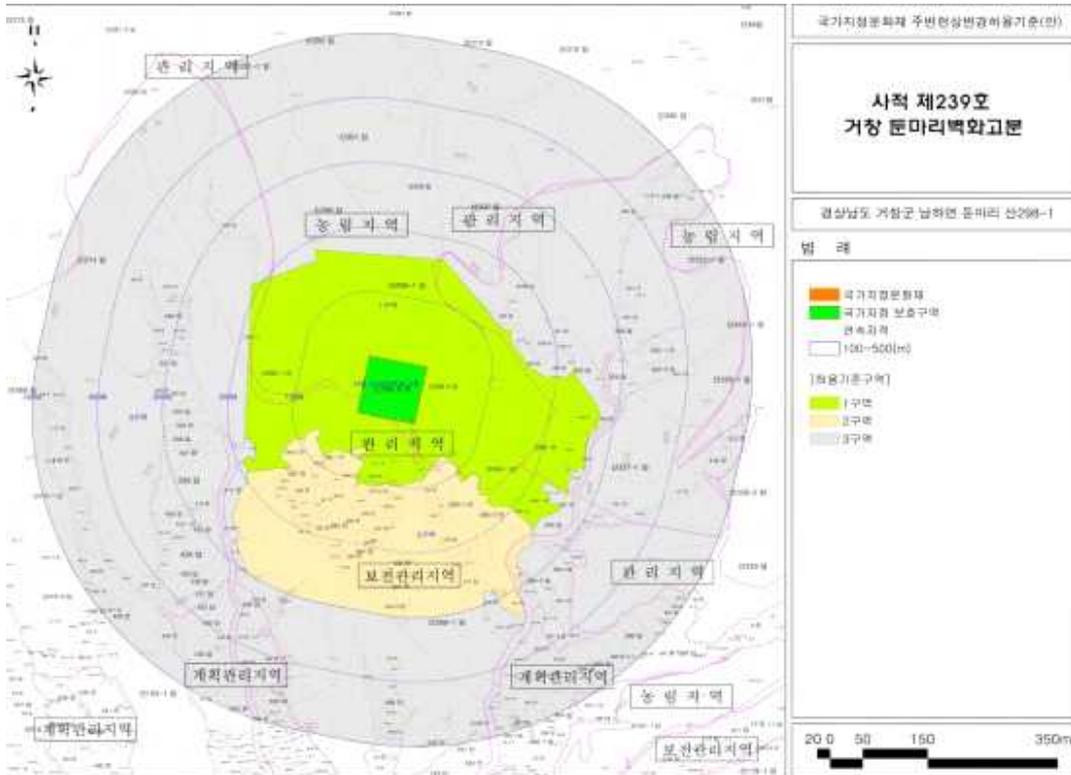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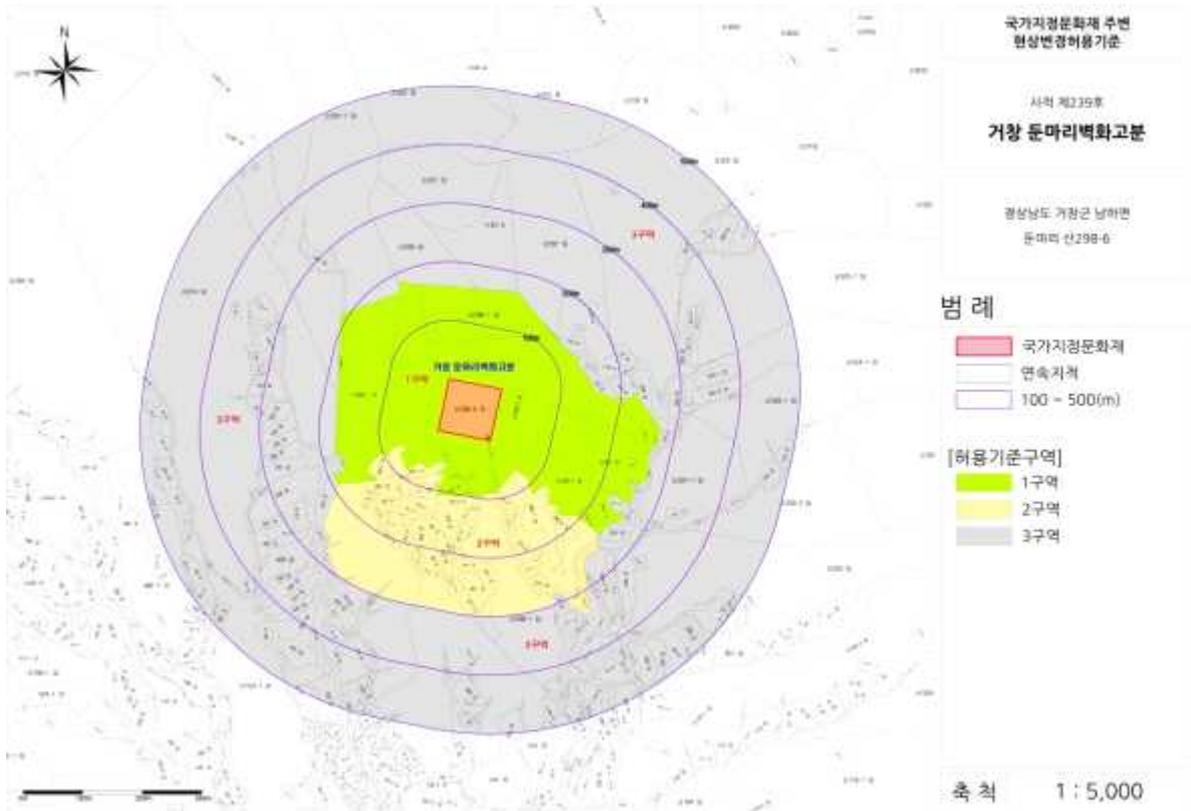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사적 제239호 / 1974.09.05 지정)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298-6
- (3) 신청내용<창녕 비봉리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7/문화재위원 ○○○)

- 주변이 낮고 고분은 높게 위치하였으나 주변이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남쪽의 개발이 진행되면 조망이 저해될 수 있음. 2구역의 일부분을 3구역으로 조정시 기존 건축물 이하로 높이를 제한 할 필요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3. 함양 남계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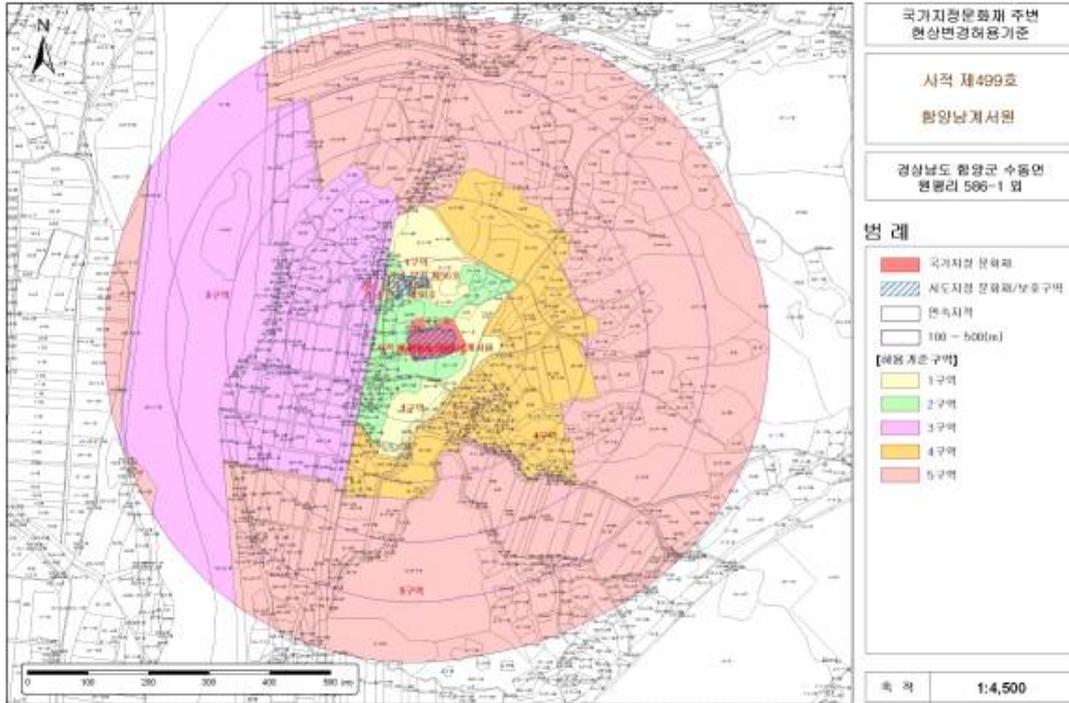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함양 남계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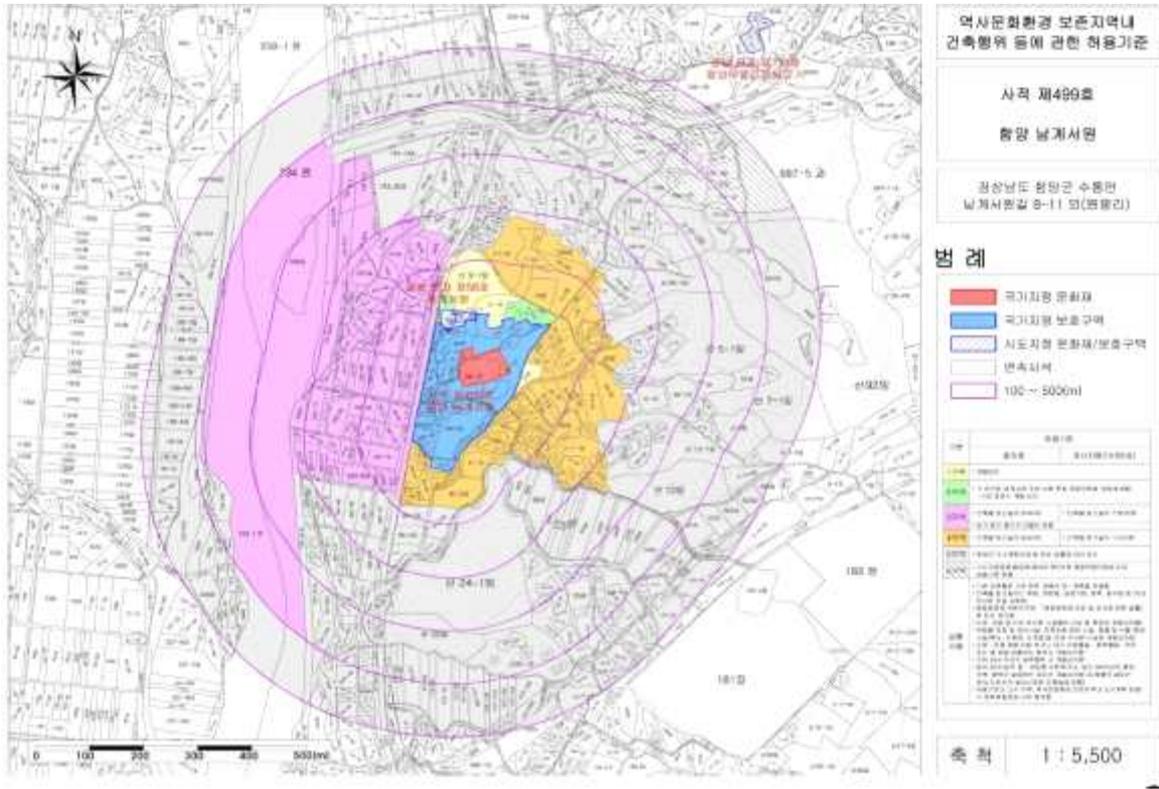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양 남계서원(사적 제499호 / 2009.05.26 지정)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외(원평리)
- (3) 신청내용<함양 남계서원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기 허가된 남계서원 주변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한함 - 사업 변경시 개별 심의	
3구역	○ 최고 높이 5m 이하 -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 최고 높이 7.5m 이하 -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4구역	○ 최고 높이 8m 이하	○ 최고 높이 11m이하
5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농가 창고 외관 색상은 무채색, 저채도 계열로 하여 돋보이지 않도록 한다.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기 허가된 남계서원 주변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한함 - 사업 변경시 개별 심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5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121호 함양우명리정씨고가) 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7/문화재위원 ○○○)

- 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지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1구역이 보호구역이 되었으므로 북쪽의 1구역을 2구역으로 조정하여도 왜소화, 조망성 저해요인은 적다고 보여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4.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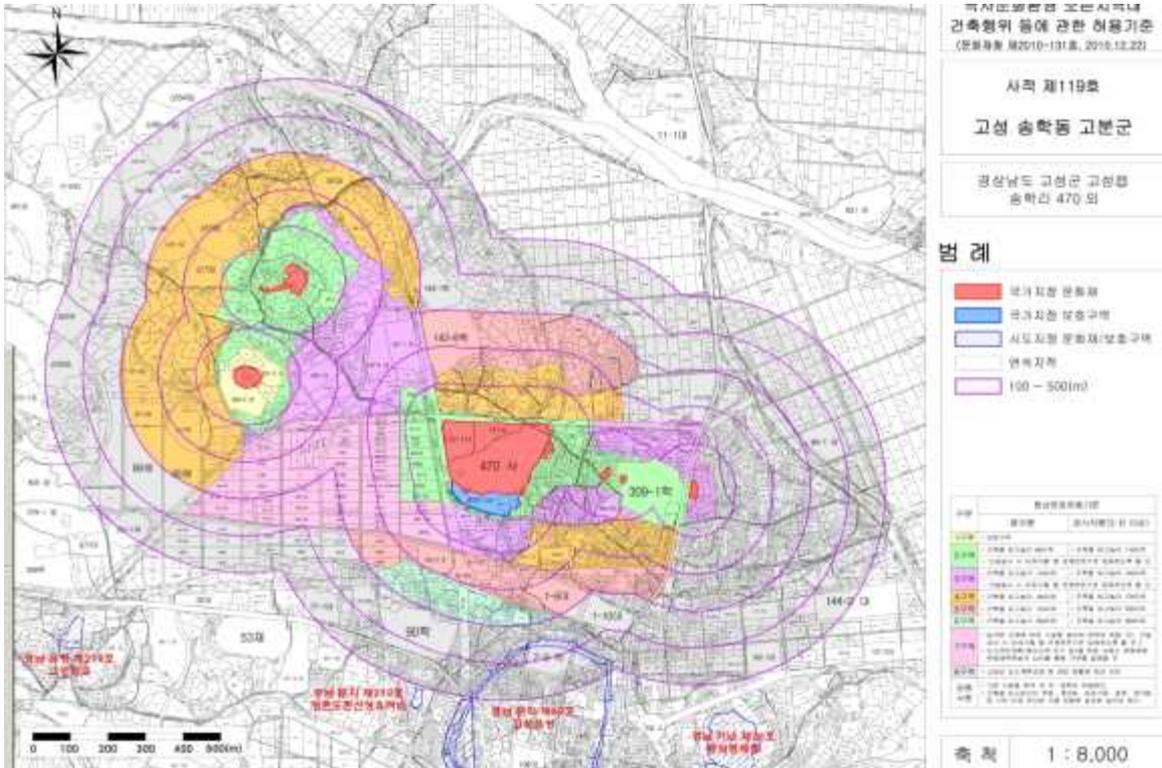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고성 송학동 고분군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 구역조정 등 재검토(2016.11.23)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 외
- (3) 신청내용<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설공사 시 터파기할 때 관계전문기관 입회하도록 할 것.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설공사 시 터파기할 때 관계전문기관 입회하도록 할 것.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7구역	○ 농지법 규제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한하여 허용(단, 건설공사시 터파기할 때 관계전문기관 입회하도록 할 것)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8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참,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19호 고성향교,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 문화재자료 제89호 고성읍성, 문화재자료 제219호 행촌도촌선생유허비)허용 기준 적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건축물 최고높이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2·3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5. 창녕 비봉리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제486호 「창녕 비봉리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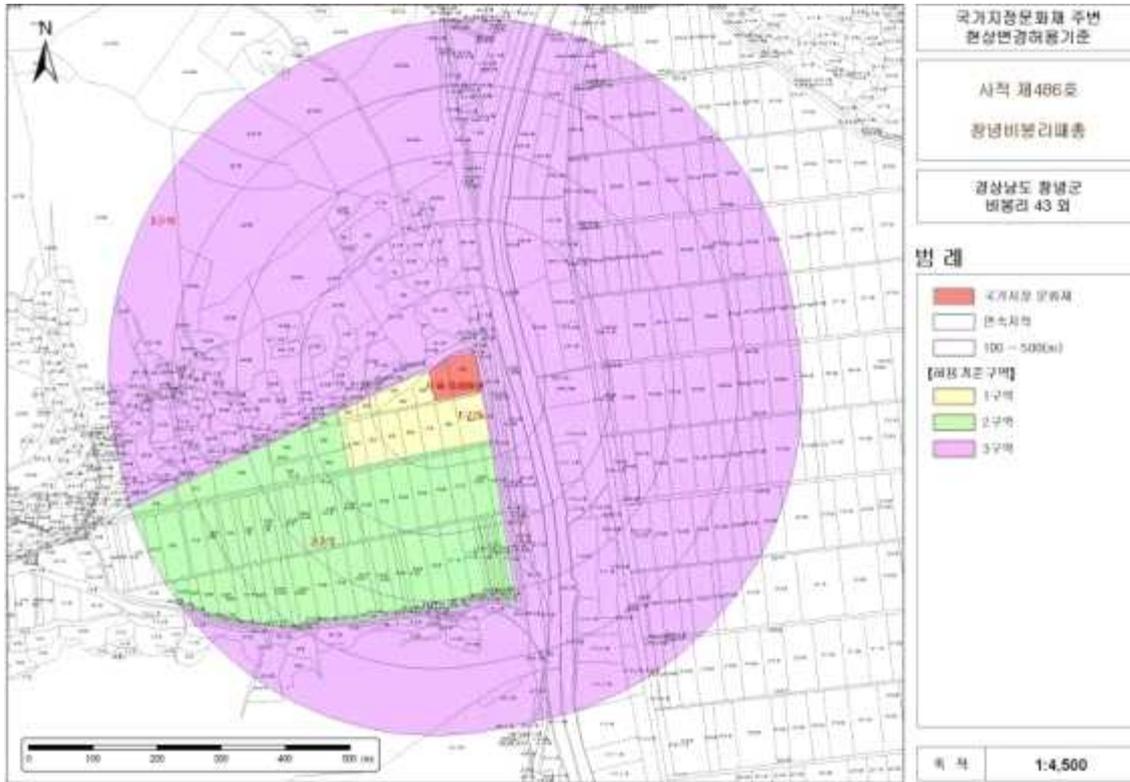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창녕 비봉리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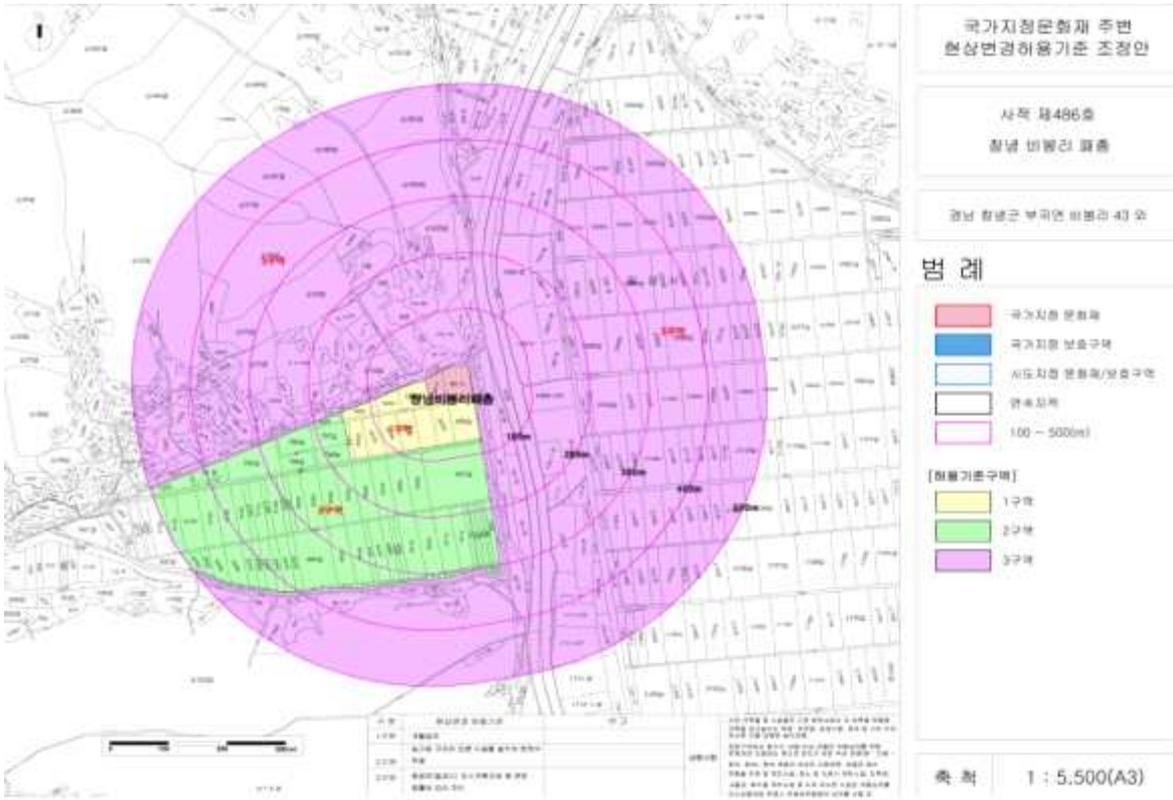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녕 비봉리 패총(사적 제486호 / 2007.08.28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3 외
- (3) 신청내용<창녕 비봉리 패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농지법 규제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한하여 허용 - 단,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 임회하에 실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것
3구역	○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농지법 규제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한하여 허용
3구역	○ 창녕군(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8/문화재위원 ○○○)

- 현재 농림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주변이 농경지 등으로 300미터를 기준으로 완화하여도 왜소화, 조망성 저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짐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6.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외 9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10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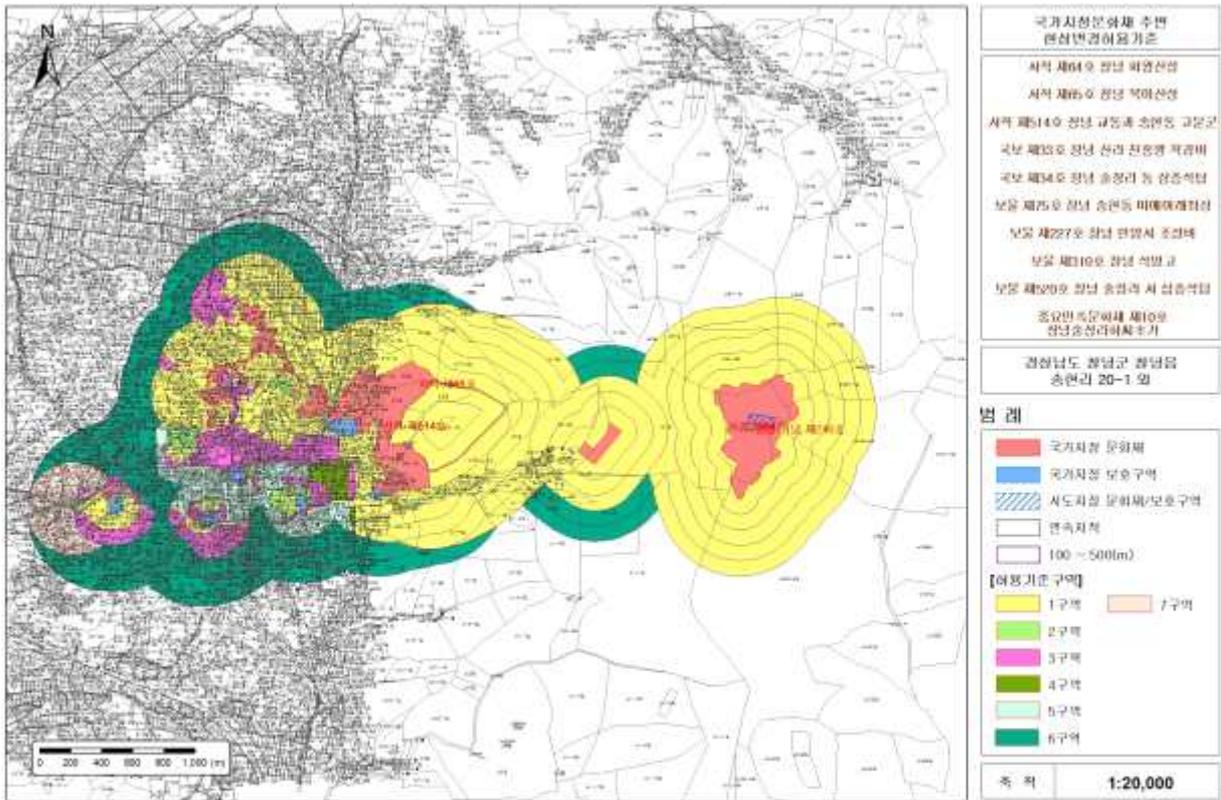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10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 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 유형문화재과 심의완료(국보, 보물)
 - 근대문화재과 심의완료(중요민속문화재)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녕 창녕읍 송현리 20-1 외
- (3) 신청내용<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사적 제64호 화왕산성, 사적 제65호 목마산성, 국보 제34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227호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중요민속문화재 제10호 창녕 술정리 하씨 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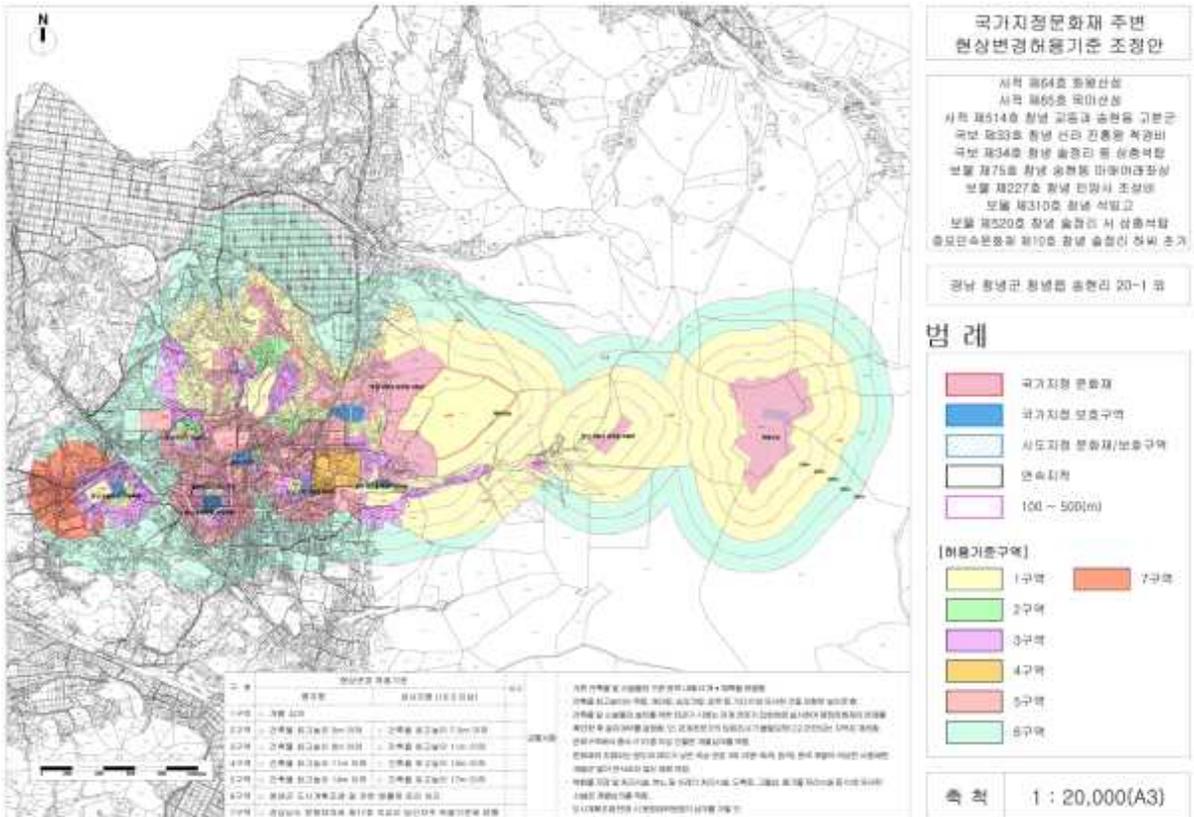
○ 현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 창원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6구역	○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7구역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직조리 당간지주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 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8/문화재위원 ○○○)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 북쪽의 도심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통제하고 좌측끝의 1구역은 3구역으로 변경하고 도심내의 1구역의 일부분은 2구역으로 기존의 2구역의 일부분은 3구역으로 조정하여 도심화 부분은 현실적으로 변경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창녕 화왕산성 :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개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300미터 기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창녕 목마산성 : 주변이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파른 지형으로 서쪽에 이미 도심화가 진행되어 300미터 기준으로 1구역을 완화하여도 조망성 등에 저해는 적을 것으로 보여짐

바. 의결사항

- 보류
 - 심층 논의 필요

27.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327호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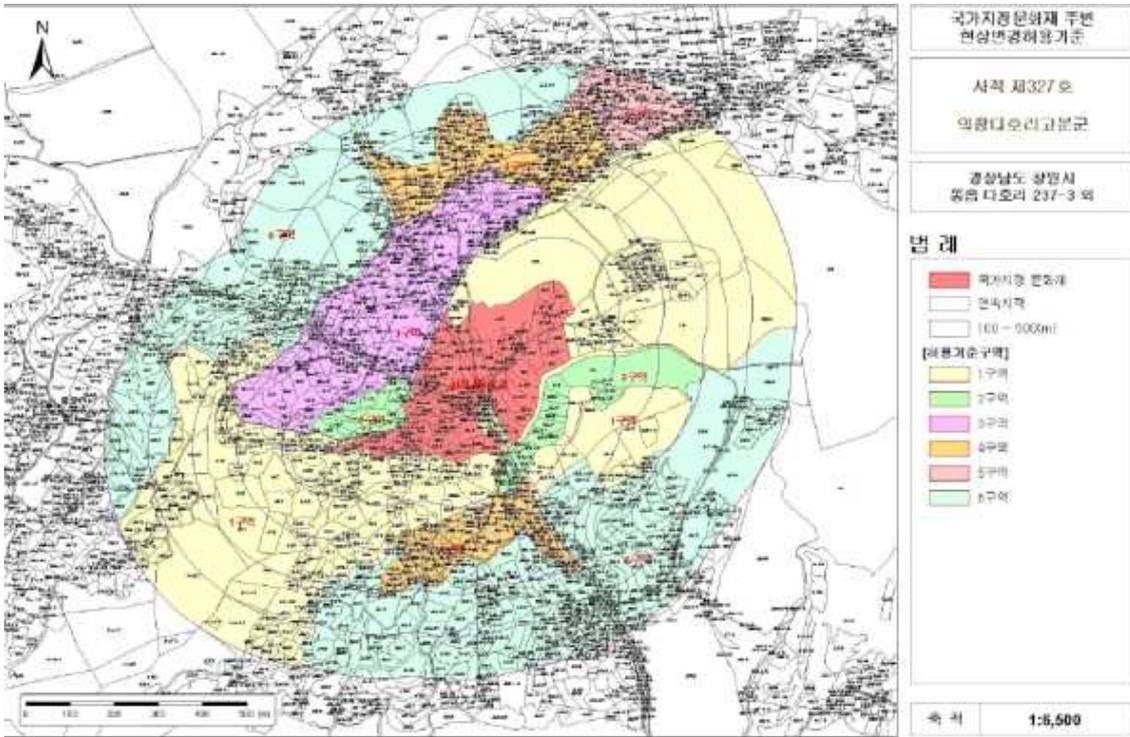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다호리 고분군(사적 제327호 / 1988.09.03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동읍 다호리 237-3 외
- (3) 신청내용<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6구역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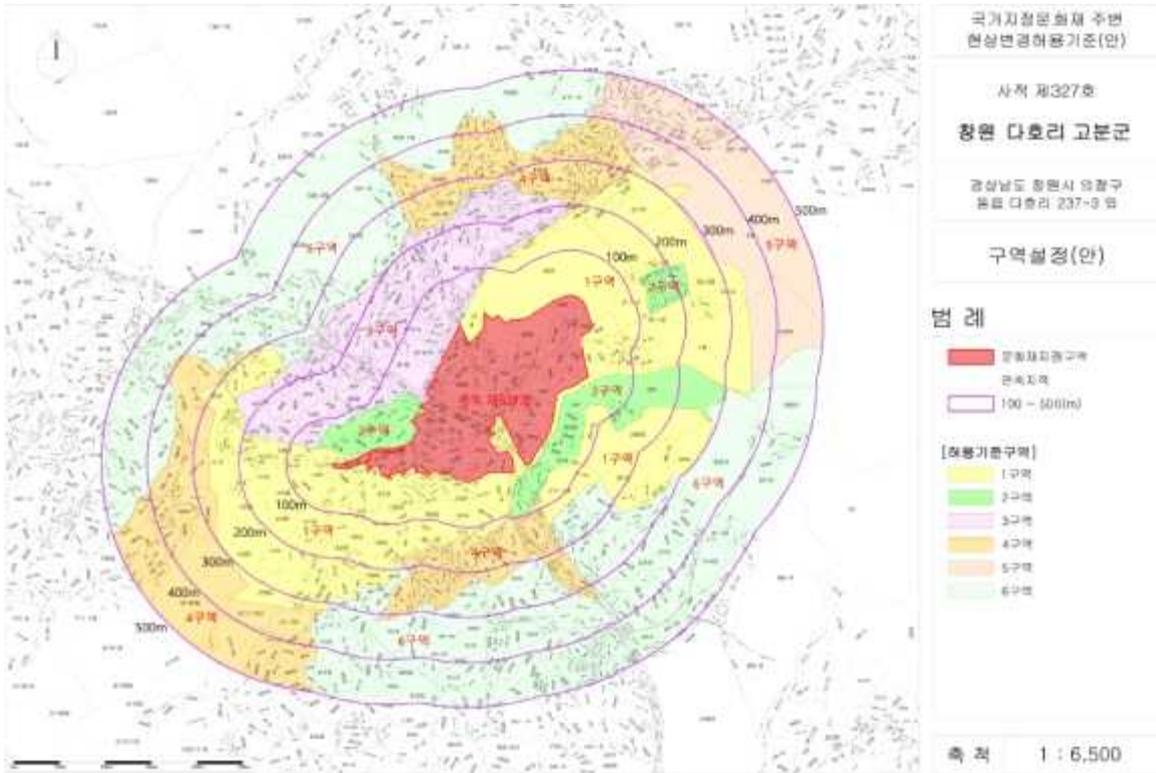


○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 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6구역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 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 행위 여부 결정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건축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 구역변경

- 1구역 : 기존 구역중 문화재 북동측과 남서측에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로 축소
- 2구역 : 기존 구역과 문화재로부터 북동측 반경 200m의 솔마을 재조정
- 3구역 : 기존 구역과 동일
- 4구역 : 기존 구역과 문화재로부터 남서측 반경 300m초과 재조정
- 5구역 : 기존 구역과 문화재로부터 북동측 반경 300m초과 재조정
- 6구역 : 기존 구역과 동일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5/문화재위원 ○○○)

- 창원 다호리 고분군 주변은 조망성이 확보되어 북동쪽, 남서쪽 1구역은 300미터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로 관리하되, 북서쪽 3구역과 6구역의 임야는 오히려 1구역으로 조정하여 경관·조망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

28. 합천 영암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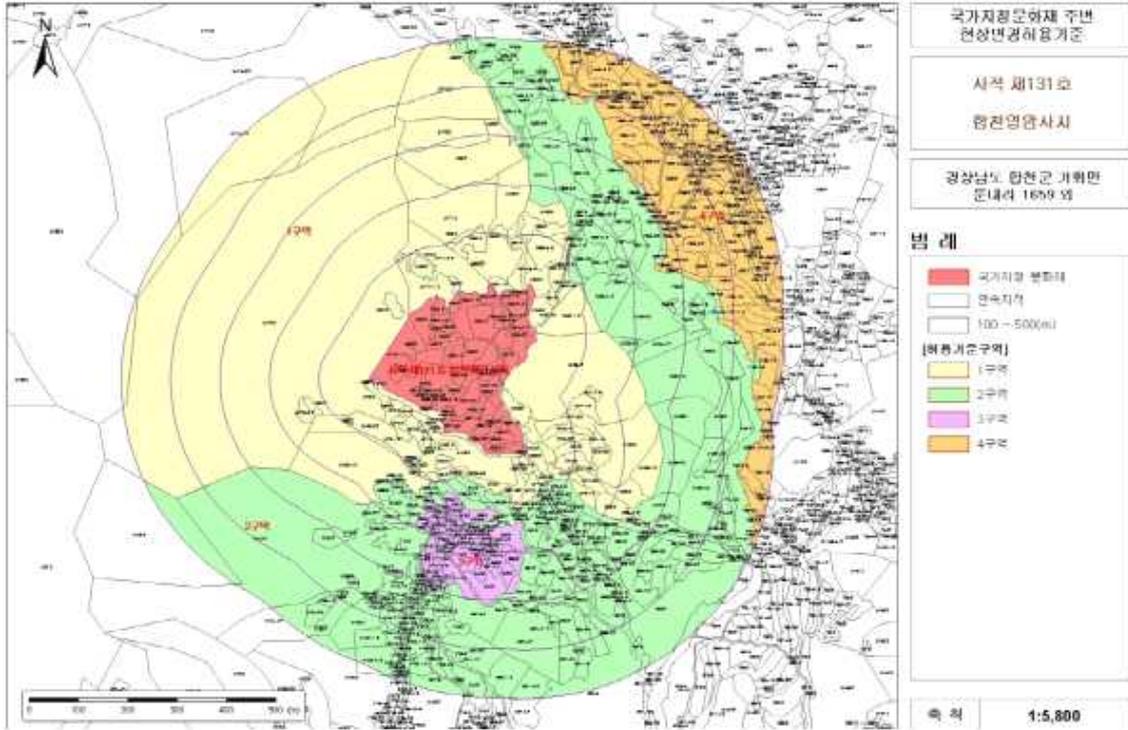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합천 영암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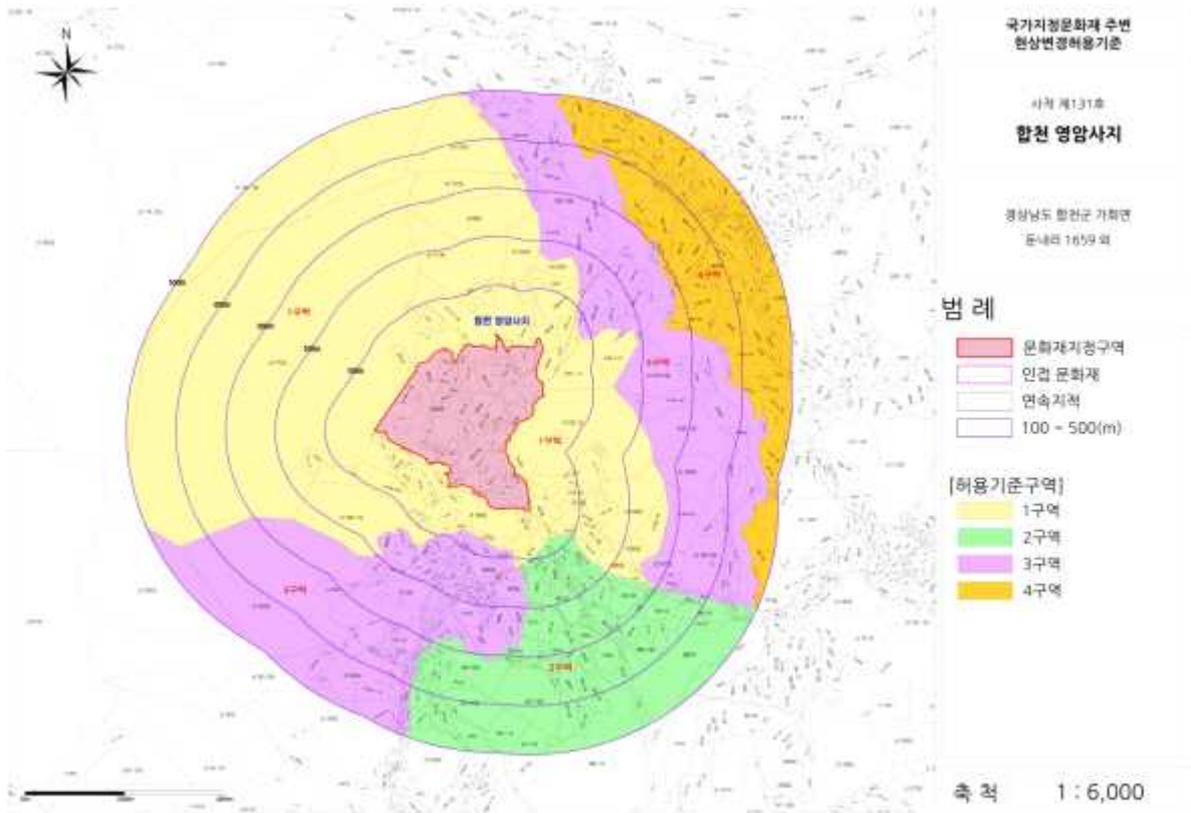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합천 영암사지(사적 제131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659 외
- (3) 신청내용<합천 영암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 신청안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와 건축양식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 (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7/문화재위원 ○○○)

- 서쪽은 이미 건축물 등이 존재하고 수림으로 차폐되어 2구역의 일부를 3구역으로 조정하되, 북쪽 1구역의 수변 방향은 수려한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망권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하에 일부 조정하여도 크게 저해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9. 합천 옥전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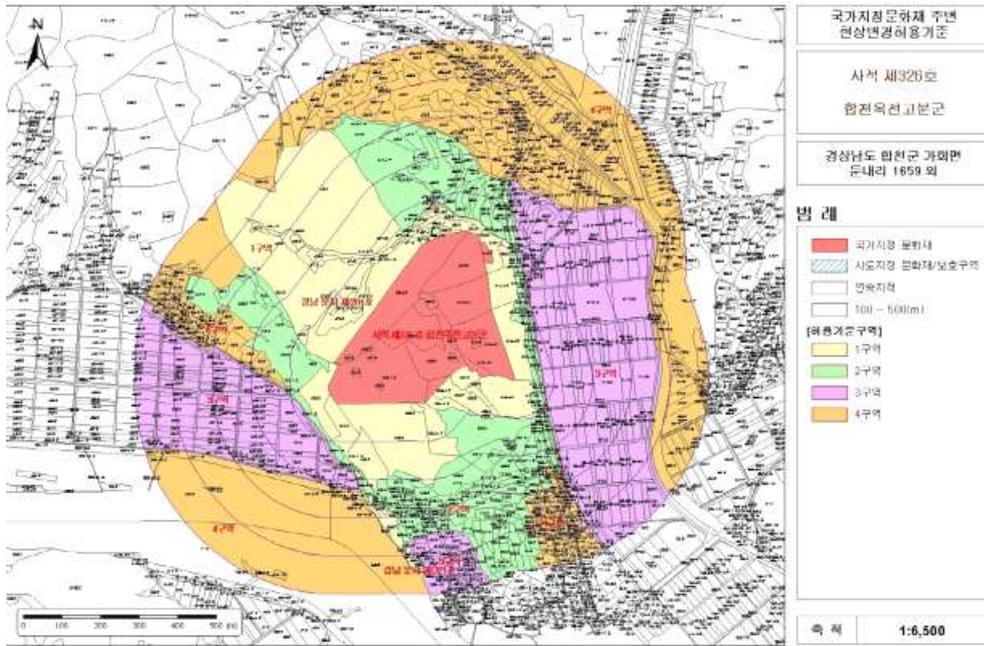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합천 옥전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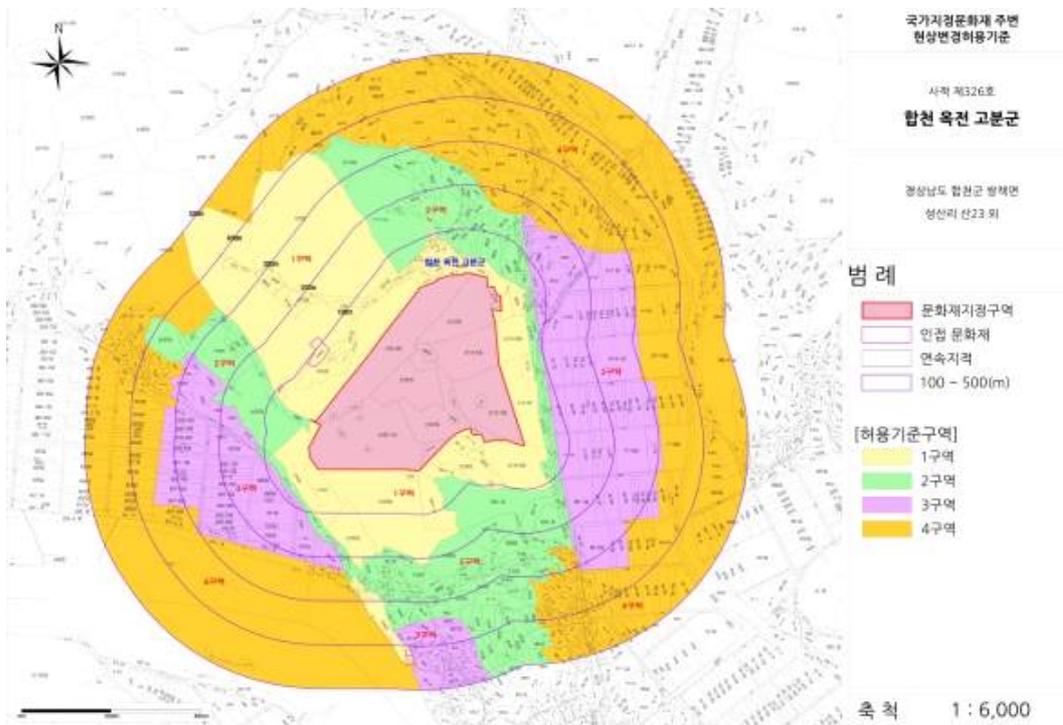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 1988.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23
- (3) 신청내용<합천 옥전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 신청안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 (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7/문화재위원 ○○○)

- 주변이 대부분 전답이므로 300미터 기준으로 1구역을 2구역 또는 3구역으로 남쪽의 2구역은 3구역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축사, 도축장 등은 개별심의 필요(공통사항)

30. 함안 성산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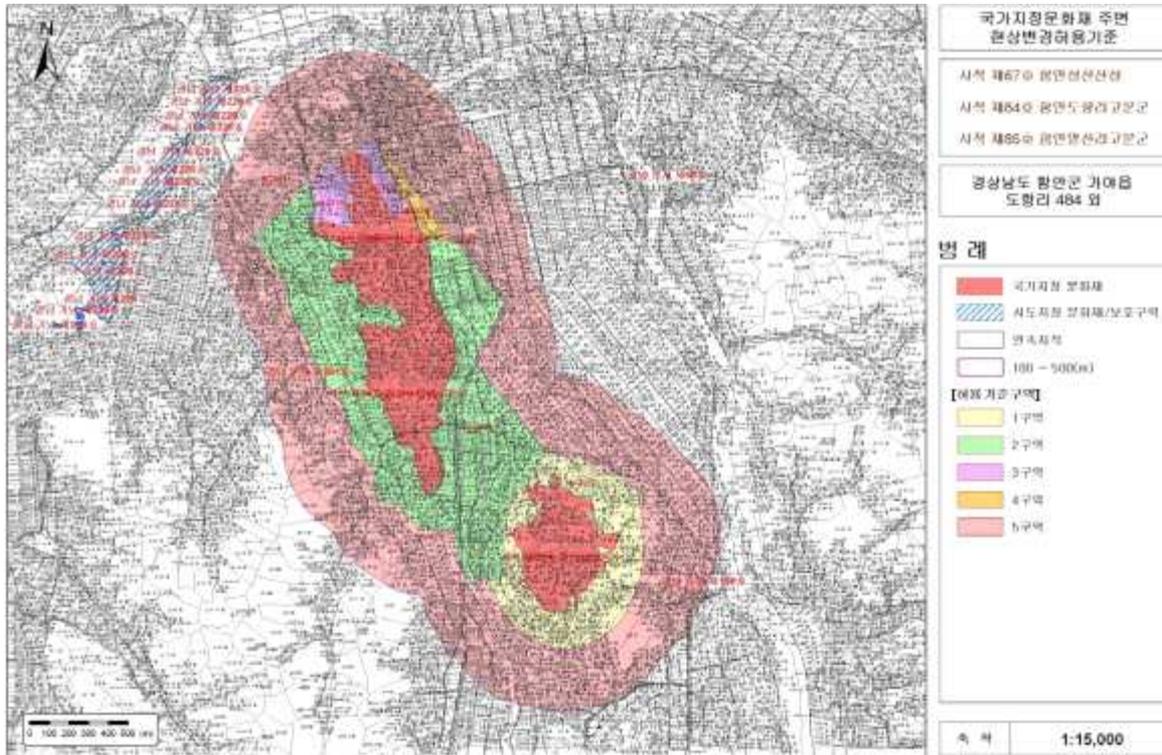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함안 성산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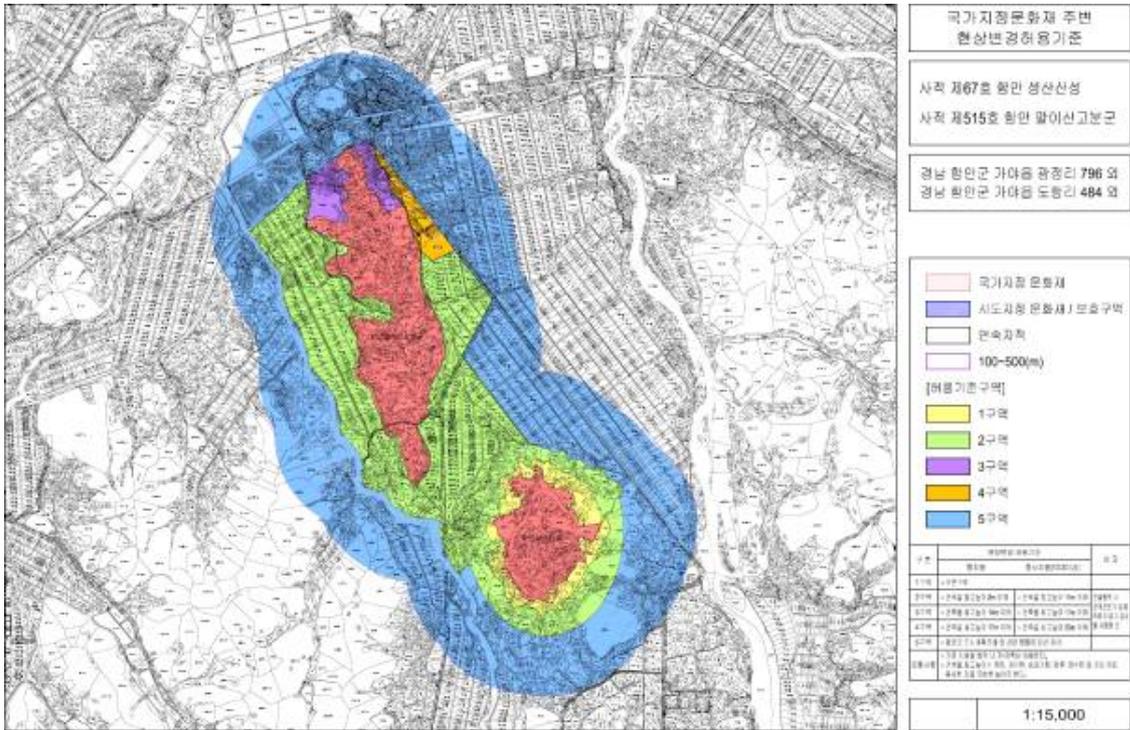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성산산성(사적 제67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796 외
- (3) 신청내용<함안 성산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 전문가 입회하여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것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것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0/문화재전문위원 ○○○)

- 성산산성은 퇴폐식 산성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진입 시 산성의 조망을 고려하였으며, 내·외부에서 산성의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허용기준안 산성 주변 취락 및 토지 지목을 면밀히 검토하에 기존 1구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에 작성된 것으로,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향후 허용기준안 적용에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기존 허용기준안은 1구역과 5구역으로 구역이 설정되어 완충구역이 없었지만 변경 허용기준안은 1구역과 5구역 사이에 2구역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하였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심층 논의 필요

31.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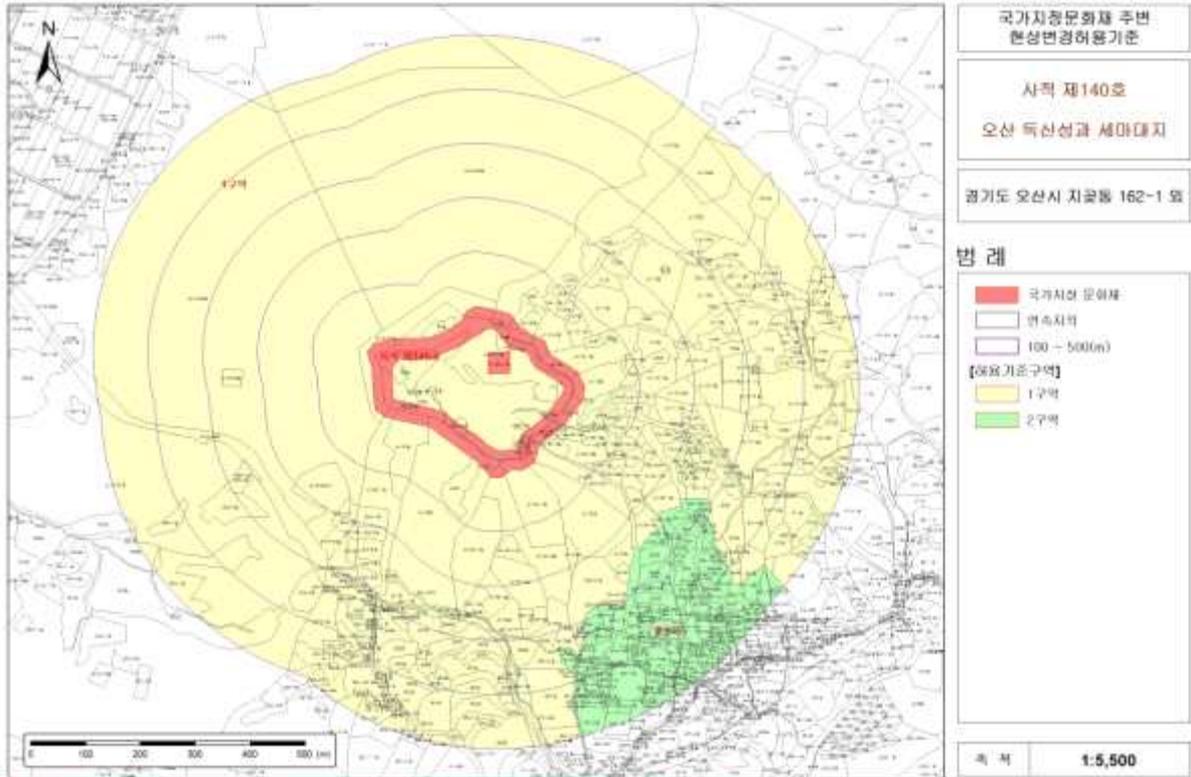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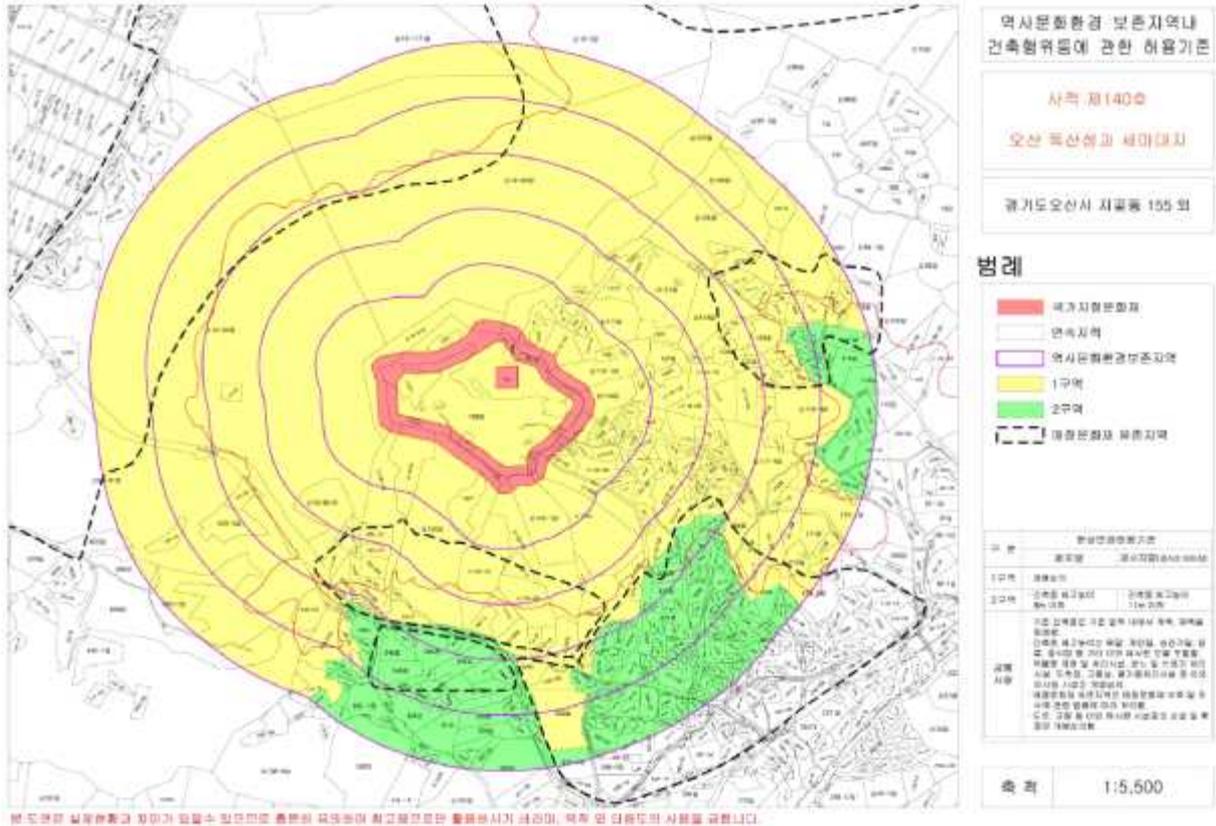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제140호 / 1964.8.29.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1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조정안은 독산 아래 골짜기 부분 등 최근 건축행위가 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기존 1구역에서 2구역(2층)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임.
- 조정안은 마을 현황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나, 독산 아래 도로는 기존 1구역으로 존치, 지형을 보존토록 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2. 양주 회암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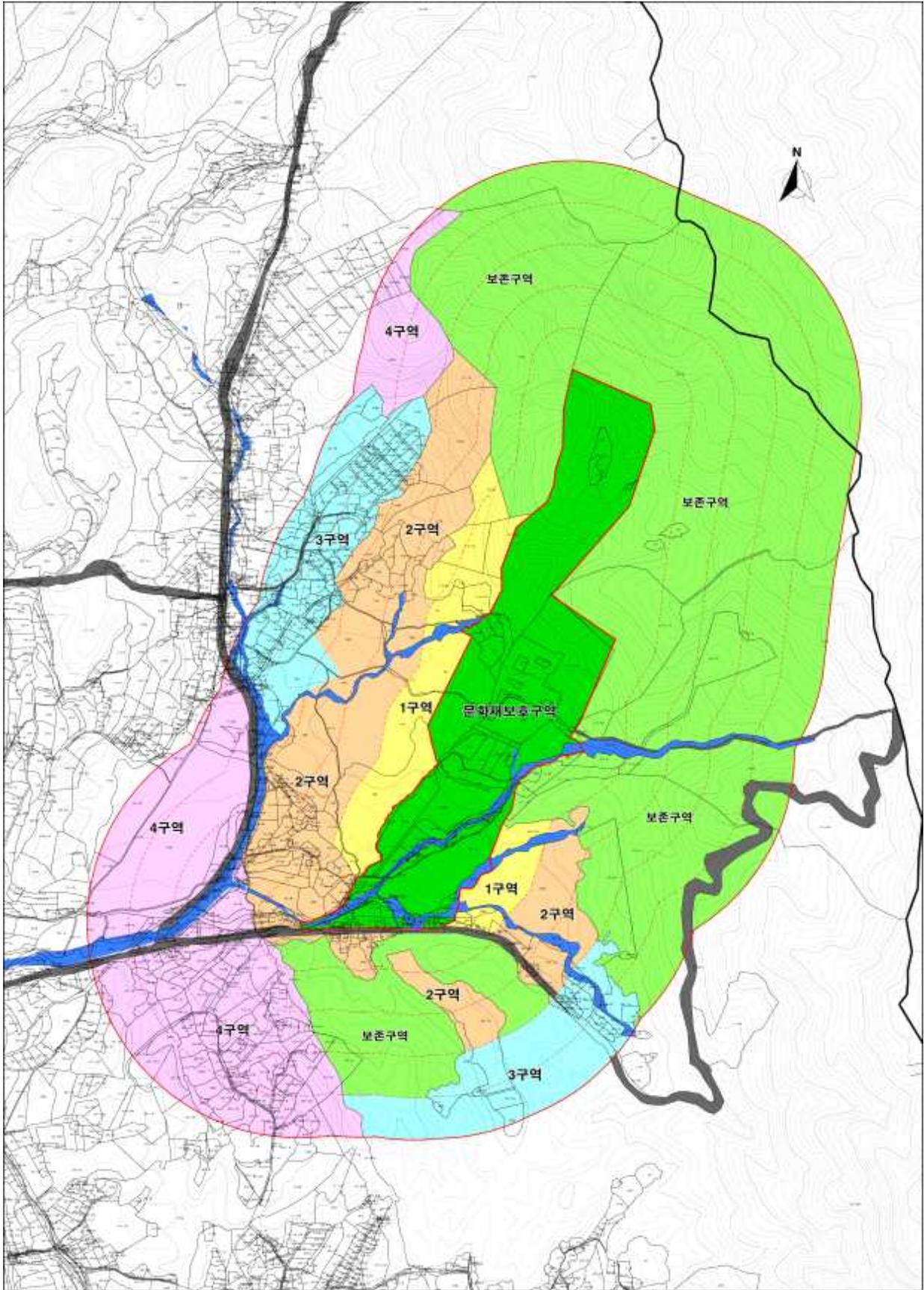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양주 회암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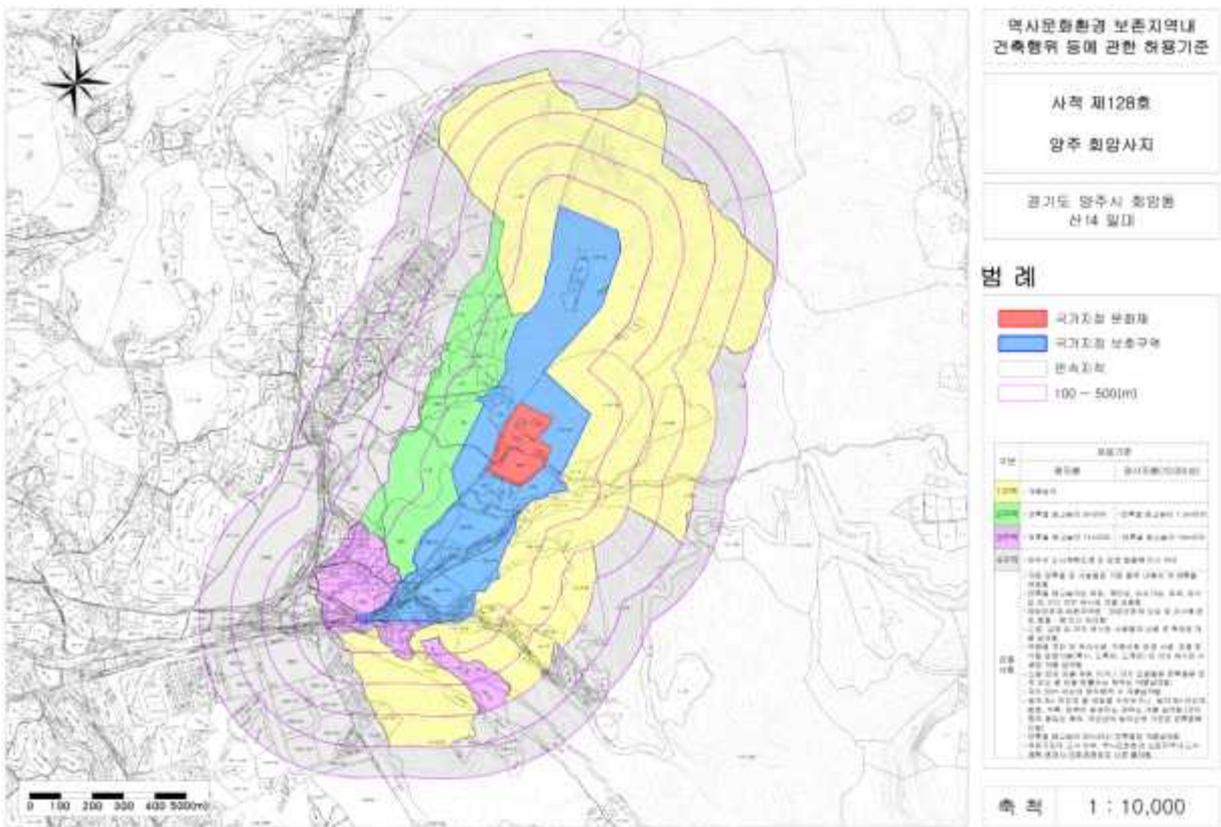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 / 1964.6.10.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 일원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 현행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절대보존 구역	○ 원지형 보존, 건물 신축 불가 ○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 허용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4구역	○ 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시설은 개별심의.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설계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축척은 위와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촬영한 시기가 바뀔때, 축척 등 내용의 정확을 확인합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03/문화재위원 ○○○, ○○○)

- 회암사지의 풍수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북측 산등성이 쪽은 거리가 아닌 능선을 따라 조정토록 하고, 서측은 완충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현 조종안보다 더 확보하며, 동측 또한 능선을 따라 조정하되, 골짜기 부분은 지형 훼손 등을 막기 위해 개별심의구역으로 존치하였으면 함.
- 전면 신도시 개발로 일부 훼손된 안산은 최대한 보존 가능토록 개별심의 구역으로 남겨두었으면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3.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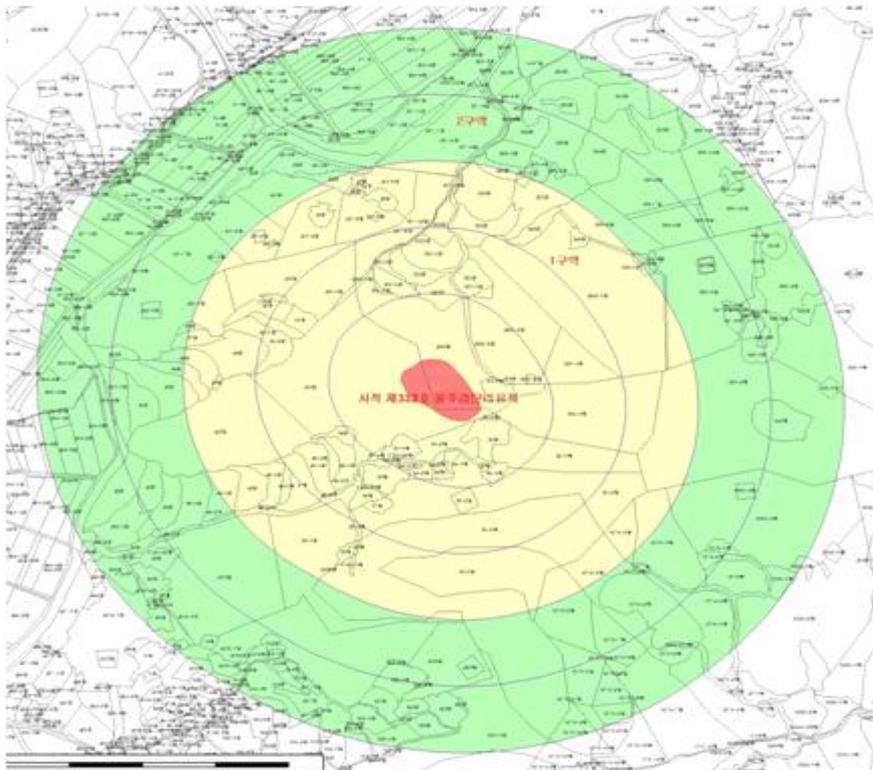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322호 「울주 검단리 유적」의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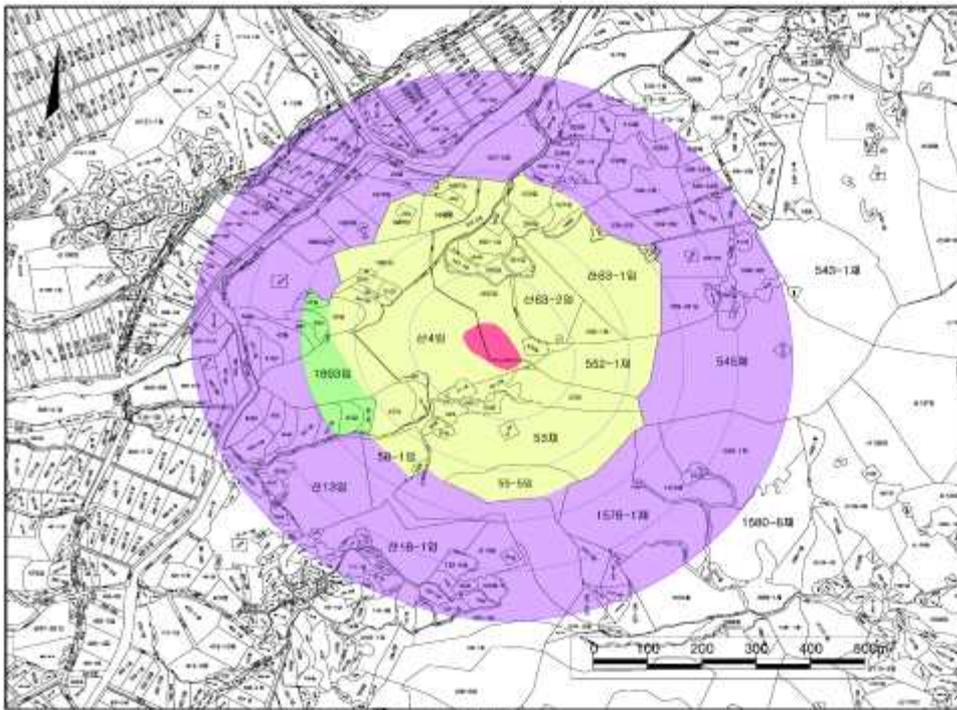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계획」에 따라 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검단리 유적(사적 제332호 / 1990.08.21.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62번지 외
- (3) 신청내용<울주 검단리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 지자체 신청(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사칙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울주 불주군 동춘면
검단리 산62번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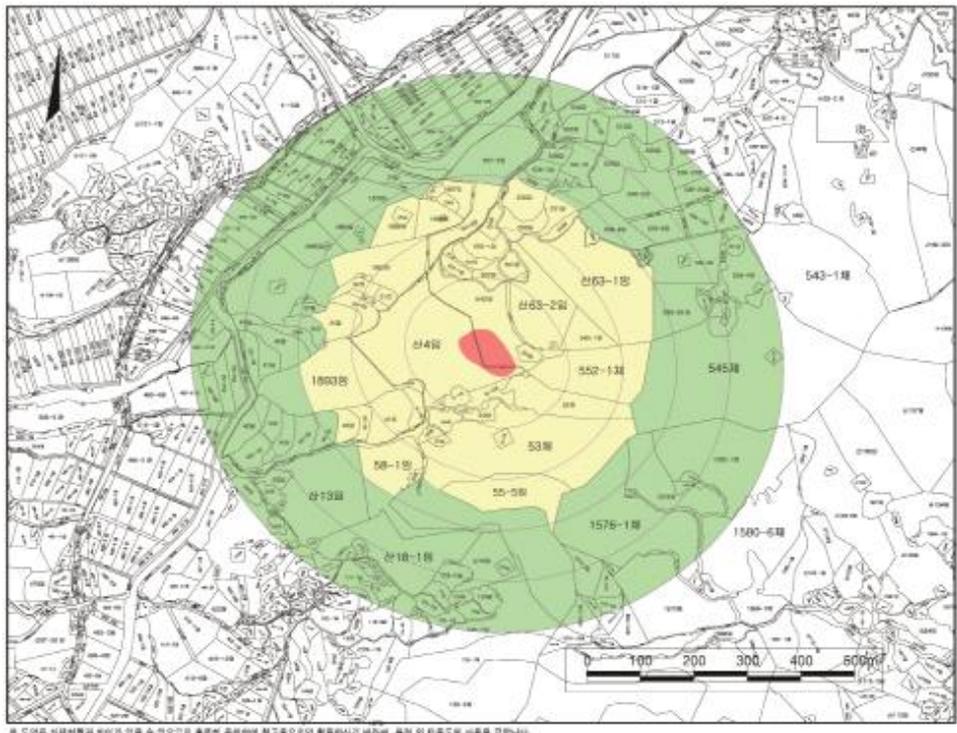
[법 령]

국가지정 문화재
100-500m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구분	유형	제한사항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 현지조사 의견 조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사칙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울주 불주군 동춘면
검단리 산62번지 외

[법 령]

국가지정 문화재
100-500m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구분	유형	제한사항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 허용기준 기존 및 변경내용

구분	기존 허용기준		변경 허용기준(안)	
	평스라브	경사지붕(3:10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보존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울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범위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7/문화재전문위원 ○○○, ○○○)

- 당해 문화재는 면단위 군집형 문화재의 특성을 지닌 선사시대 주거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임.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입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으로 골프장과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에 주요 검토기준인 장소성(입지여건)과 일체성(유구출토가능성,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기존의 개발정도를 고려하여 영향검토구역 외곽의 도시계획 정합성 제고는 유효하다 하겠으나, 향후 개발 가능성 및 근접한 시지정문화재와의 일체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경 300m주변은 개별심의를 통한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 이 경우, 구획선은 지형 및 필지 구획선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4. 울주 천황산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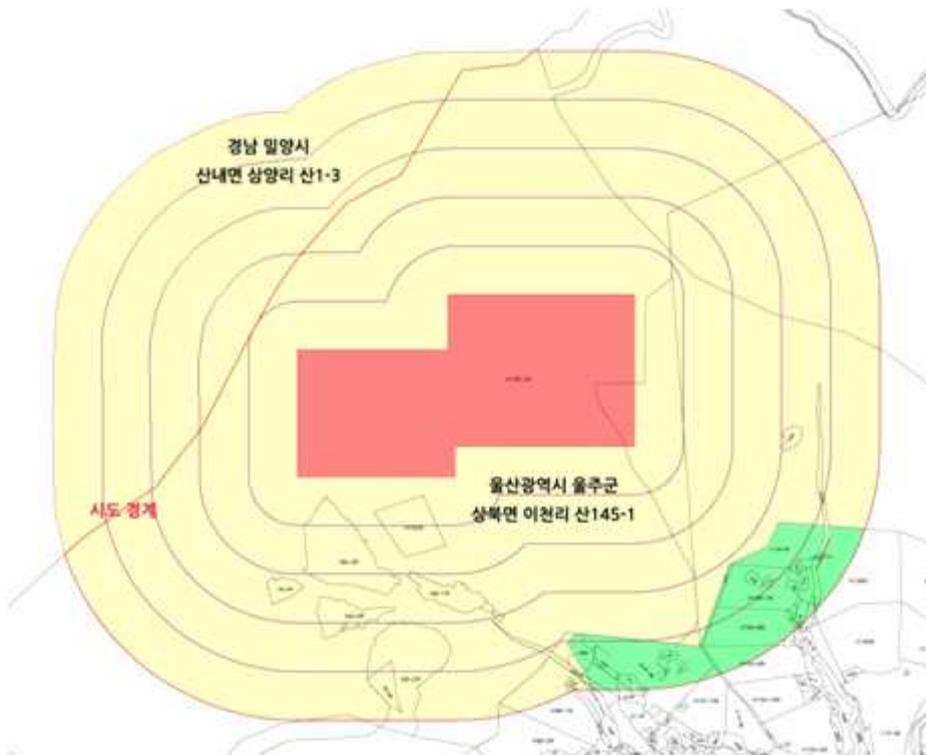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29호 「울주 천황산 요지」의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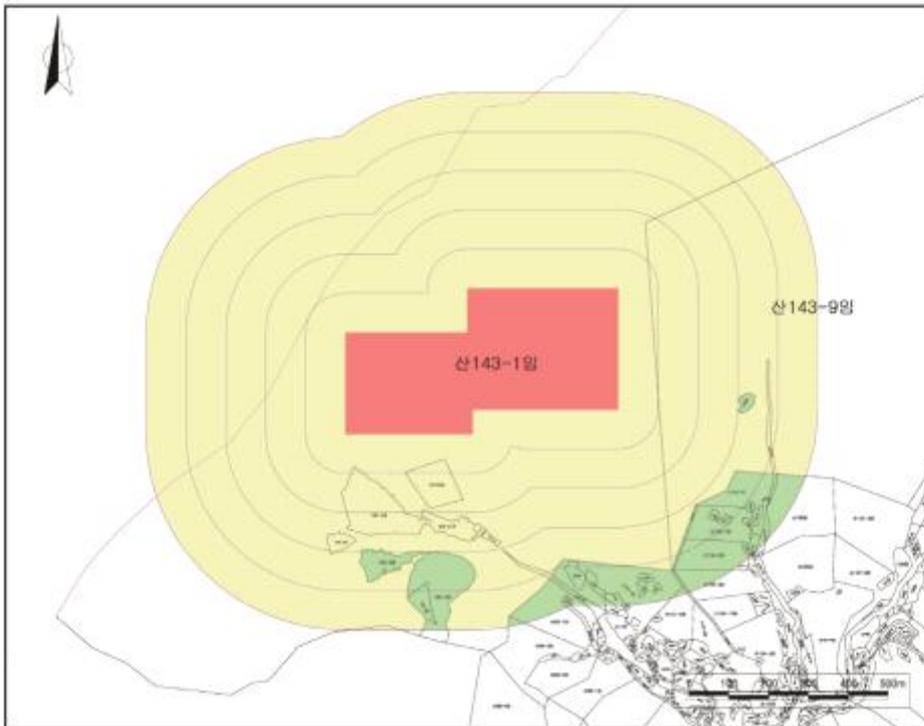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계획」에 따라 울주 천황산 요지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천황산 요지(사적 제129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43-1
- (3) 신청내용<울주 천황산 요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 지자체 신청(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사적 제129호
들주 천황산 오지

울산 울주군 삼북면
이천리 산1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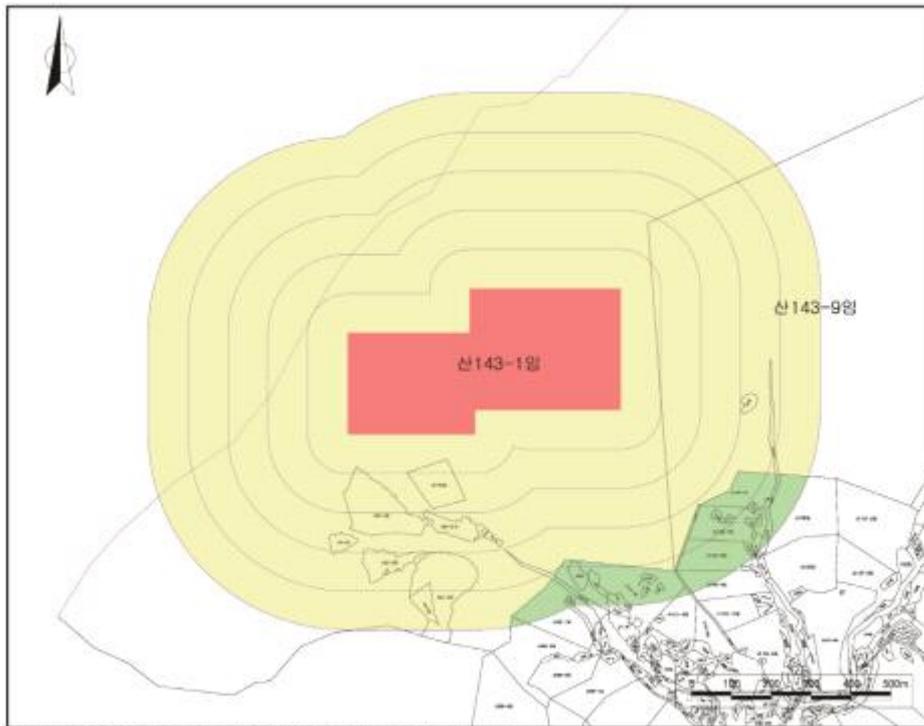
[범례]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
 연속지적
 100-500m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행위종류	제한기준(안)
문화유산	국가지정 문화유산	문화유산보호지역내의 개발행위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자연유산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경관유산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 현지조사에 따른 조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사적 제129호
들주 천황산 오지

울산 울주군 삼북면
이천리 산143-1

[범례]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
 연속지적
 100-500m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행위종류	제한기준(안)
문화유산	국가지정 문화유산	문화유산보호지역내의 개발행위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자연유산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경관유산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국유재산 또는 사유지

본 도면은 실제현장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자 문의하여 실측결과에 따른 불합치시 사후에, 특히 토 사용목적 사용용도 변경시나

○ 허용기준 기존 및 변경내용

구분	기존 허용기준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보존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범위내 제·개축 및 보수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7/문화재전문위원 ○○○, ○○○)

- 당해 문화재는 면단위 독립형 문화재의 특성을 지닌 가마터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임.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입지는 북고남저형의 산림지대에 위치하고 북서측으로 밀양시와 경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되어 있음
- 이에, 주요 검토기준인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경역, 유구, 환경연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지형적 특성 및 개발정도, 그리고 가마터의 기능과 관계된 유적(재료산지, 운반로)과의 일체성을 고려한 개별심의구역 설정과 개발가능성을 고려한 남동측 경계부의 고도제한구역설정은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5. 삼척 이승휴 두타산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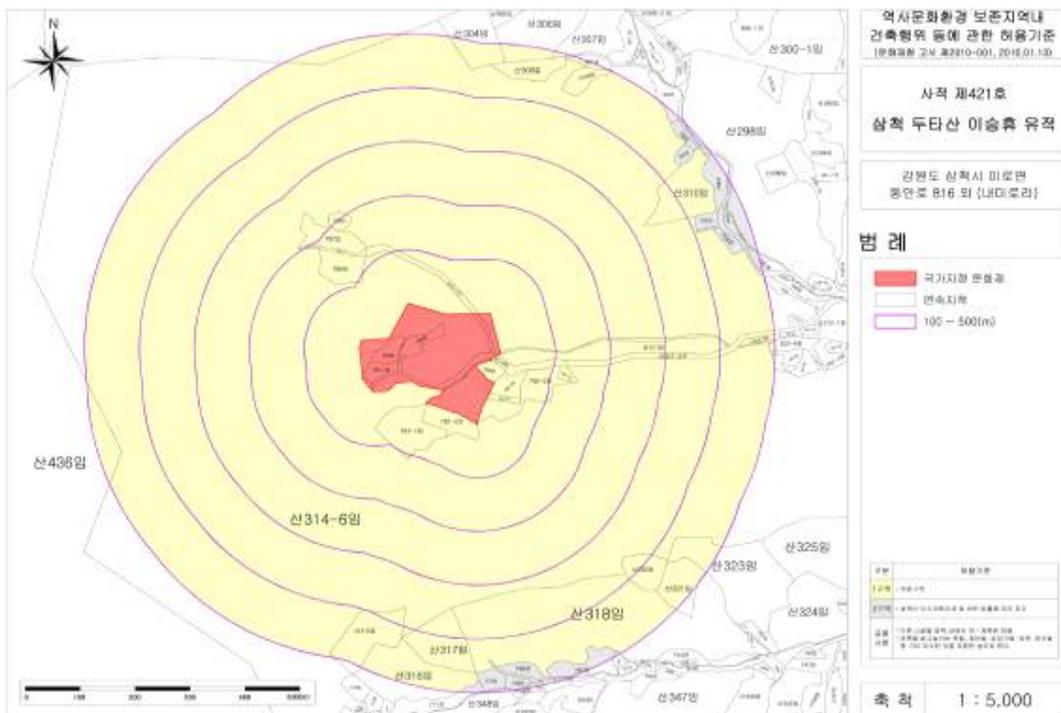
강원도 삼척시 소재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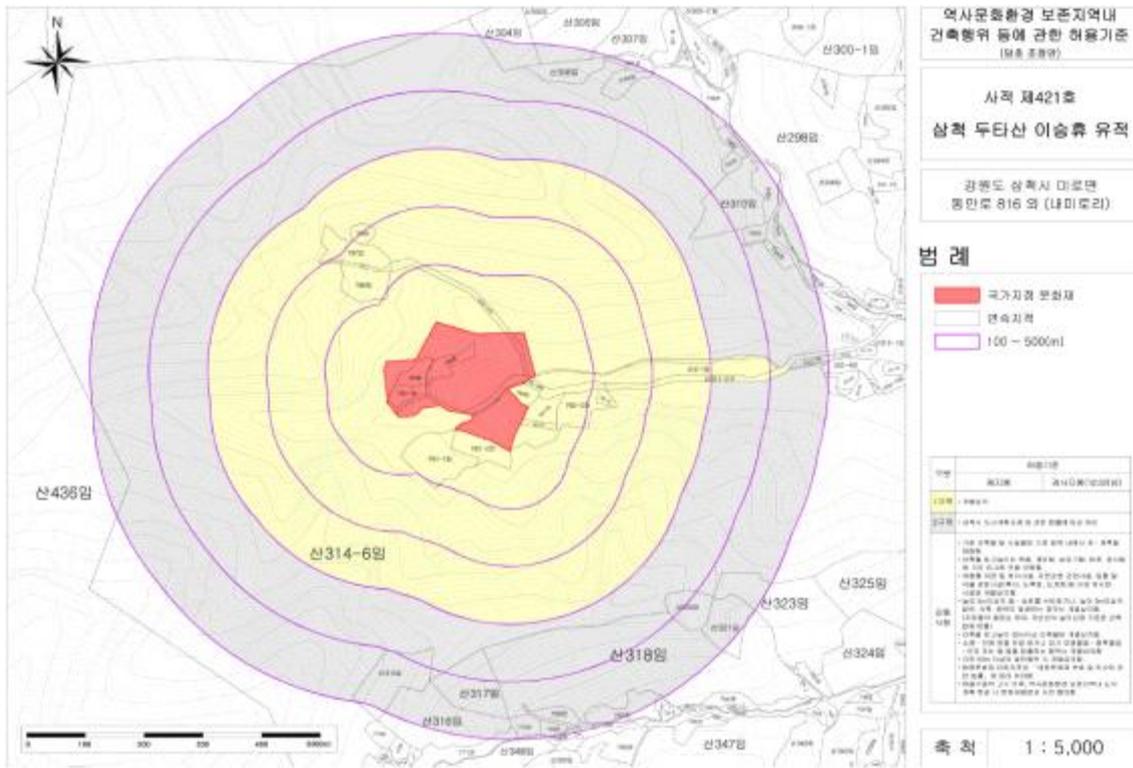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계획」에 따라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주변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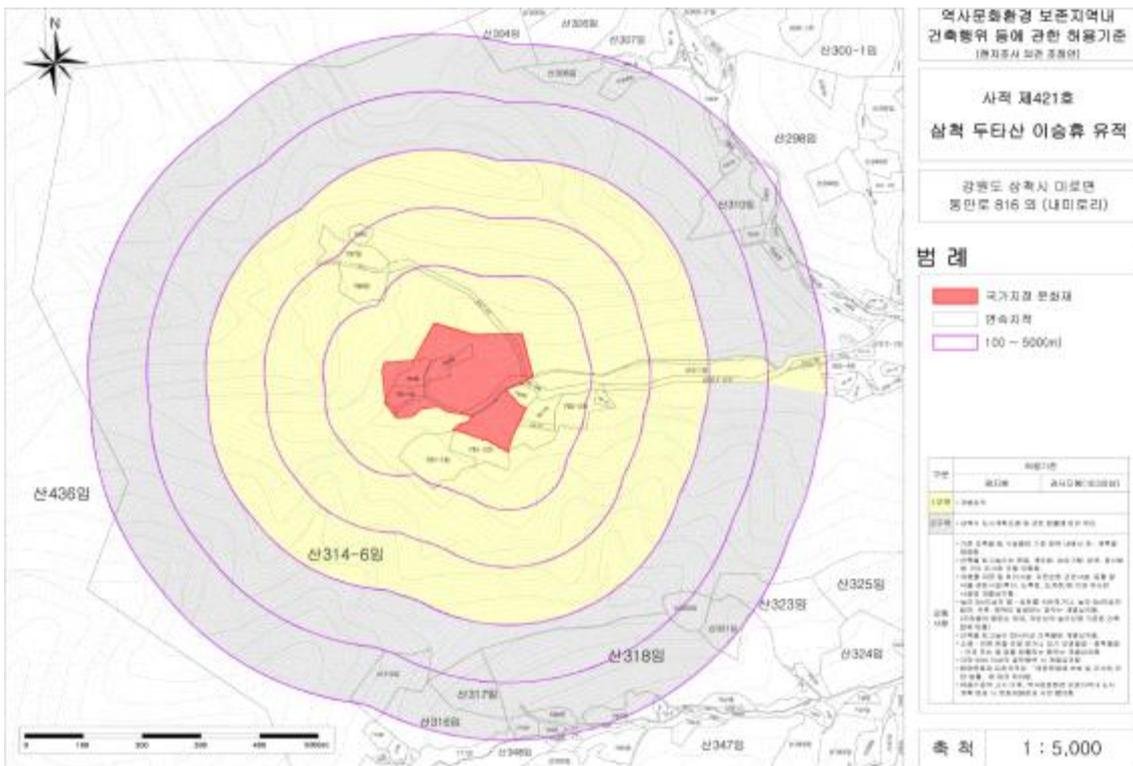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사적 제421호 / 2000.09.16.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816
- (3) 신청내용<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 현행



○ 지자체 신청(안)



○ 현지조사 의견 조정(안)



○ 허용기준 기존 및 변경내용

구분	기존 허용기준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보존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은 허용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31/문화재전문위원 ○○○)

- 삼척 이승휴 유적은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지었다고 하는 곳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강한 곳임. 지표는 장소성, 일체성 차원에서 300m까지 개별심의 구역으로 하고, 일체성의 차원에서 입구부까지 개별심의 구역으로 한다면 합리적인 조정(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6. 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319호 「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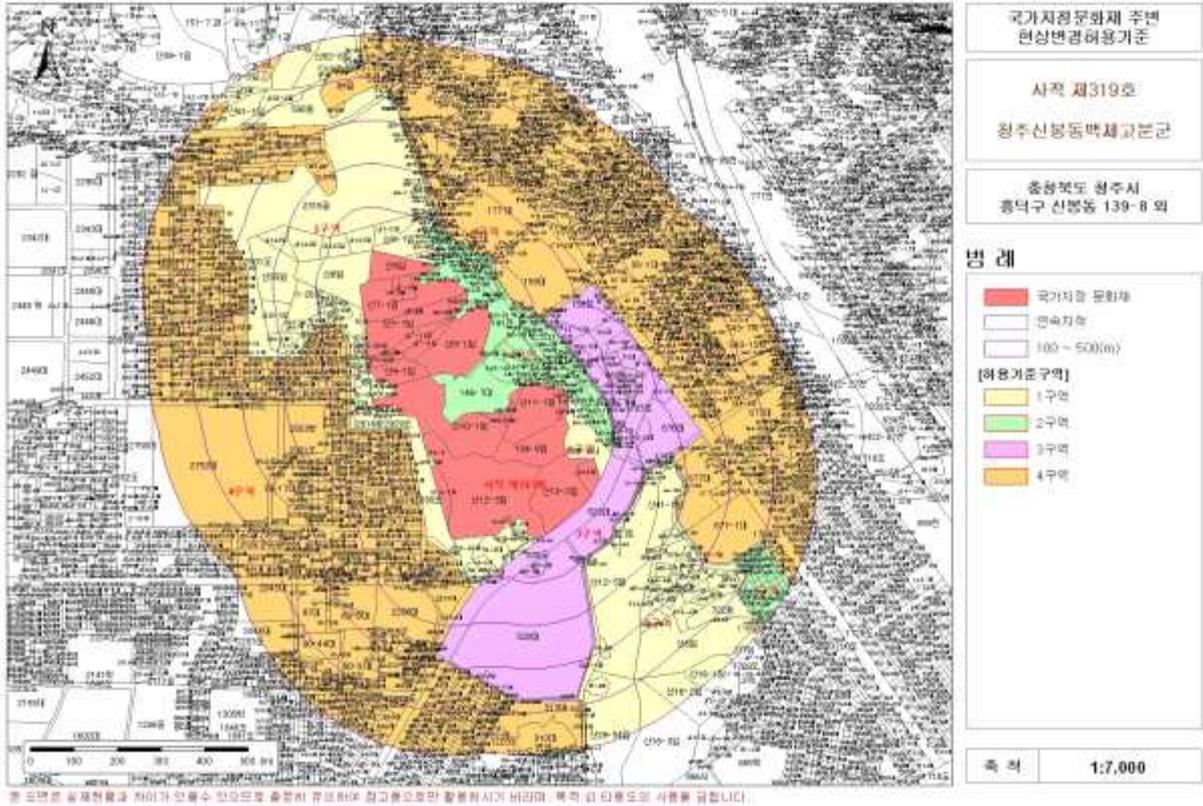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보고드리고 심의받고자 함
 - 사적분과 검토('16.10.26) : 원안가결
 - 행정예고('16.11.14~12.3) : 의견제출 1건(재건축조합)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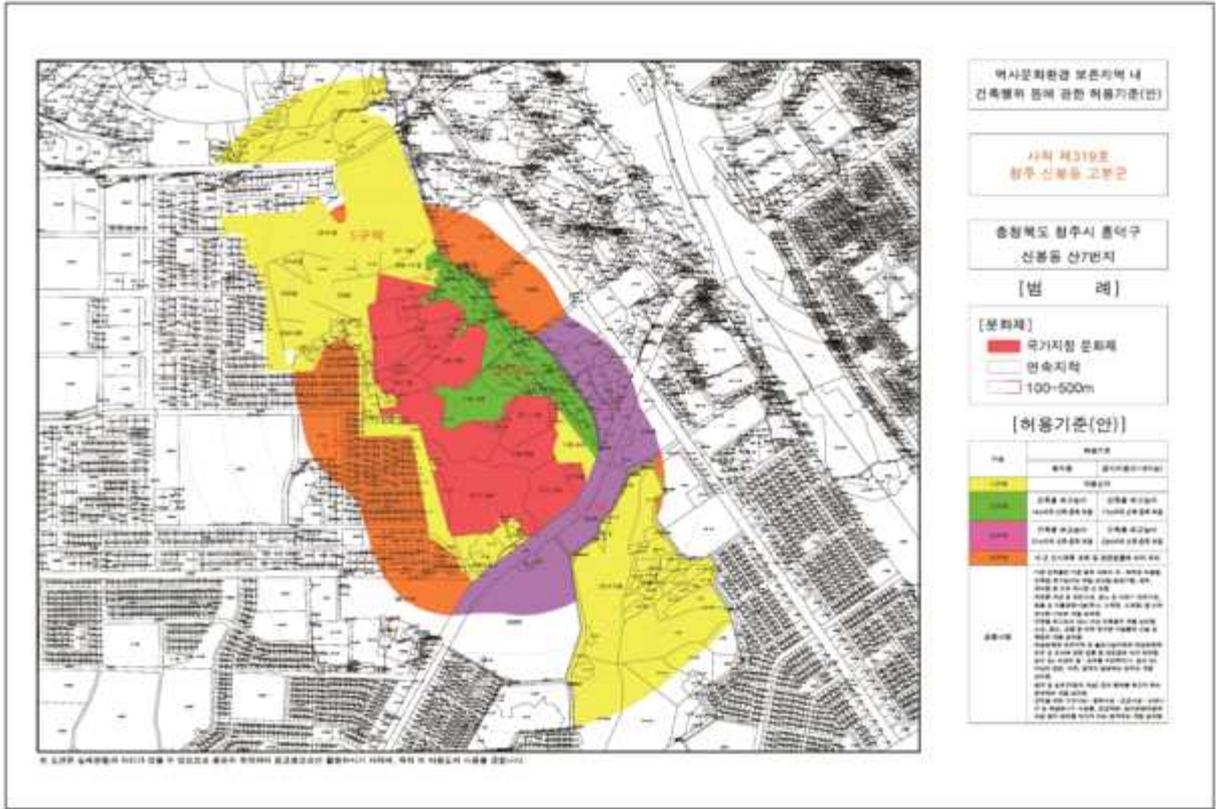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신봉동 고분군(사적 제319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산7번지
- (3) 신청내용<청주 신봉동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7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7층 이하)
제4구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재축 허용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신축·증축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신축·증축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 ○ 벌목 및 임도(작업로 개설)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광역시설·공공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물, 공공벽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0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청주 신봉동 고분군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역사문화환경 5대 지표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분은 장소성·일체성·조망성이 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도시계획에 있어 동·서·남측은 주거지역이며, 북측의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음. 또한 시·도 조례에 의해 도시계획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200m 까지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검토한 바, 주거지역 주변은 200m까지 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연접구역은 현황과 같이 2구역(평지붕 14m/ 경사지붕 17m), 동남측은 3구역(평지붕 21m/ 경사지붕 23m), 북측의 녹지지역은 500m까지 허용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접 임야는 1구역(개별심의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16.11.12/○○○)

- 고분군 남측과 35m 광로로 이격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지역은 완전히 해제하거나 허용기준 4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함
- 허용기준의 지정은 청주시의 도시계획(운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당연히 반영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에 이미 재건축구역(15층~20층)으로 고시된 지역은 해제하거나 4구역(시의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으로 지정함이 마땅함

- 서쪽 봉덕초 인근 고분군과 소로로 근접한 사유지는 4구역으로 하면서, 남측 대로로 이격된 운천주공을 3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주민 재산권 침해정도에서도 불평등함
- 고분군의 동쪽에 중로로 이격된 신봉동 삼성아파트와 우림필유아파트를 4구역으로 하면서 남측에 대로로 이격된 운천주공을 3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37.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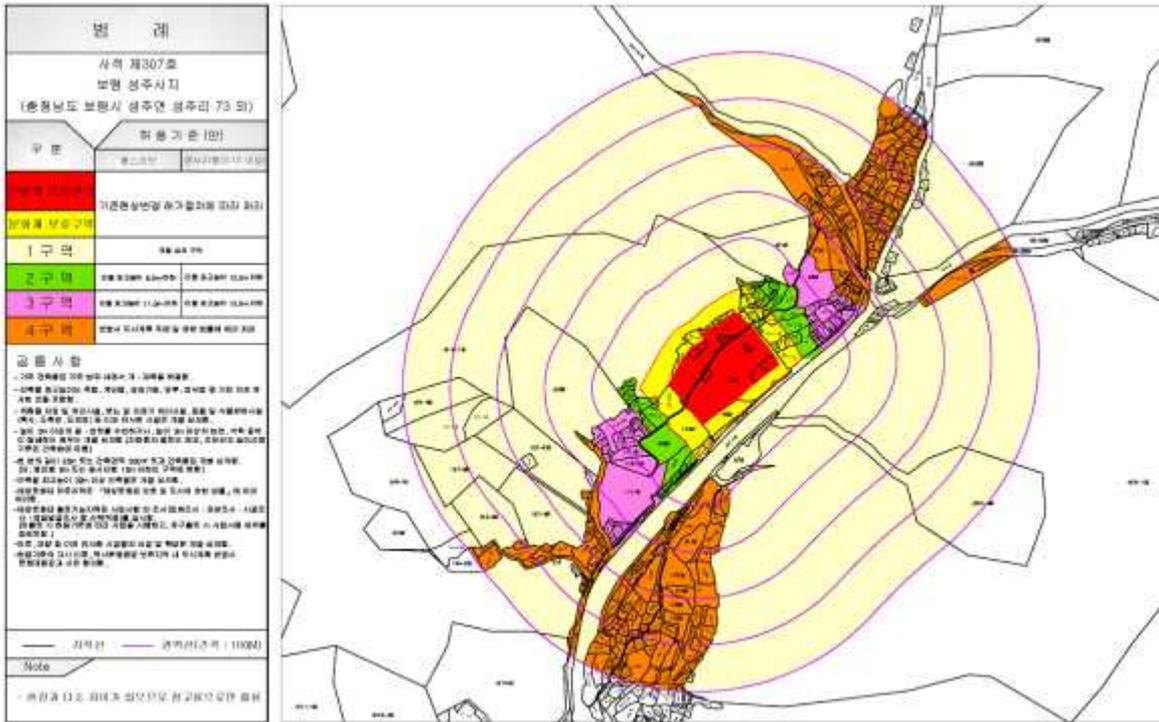
- 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 (3) 신청내용<보령 충청수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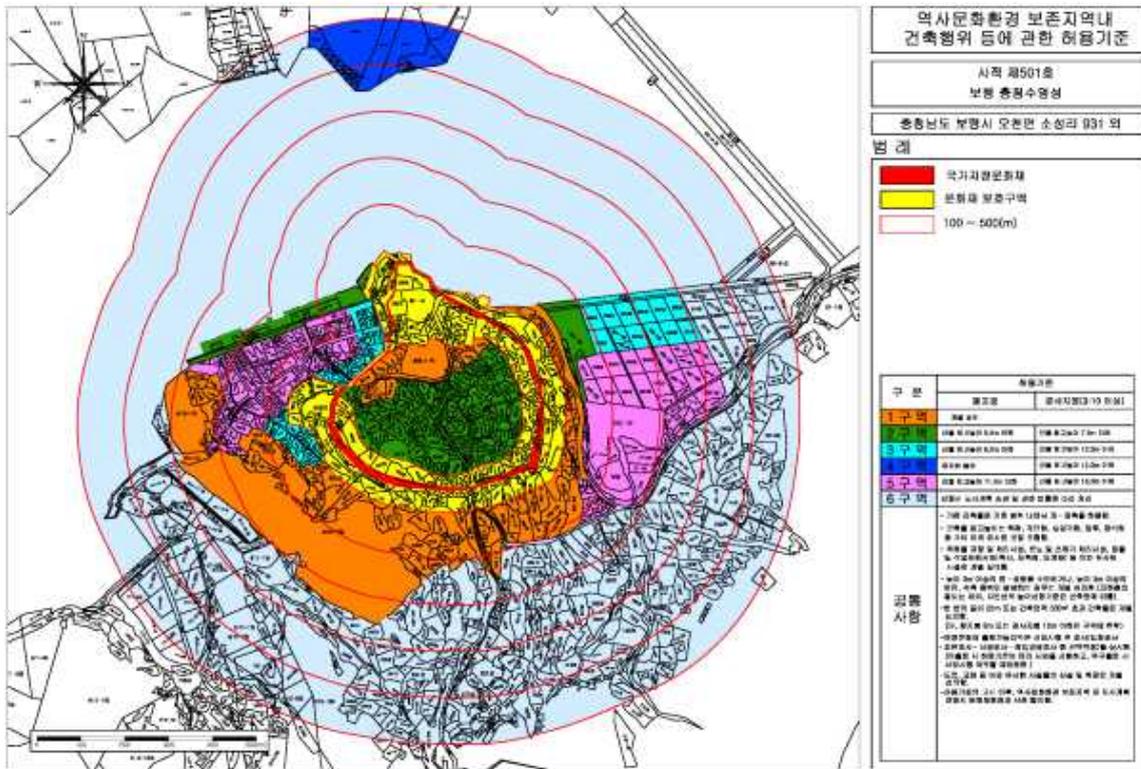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 기존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동굴, 번식지, 서식지)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4구역	○ 평지붕 불허	○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0m이하
6구역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0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보령 충청수영성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수영성의 건너편은 조망성이 중요한 곳으로 경사지붕에 한하여 2층 규모로 제한될 필요가 있으며, 충청수영성을 둘러싼 남측의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동측의 논은 한켜를 1층 규모로 하고, 바닷가측은 2층규모 그 안쪽은 3층 규모로 한다면 조망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충청수영성의 서측은 기존 마을이 잔존하는 곳으로 연접하여 2층 규모, 바닷가측은 1층 규모 그 안쪽은 3층 규모로 한다면 조망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8. 보령 성주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제307호 「보령 성주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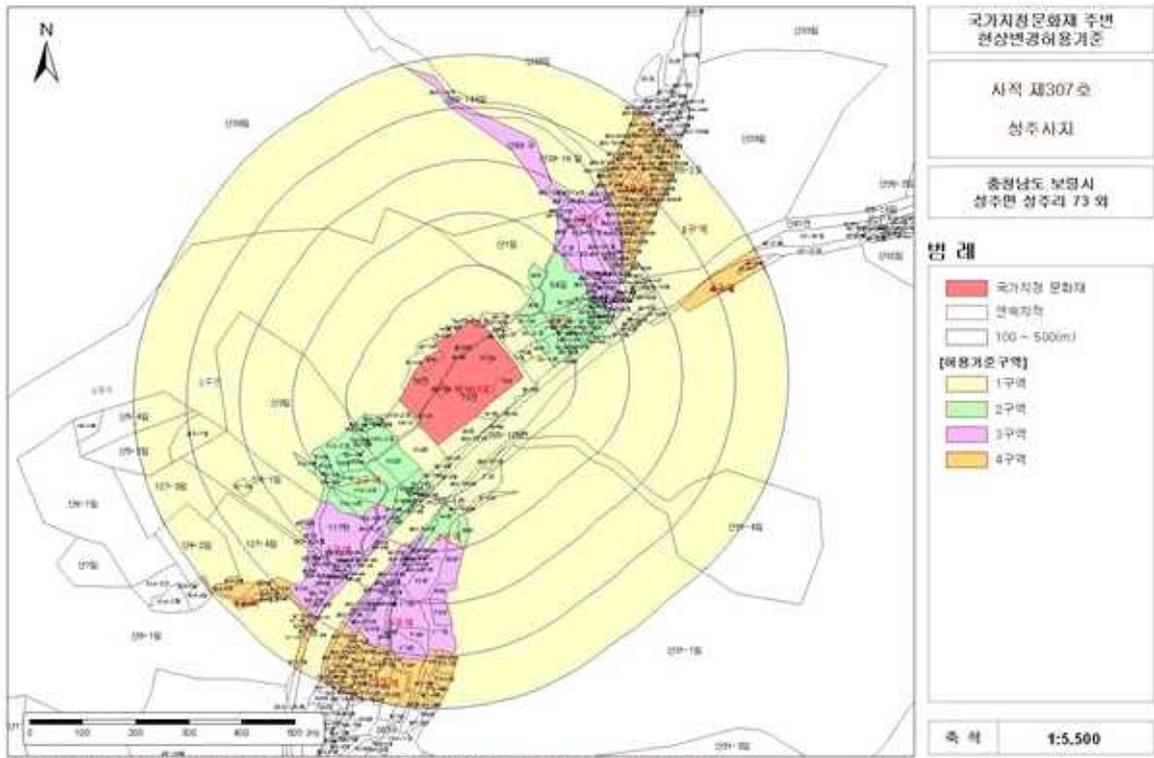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보령 성주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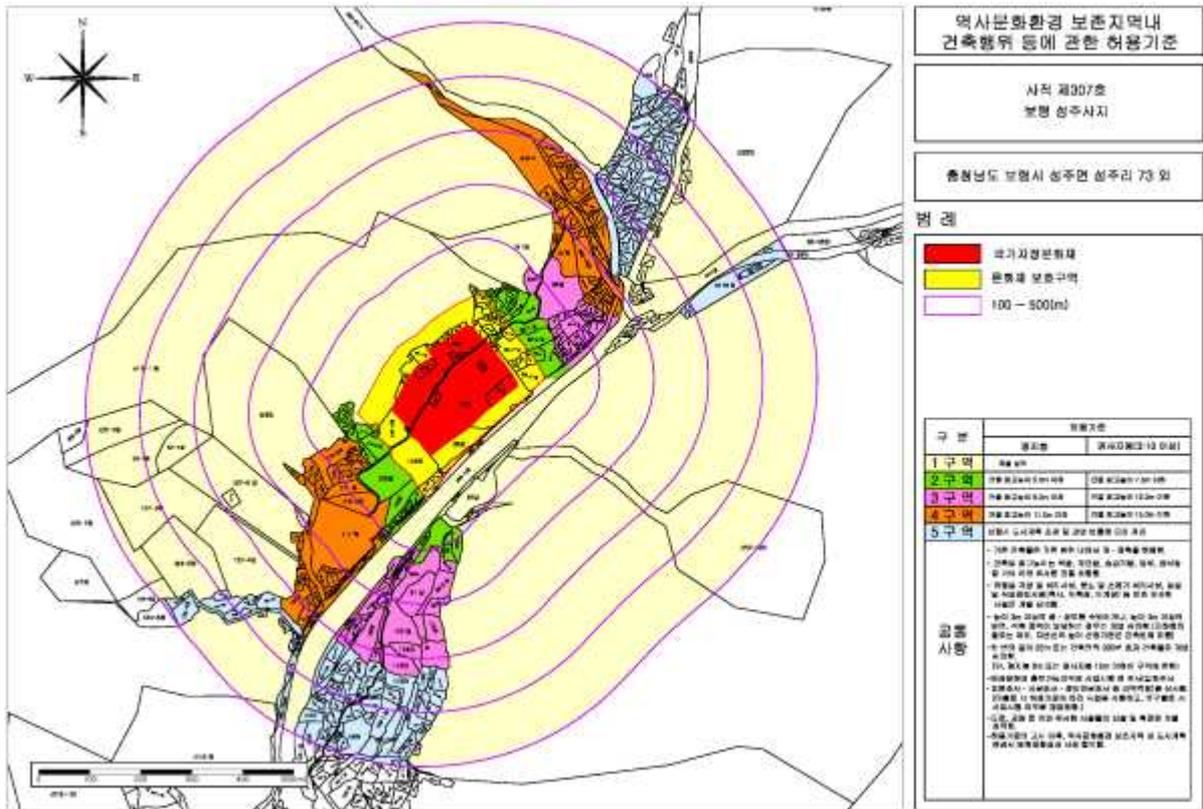
- (1) 신 청 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외
- (3) 신청내용<보령 성주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4구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개·재축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 제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조사 여부에 대한 발굴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0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0m이하
5구역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0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보령 성주사지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령 성주사지와 일체화된 뒤의 임야와 전면의 하천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측면은 조망성에 있어서 커의 개념으로 가까운 곳은 1층 규모, 그 다음커는 2층 규모, 다음커는 3층 규모, 그 다음은 도시계획 및 관련법에 의한 곳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39. 서산 보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사적 제316호 「서산 보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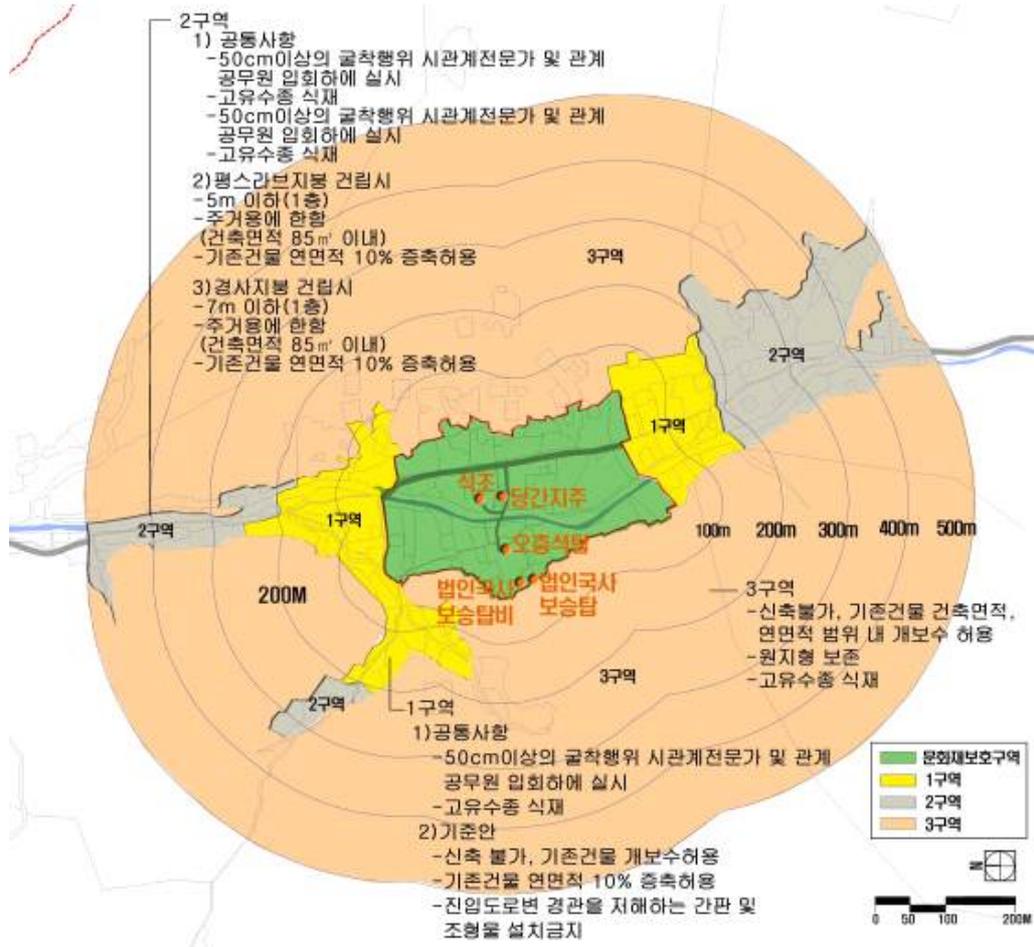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서산 보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 (3) 신청내용<서산 보원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불가, 기존건물 개·보수허용 ○ 기존건물 연면적 10% 증축허용 ○ 진입도로변 경관을 저해하는 간판 및 조형물 설치금지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m 이하(1층) -주거용에 한함 (건축면적 85㎡ 이내) -기존건물 연면적 10% 증축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m 이하(1층) -주거용에 한함 (건축면적 85㎡ 이내) -기존건물 연면적 10% 증축허용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불가, 기존건물 건축면적·연면적 범위 내 개·보수 허용 ○ 원지형 보존 ○ 고유수종 식재 		
1, 2구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cm이상의 굴착행위 시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 고유수종 식재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0. 서산 해미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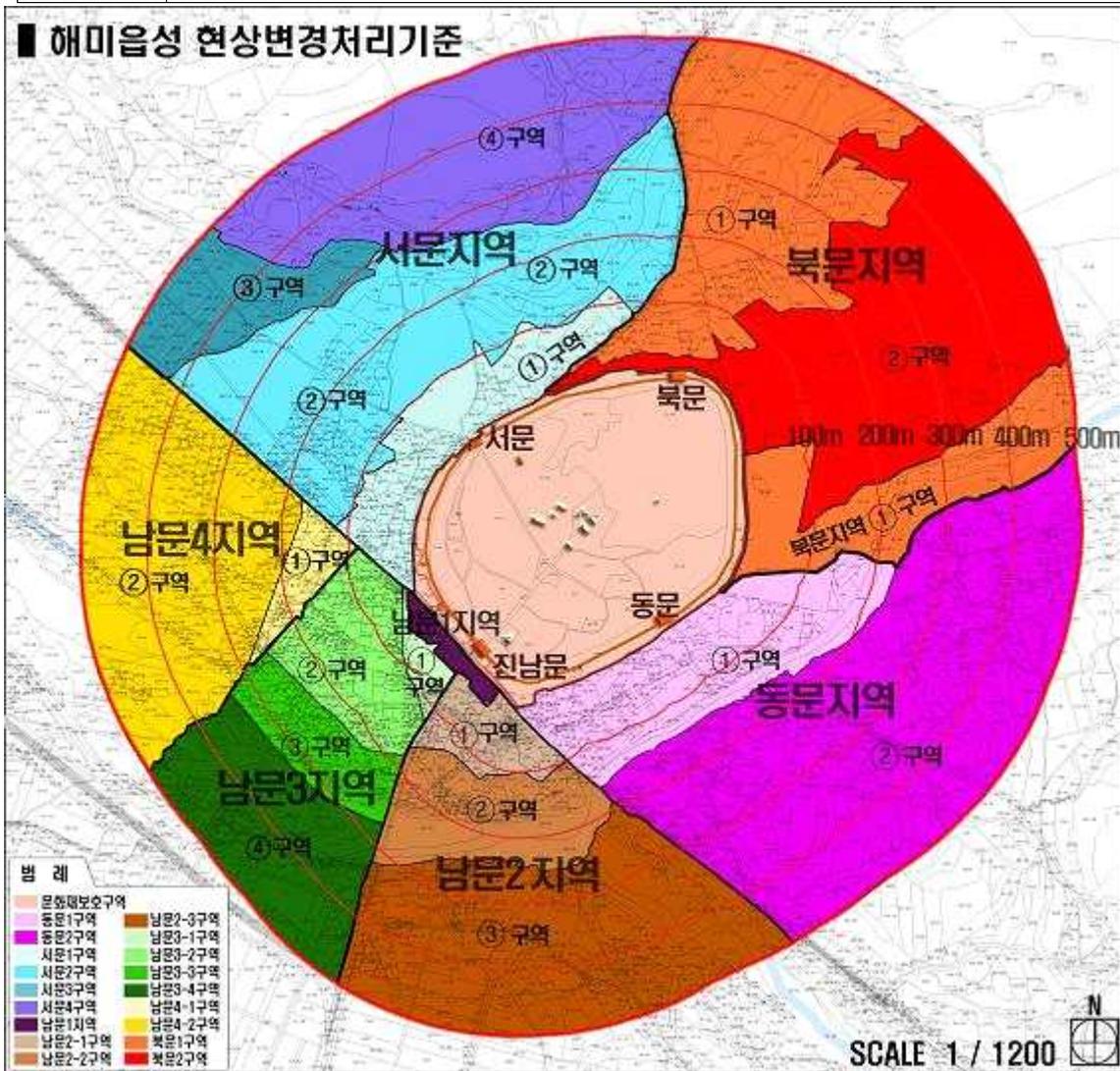
- 서산 해미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산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6
- (3) 신청내용<서산 해미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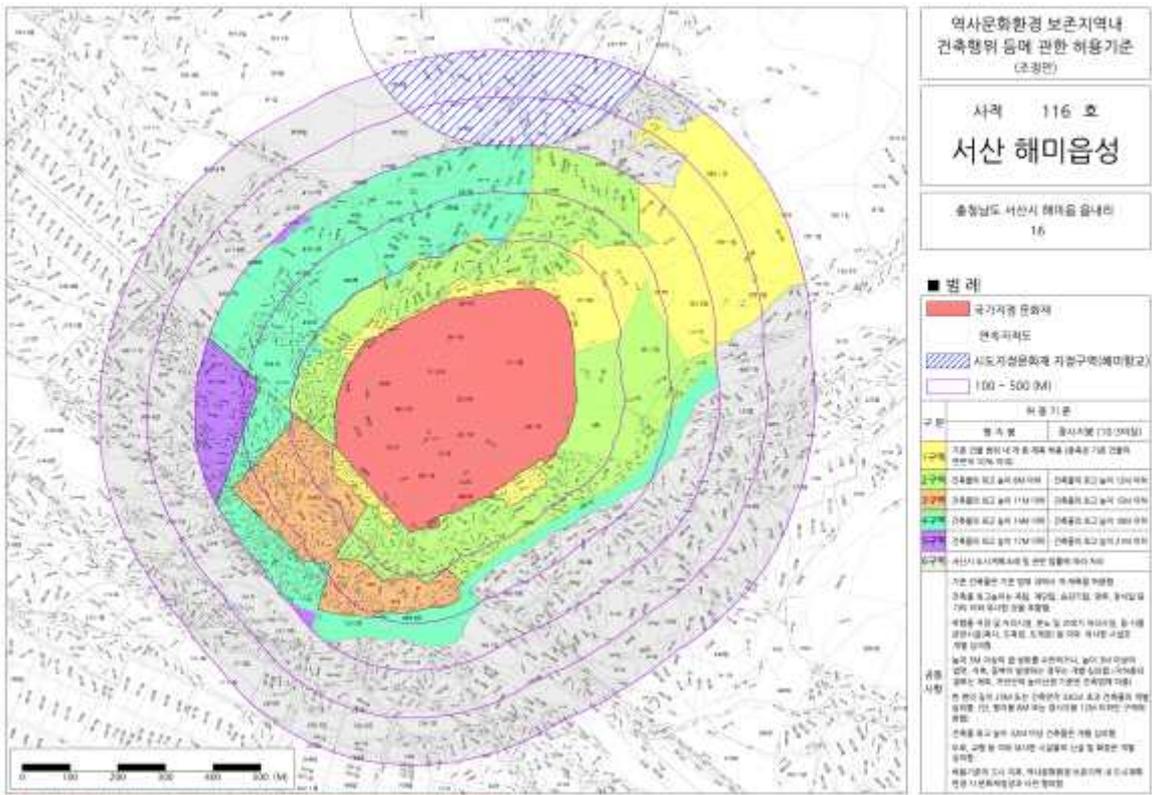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동문 지역	1구역	8m이하(2층)	10m이하(2층)	
	2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서문 지역	1구역	8m이하(2층)	10m이하(2층)	
	2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3구역	17m이하(5층)	19m이하(5층)	
	4구역	11m이하(3층)	13m이하(3층)	
남문 1지역		○ 신축불가, 기존건물 개·재축 허용 ○ 기존건물 연면적 10%증축 허용(단 증축은 1회에 한함.)		
남문 2지역	1구역	8m이하(2층)		
	2구역	11m이하(3층)	13m이하(3층)	
	3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남문 3지역	1구역	8m이하(2층)		
	2구역	11m이하(3층)	13m이하(3층)	
	3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4구역	17m이하(5층)	19m이하(5층)	

남문 4지역	1구역	14m이하(4층)	16m이하(4층)	
	2구역	17m이하(5층)	19m이하(5층)	
북문 지역	1구역	8m이하(2층)	10m이하(2층)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 기존건물 개·재축 허용 ○ 기존건물 연면적의 10% 증축 허용(단 증축은 1회에 한함.) ○ 고유수중 식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곽 보호구역 50m이내에서 굴착 행위가 발생하는 건축 공사 시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 고유수중 식재 ○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 기존 건물 범위내 개축·증축·재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10% 이내)		
2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1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4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8m 이하	
5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7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21m 이하	
6구역	○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1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서산 해미읍성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일괄하여 통일 시킨 것으로 개발현황을 볼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단, 해미읍성과 연결한 도로는 해자 통과선으로 사료되며, 하천도 일체성의 관점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확인 후 재검토

41. 아산 이층무공 유허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적 제155호 「아산 이층무공 유허」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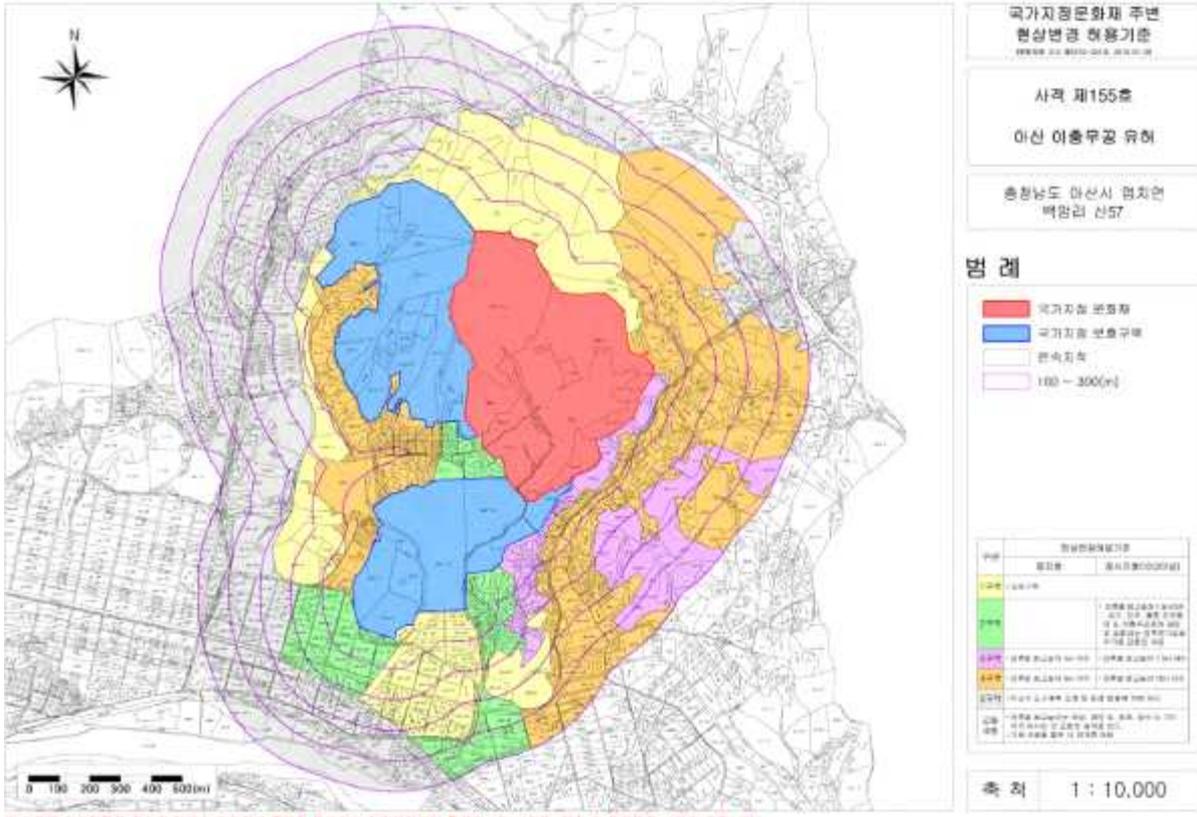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아산 이층무공 유허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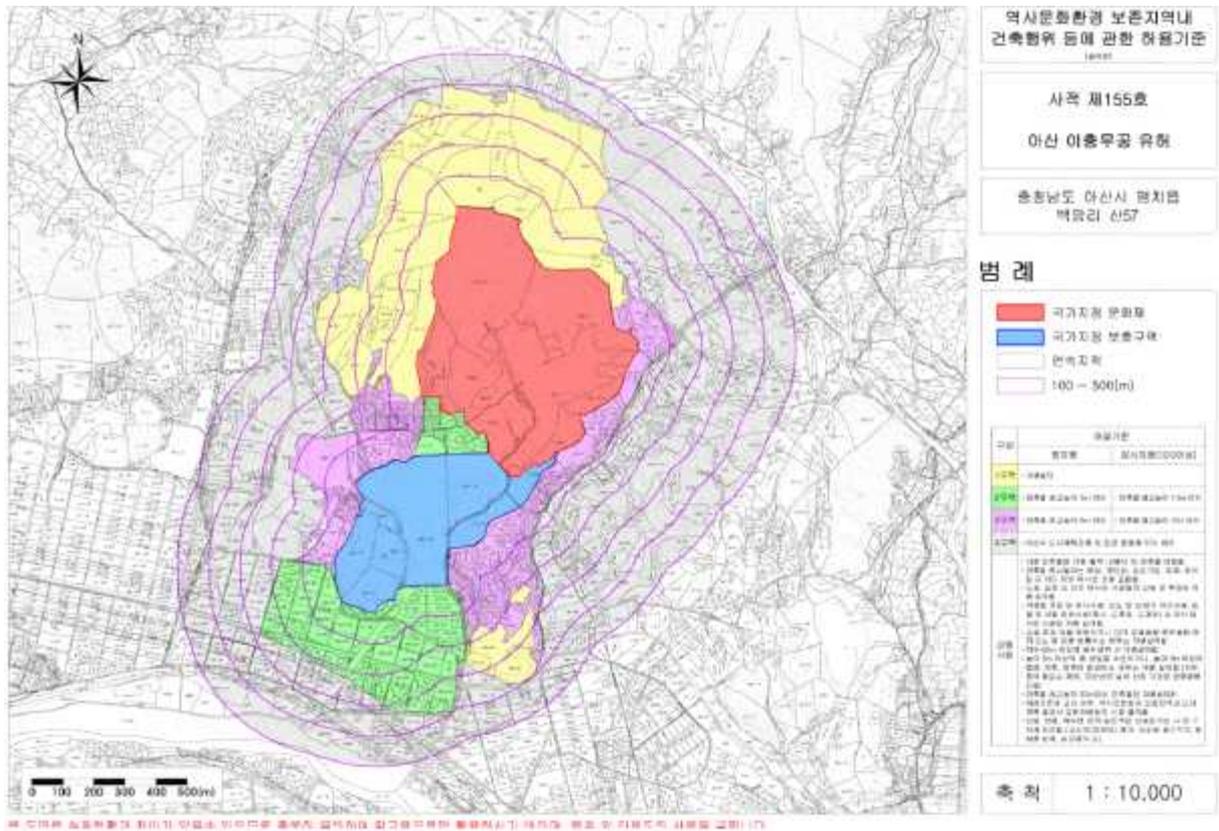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아산 이층무공 유허(사적 제155호)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산57
- (3) 신청내용<아산 이층무공 유허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 초가, 한옥, 절충 한옥형태 등 이층무공유허 경과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으로 주거용 건물만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리	
공통사항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산림, 깃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24/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아산 이충무공 유허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산 이충무공 유적은 보호구역의 해제 및 추가지정에 따라 서측의 보호구역이 축소된 상황임.
- 일체성에서 북측의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서측의 연접 이주마을은 1층 규모 그밖은 2층 규모, 남측과 동측의 연접구역은 안산인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하되, 동측과 남측 연접지는 진입 조망에서 도로 안쪽은 1층 규모, 도로 밖은 2층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42. 충주 임충민공 총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 총렬사」 주변 건축 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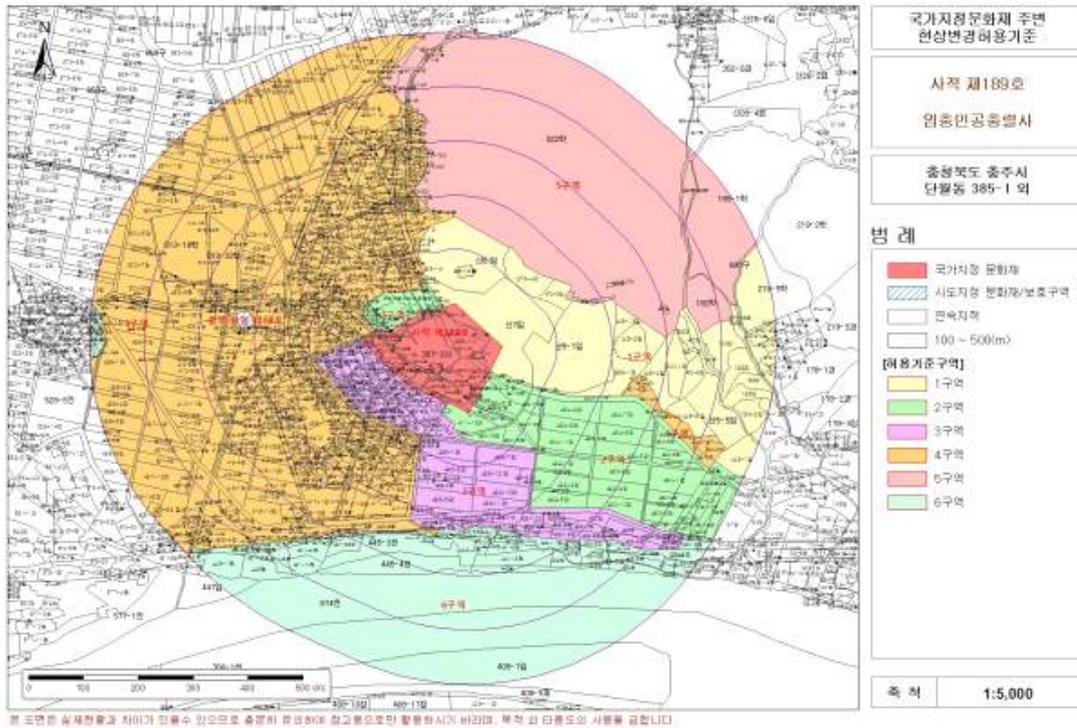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충주 임충민공 총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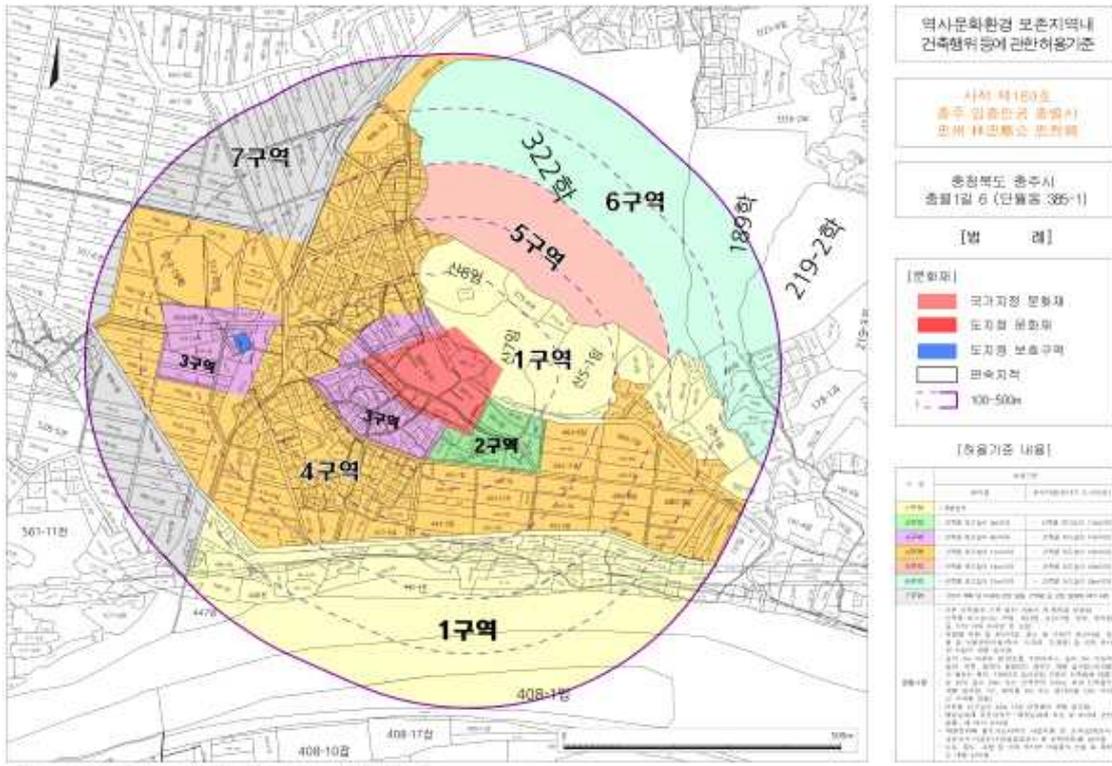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충주 임충민공 총렬사(사적 제189호)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총렬1길 6
- (3) 신청내용<충주 임충민공 총렬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 신축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2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제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7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7층 이하)	
제6구역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개·재축 허용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4m이하
7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는 뒤로 둘러진 숲이 있으며, 주변은 도심화되어 있고, 전면 멀리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음.
- 충렬사의 일체성에서 뒤로 둘러진 임야와 멀리의 하천은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조망성을 위해 측면 연접구역은 1층규모(7.5m 경사지붕→평지붕5m/경사지붕7.5m)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전면 연접구역은 2층 규모를 유지함.
- 그리고 북측의 임야 너머로 건국대학 부지는 마루선에서 한켜는 4층 규모(평지붕14m/경사지붕18m)로 하고 그 다음 커는 기존 6층 규모(평지붕21m/경사지붕24m)를 유지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43. 충주 미륵대원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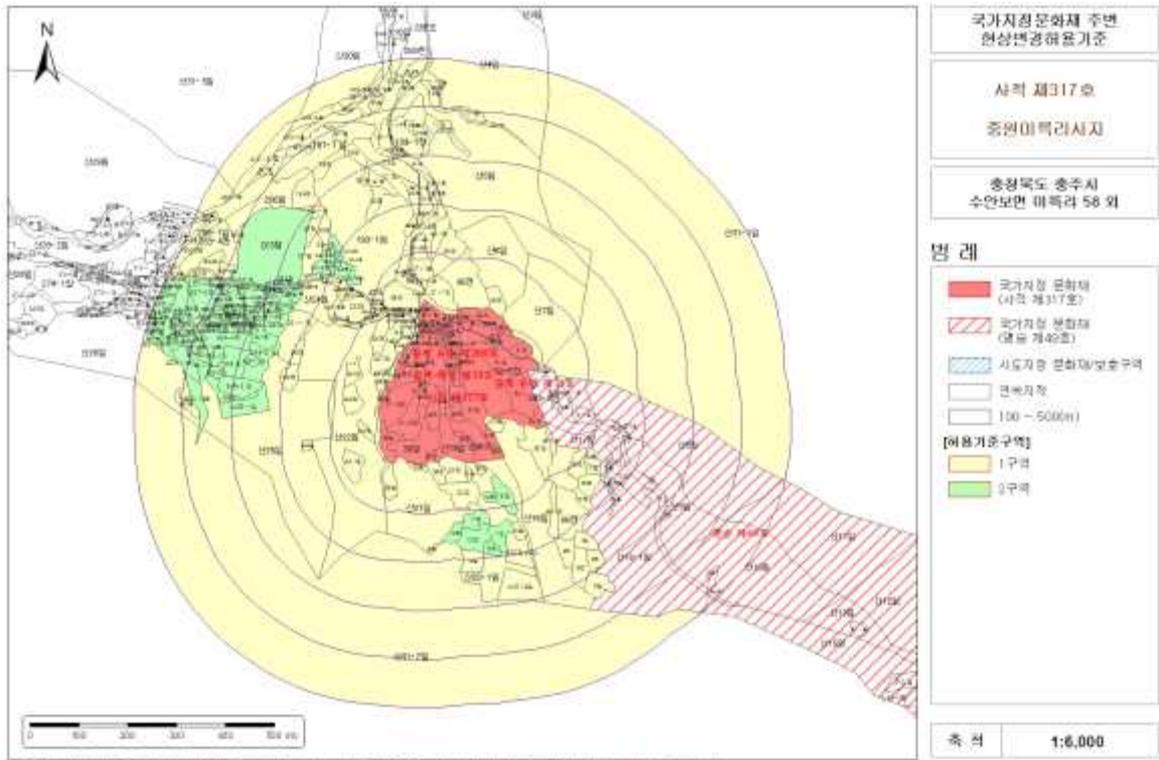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충주 미륵대원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충주 미륵대원지(사적 제317호)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6 외
- (3) 신청내용<충주 미륵대원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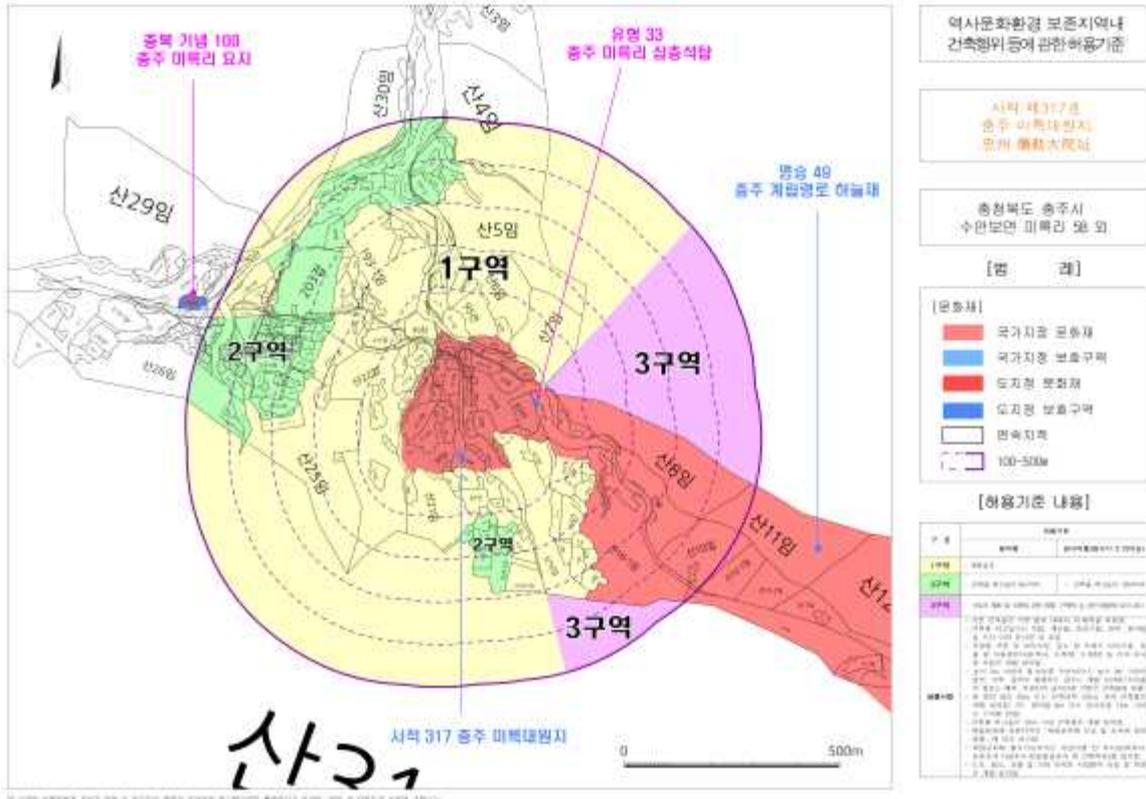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신축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2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공통사항	○ 개·재축 허용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판의 필요성에 맞추어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통보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충주 미륵대원지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주 미륵대원지는 계곡에 위치하며, 명승인 하늘재와 연접하여 문화재구역을 유지하고 있음.
- 미륵대원지로 집입하는 곳의 도로변 전답 등은 조망되지 않고 지형 변화에도 영향이 적어 2층 규모로 확대 허용되어도 일체성, 조망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단, 일체성에서 미륵대원지의 남측 임야, 북측 임야는 제시한 안 보다 확대하여 개별심의구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44. 충주 장미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사적 제400호 「충주 장미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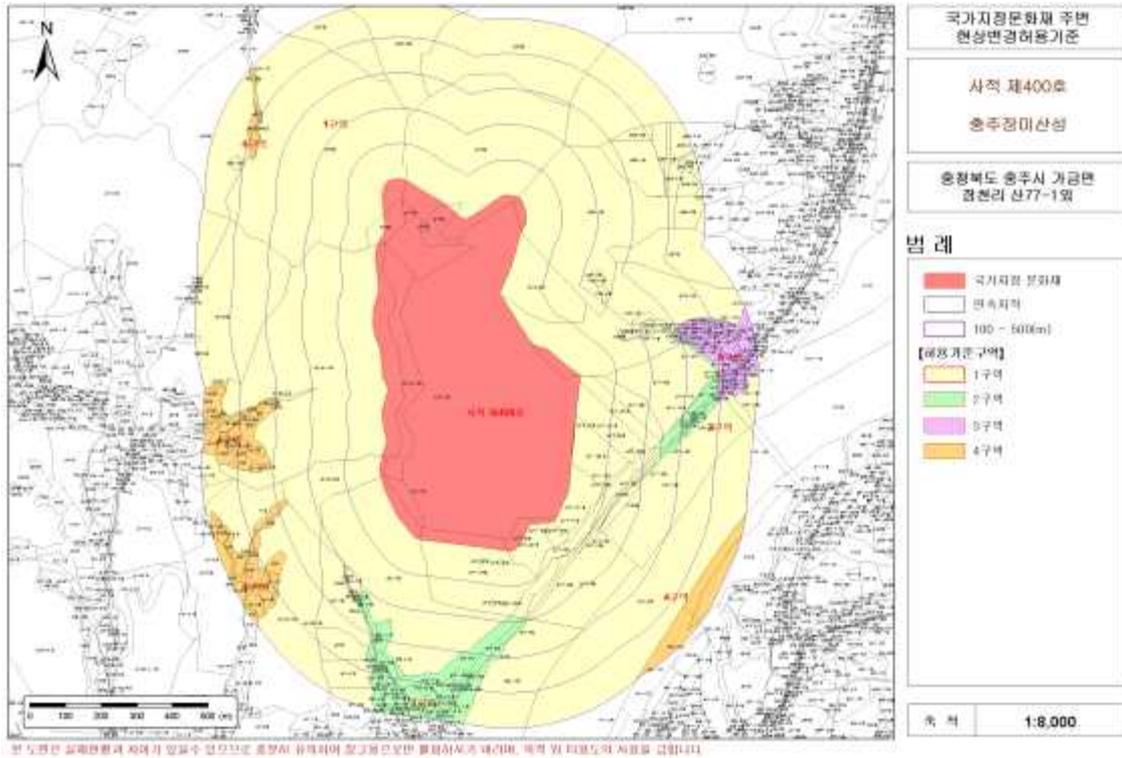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충주 장미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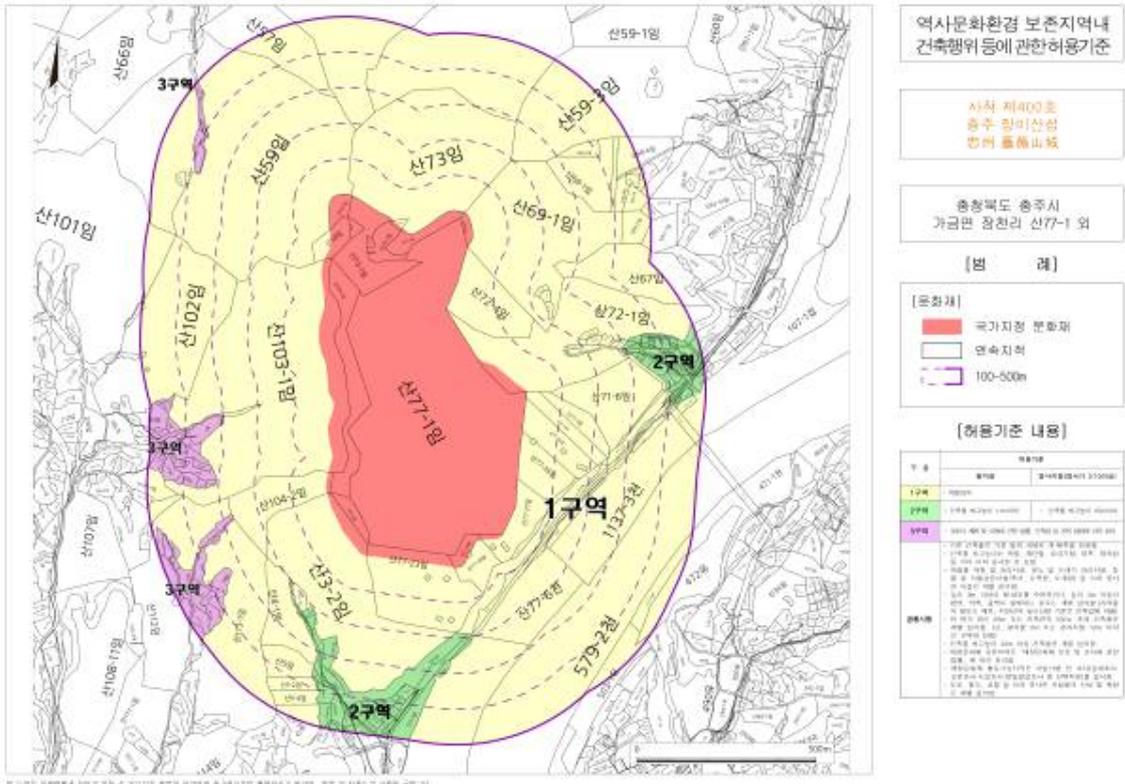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충주 장미산성(사적 제400호)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7-1 외
- (3) 신청내용<충주 장미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충주 장미산성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체성에서 주변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전면의 하천 또한 장미산성과 일체성, 조망성에서 중요하므로 개별심의 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45. 충주 송선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사적 제445호 「충주 송선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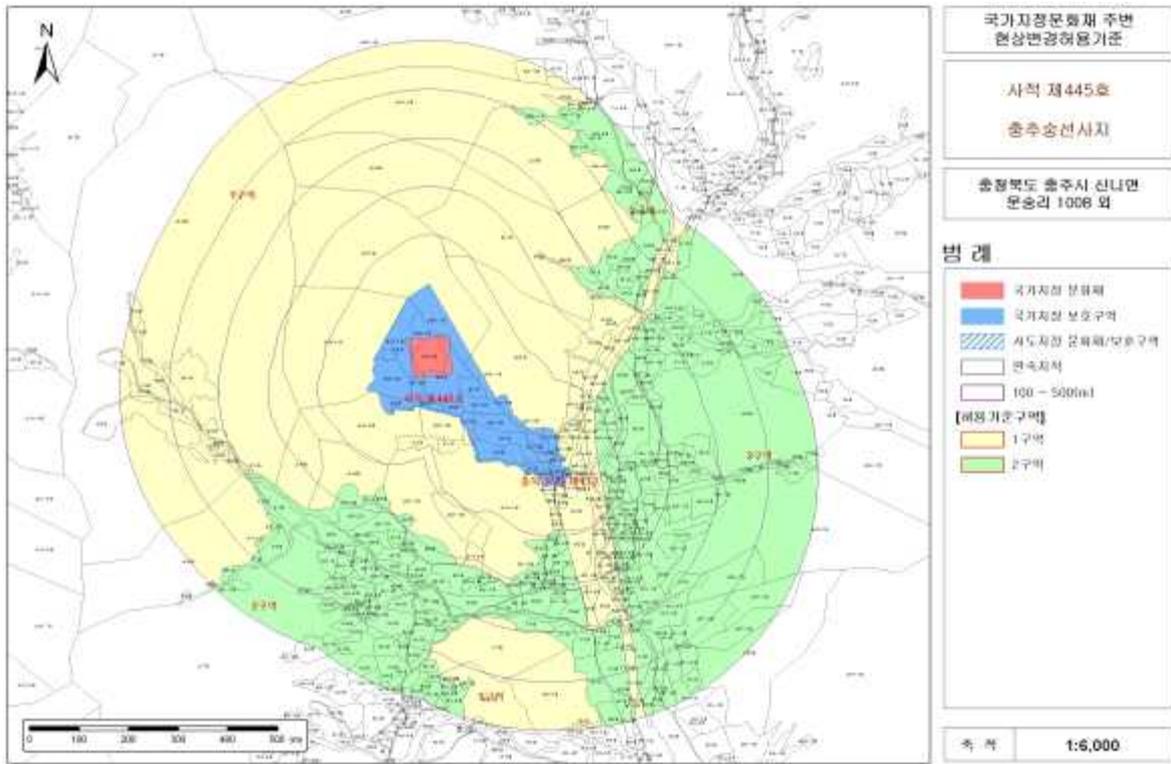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충주 송선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충주 송선사지(사적 제445호)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862-2 외
- (3) 신청내용<충주 송선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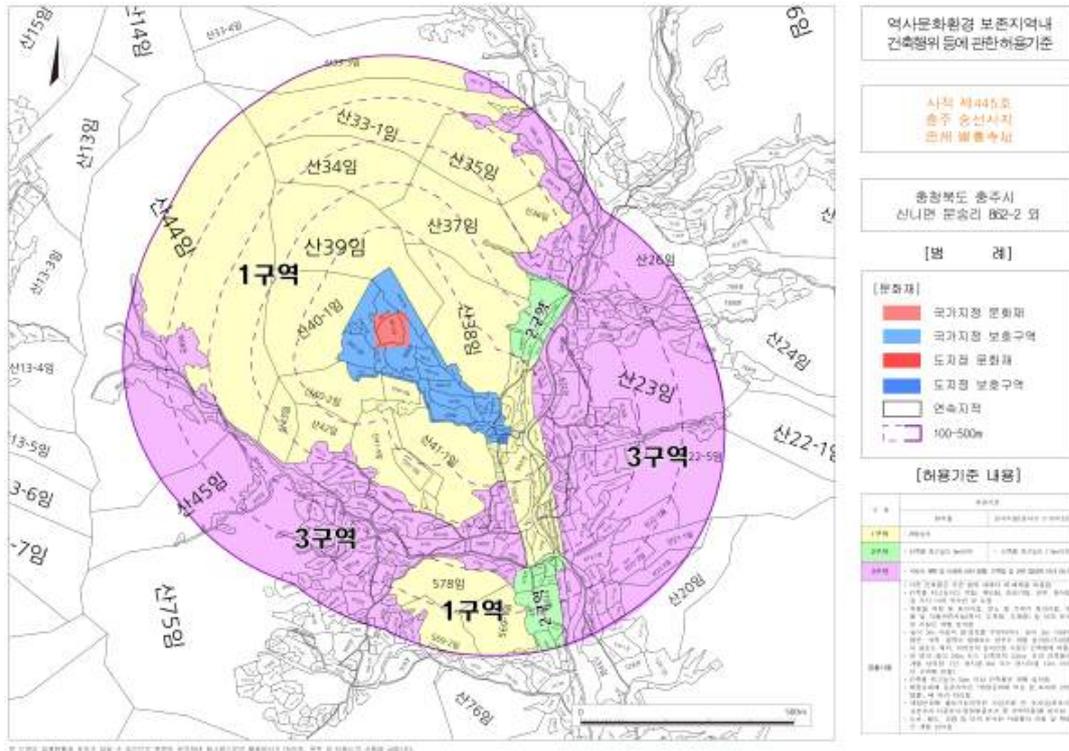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안이 유지하여 참고하심은 물론 불합치시 각 부처, 직책 외 타행도의 사항을 기합니다.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충주 송선사지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변의 일체화된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계곡 너머는 일체성 조망성의 영향이 미미하므로, 일부 확장하여 도시계획 및 관련법에 따른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46. 충주 누암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사적 제463호 「충주 누암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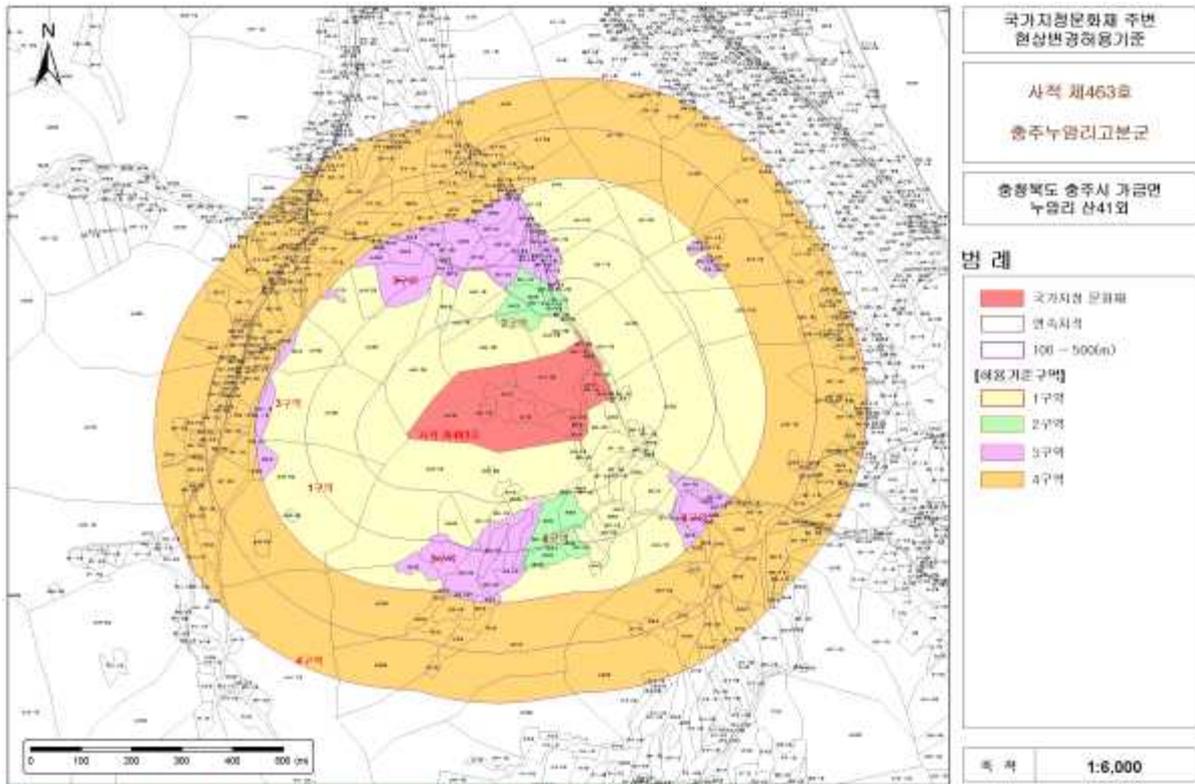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충주 누암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충주 누암리 고분군(사적 제463호)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 산41
- (3) 신청내용<충주 누암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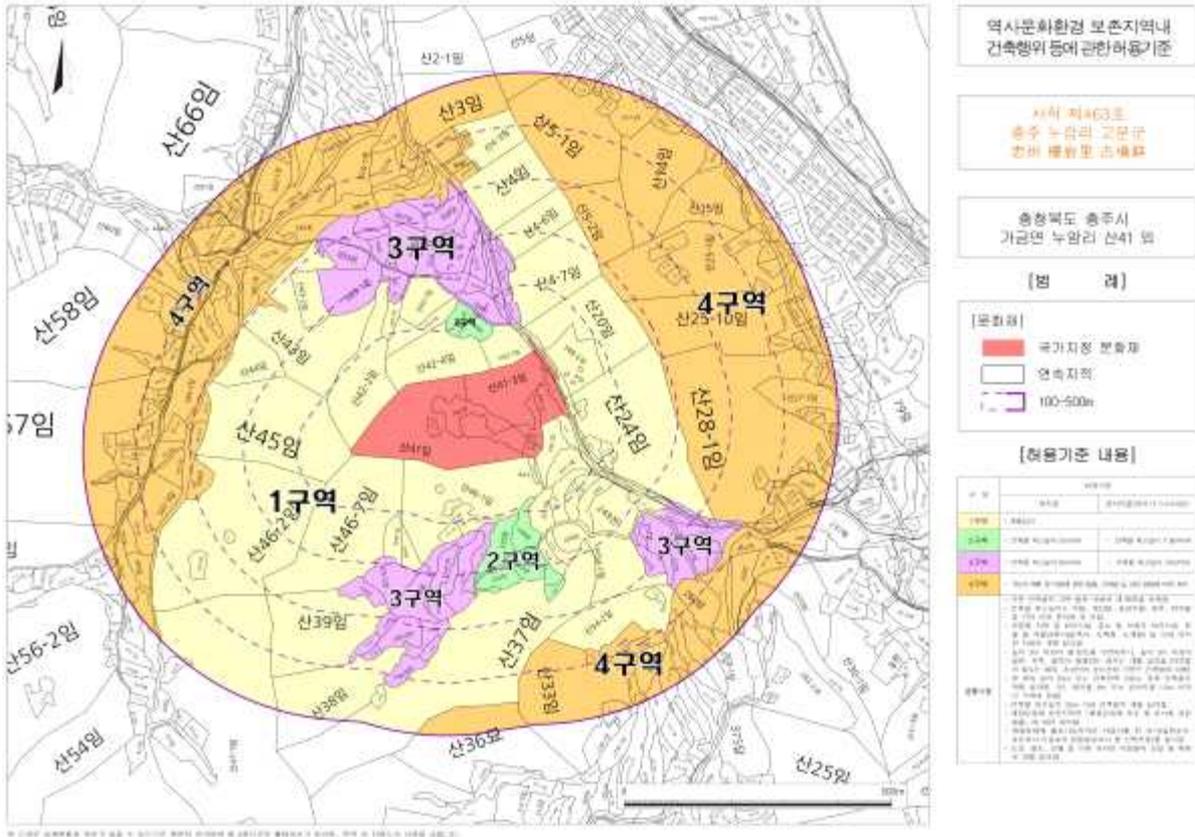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내리며, 복제 및 무단도표 사용을 금합니다

○ 신청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충주 누암리 고분군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주 누암리 고분군은 산 능선의 중턱에 위치 하며 동측으로 조망권이 가지고 있음. 주변은 임야가 대부분으로 전답은 1층~2층 규모로 허용되어 있음.
- 일체성에서 주변 임야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그 중 기존 300m 범위까지 검토하던 곳으로 서남측의 임야는 500m까지 개별심의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동측의 능선 너머는 일체성과 조망성에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도시계획 및 관련법에 의한 구역으로 하여도 무방함. 또한 전면의 경관을 이루는 곳의 개발 행위는 현황대로 서측은 1층규모, 동측은 2층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47. 대전 계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소재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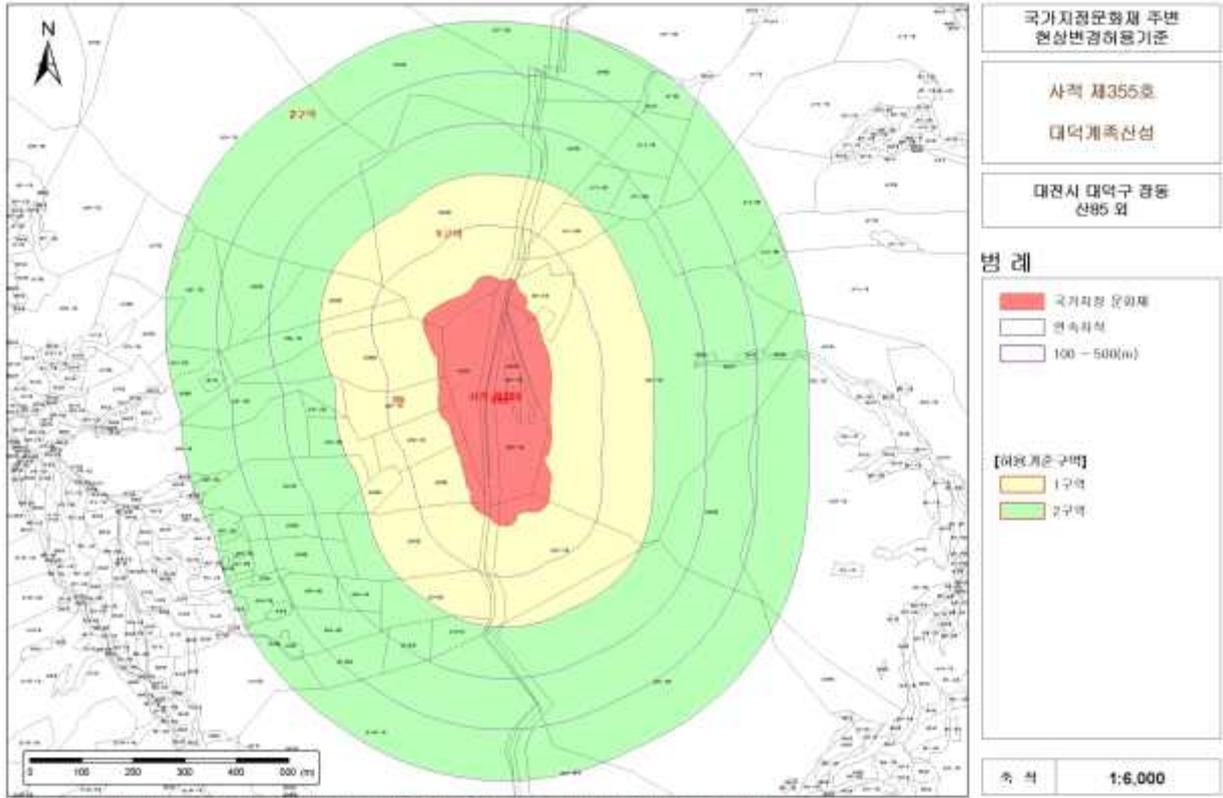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대전 계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대전 계족산성(사적 제355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85 외
- (3) 신청내용<대전 계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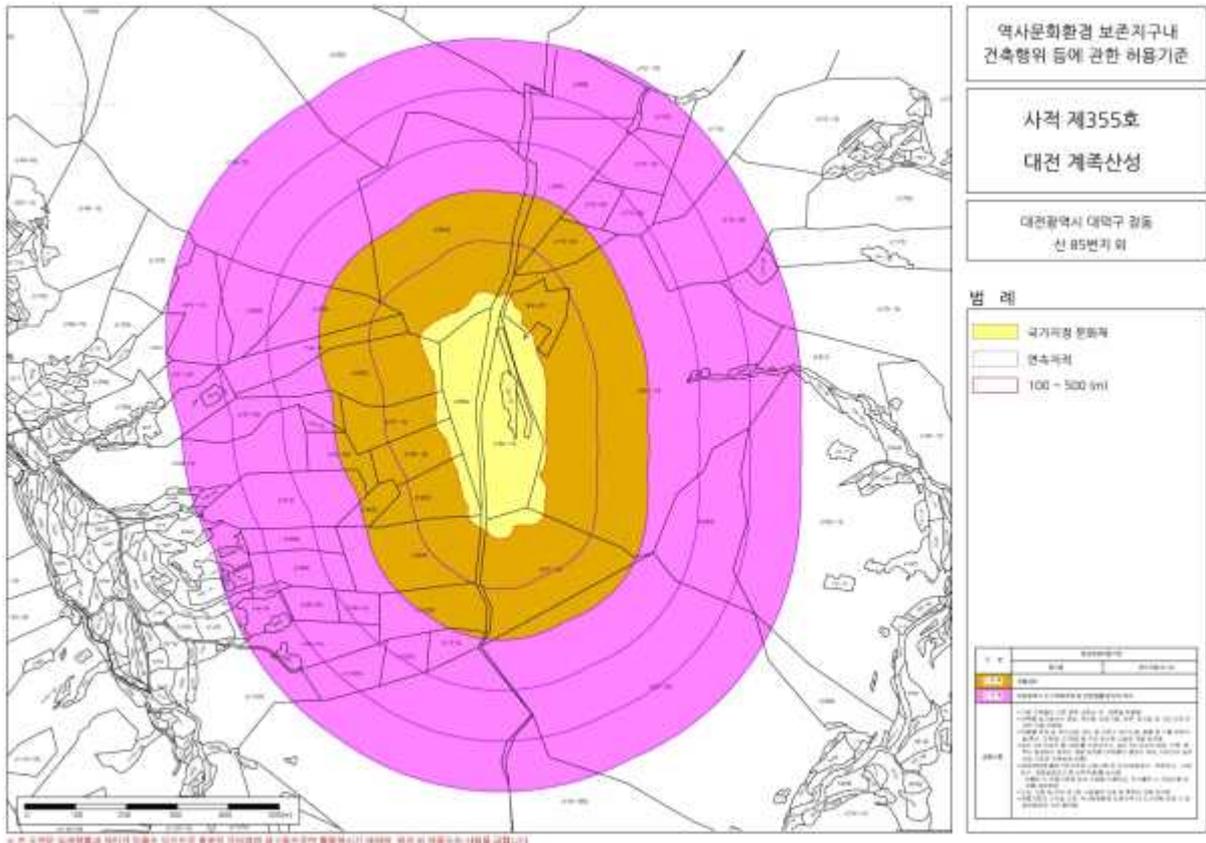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 보존구역		
제2구역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본 도면은 상세현황과 치마기 없으므로 물량이 차이에 따라 실제 공사료는 본 도면과 다를 수 있으며, 목적 및 타당도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 신청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부	경사지부(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대전 계족산성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인 일체성에서 200m의 범위를 개별심의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48. 증평 추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증평군 소재 사적 제527호 「증평 추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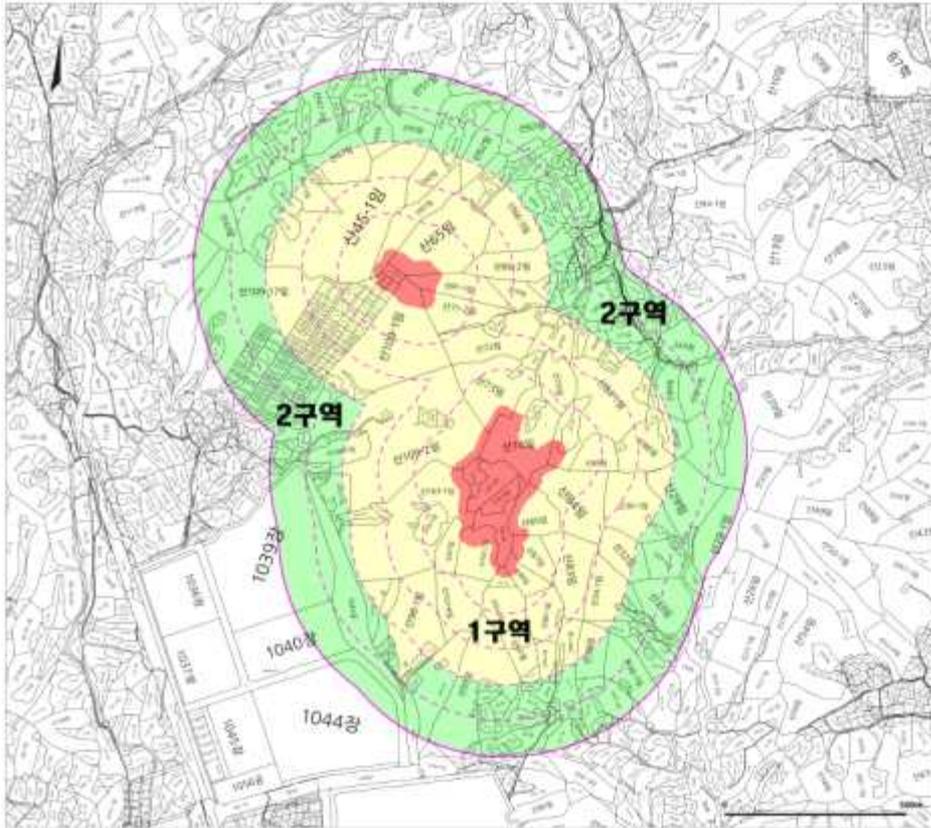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증평 추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신규로 마련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증평 추성산성(사적 제527호)
 - 소 재 지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74
- (3) 신청내용<증평 추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제527호 중의 추성산성跡과 嵒城山城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담리 산 74

[범례]

[면적치]
 ■ 증가지점 경화치
 □ 연속지적
 - - 100-500m

[허용기준 내용]

구분	부종기준
보존지역	일반지역
1구역	지역내 건축 및 조경행위 제한을 강화할 등 부대 조경에 관한 기준
2구역	지역내 건축 및 조경행위 제한을 강화할 등 부대 조경에 관한 기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증평 추성산성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장소성, 일체성, 경관성, 왜소화, 마루선)에 의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변이 임야로 둘러싸인 일체성에서 300m의 범위를 개별심의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49. 서울 호암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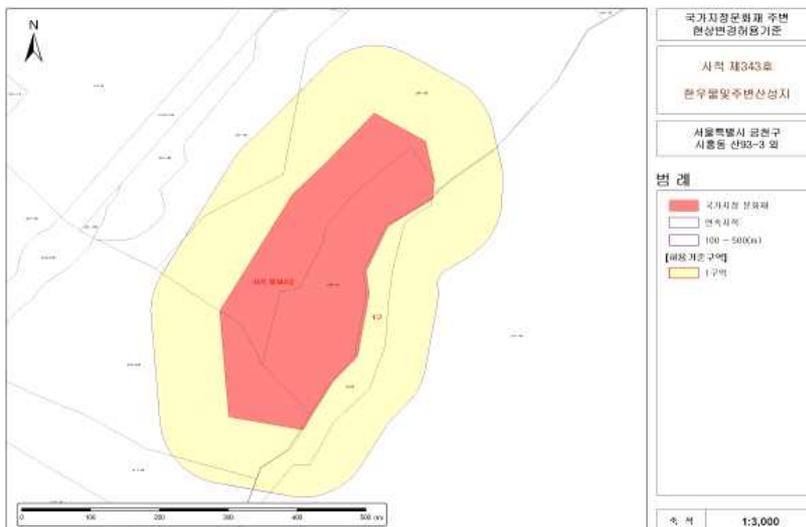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서울 호암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호암산성(사적 제343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93-2 외
- (3) 신청내용<서울 호암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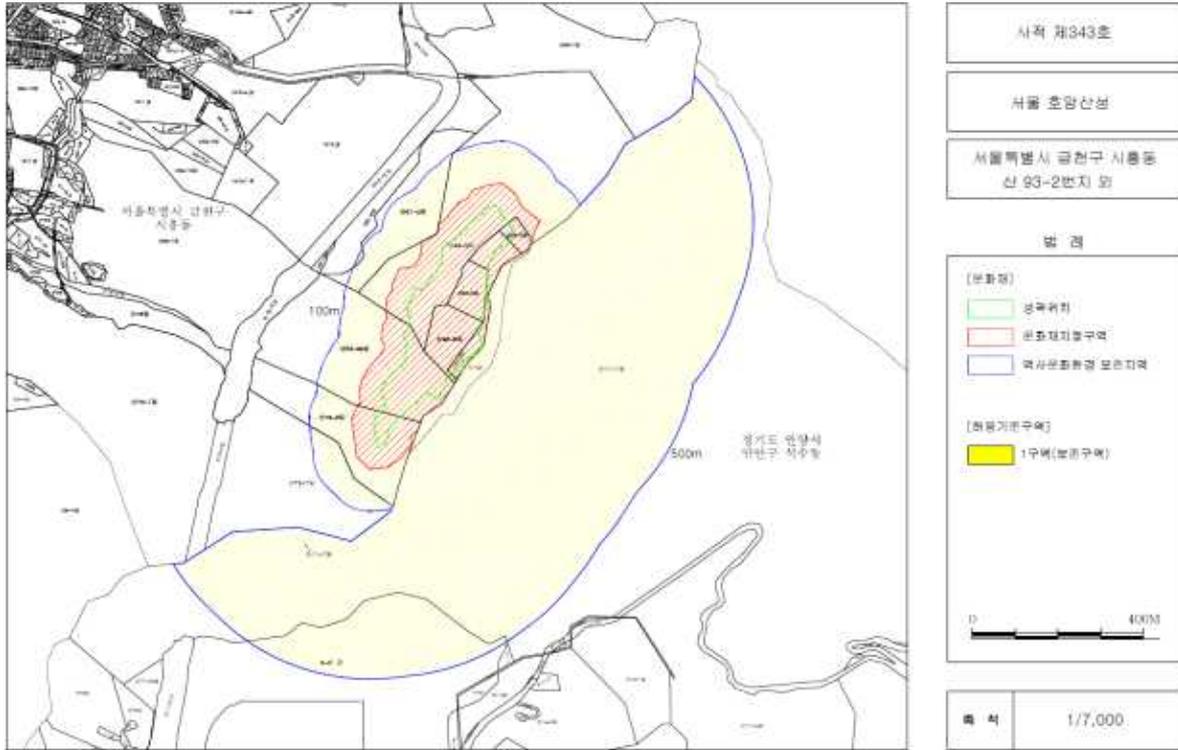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1구역	○ 보존구역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본 도면은 설계면허를 취득한 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중대한 과오에 대하여는 청구권으로만 불분해서가 아니라, 법적 원 타당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0.1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서울 호암산성은 기존 서울 지역의 100m 구역을 준용하여, 하천변까지 100m를 개별심의구역으로 하였으나, 경기도 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의 외곽 500m 안쪽을 기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별심의구역(1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50. 경주 나정 주변 지열냉난방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주변 지열냉난방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나정 주변 지열냉난방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단독주택 허가('15.8월)

- 건축규모 : 1층 1동, 연면적 99m²
- 건축구조 : 목구조 / 한식토기와잇기
- 최고높이 : 6.89m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나정(사적 제245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탑동 700-1번지

(3) 신청내용<지열냉난방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721-2{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86m 이격,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보물 제909호)로부터 147m 이격/1구역
(개별심의)}

○ 사업내용 : 지열 냉난방 주택지원사업 중 천공작업

- 천공깊이 : 150m
- 천공구경 : 150mm
- 천공수 : 2공
- 지중열교환기 : PE관(고밀도 폴리에틸렌) 삽입
- 원상복구 : 벤토나이트로 그라우팅 작업

※ 지열 주택지원사업의 진행과정

- 굴착행위 신고
- 천공작업(150m 보어홀, 150mm 지름, 5m 간격으로 2공)
- 기계실 설치작업(건축물의 보일러실에 설치)
- 한국에너지공단 검수
- 준공

(4) 신청인 의견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의 난방과 온수 사용

라. 참고사항

(1) 조사기관 의견

- 현재 입회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적심석군과 수혈 등은 입회조사 당시 부지의 중앙부에서 노출되었고, 현재는 주택이 건립된 부분이다. 이번 지하수 개발 예정부지는 주택의 북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북편 도로를 기준으로 'ㄴ'자형 절토가 이루어져 원지형이 완전히 훼손된 상황이다. 따라서 관정이 굴착되는 주택 북쪽부지는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지하수 개발의 특성상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자문회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사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정 굴착을 위한 부지의 발굴(시굴)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2) 경주시 의견

- 신청 건은 현재 같은 부지에 준공 예정인 단독주택의 지열난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직경 15cm, 깊이 150m 규모로 천공작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2015년 8월 28일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중이고, 이 부지에 대해 당초 건축협의 시 우리 시에서는 입회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20일에 입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입회조사 실시 결과 지면으로부터 2.6m 아래에 유구포함층이 확인되었으나 예정된 공사가 60cm 정도로 지하를 굴착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유구 훼손의 위험이 없고, 2000년 최초 건축 시 성토하여 부지를 조성한 곳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성토한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어 자문회의 결과 발굴 조사를 유예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 천공작업 예정부지는 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L자형 절토가 이루어져 원지형이

훼손된 곳으로 상당한 규모로 성토 후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사기관 의견에 따르면 작업 예정부지는 유구 존재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곳입니다.

- 이 곳은 원지형이 남아있지 않아 시굴조사의 필요타당성이 낮으며, 만약 시굴조사를 진행할 경우 토사 붕괴로 부지 내 신축건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조사기관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 시 전문가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51.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39-6, 울산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모화리)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5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규모 : 지상2층 2동, 각 건축면적 123.45㎡, 연면적 196.25㎡(2층 72.8㎡)
 - 구조 : 일반철골조(평지붕/금속판넬)
 - 최고높이 : 8m
 - 성토: 최고성토고 5.3m
 - 구조물공 : 석축(H=0.5~2.9m, L=203m), L형 옹벽(L=46m, H=4.9m)
- (4) 신청인 의견
 - 본 신청지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번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관문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5m 이격되어 있으며, 현 부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52.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종교시설(사찰)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에 종교시설(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에 종교시설(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사적 제241호 / 1974.12.14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42-1
- (3) 신청내용<종교시설(사찰)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1000(문화재구역으로부터 62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면적 : 99m²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함석기와
 - 높이 : 7.3m
- (4) 신청인 의견
 - 천북면 화산리에 위치한 곳으로 종교시설(사찰)을 신축하여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변 현상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전통건축 형태로 구성하였음.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53.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16.10월 부결 : 신축높이 과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39-6, 울산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모화리)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851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규모 : 지상1층 2동, 각 건축면적 84.06㎡, 연면적 168.12㎡
 - 구조 : 목조, 기와지붕
 - 최고높이 : 지상1층 6.4m (1차신청 6.9m)
- (4) 신청인 의견
 - 본 신청지는 실소유자가 김해김씨종친회로서 원로 종친회원들의 개별주택을 신축하고자 함. 원로 종친회원들이 개별주택을 신축하여 노후대비와 인접한 종친회 재실 관리 및 향후 종친회 활동의 원활화를 위함.
 - 또한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기와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어지럽게 자연상태로 방치된 관문성 주변의 미관 개선 및 사적지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도 않음. 시행시에도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1.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관문성에서 10m 이격된 곳에 지상1층, 면적 84.06㎡의 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형이 일부 평탄화되어 있고, 경관상 관문성에서 먼 곳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사료되나, 관문성과 인접한 곳에 신축되는 주택은 경관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문성에서 먼 곳의 1개동만 신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54.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배면쪽 1구역(개별심의)에 2층 높이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 신청지와 연접한 1구역 끝자락에 위치한 필지는 지난 '15.8월 위원회에서 4m 높이의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조건부 허가(능역 배경 숲과 일정 거리의 완충구역 확보) 하였으며, 신청지 인근 문화재구역과 연접한 1구역의 단독주택 신축(높이 3.5m / 1층 / 5개동) 건에 대해선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로 부결('16.8월)된 사례가 있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9-65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대지면적	826.00㎡	
건축면적	130.97㎡	
연면적	182.33㎡(지상1층 114.20㎡ / 지상2층 38.13㎡)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규모	최고높이 8.4m / 지상2층 / 경사지붕	
토목공사	성토199㎡, 절토409.77㎡, 옹벽설치(H=1~4.9m)80m, 석축설치(H=0.5~2.5m)41m	

(4) 신청인 의견

- 상기본인은 신청지의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입니다.
- 본인은 평생의 소원인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지를 매입하였고, 자금을 조금씩 모아 금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본인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자 본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0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화성 읍·건릉에서 60여m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건축면적: 130.97㎡, 연면적:182.33㎡, 높이:8.4m의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능선 연결지로서 2층 규모가 신축될 경우, 마루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연결지에서 4m 규모로 허가된바 있어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신축 높이 과다

55. 사천 늑도 유적 주변 마을내 도로 확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사적 제450호 「사천 늑도 유적」 주변 마을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룻개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를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사천 늑도 유적(사적 제450호 / 2003.07.02 지정)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늑도동 1번지
- (3) 신청내용<도로 확포장>
 - 위치 : 경남 사천시 늑도동 202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면적 : 541㎡(확장면적 313㎡, 재포장228㎡)
 - 구간 : 250m
 - 볼라드 설치, 소화전 이전, 옹벽쌓기(길이100m, 높이 0.4m)
- (4) 신청인 의견
 - 사고 다발지역에서의 차량 추돌을 방지하고 소방 및 물자 이동 등 주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시행

56.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외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내외에 안전관리시설 보완 및 캠핑주차장 개선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순신 순국공원의 안전관리, 주민편의 도모 및 이순신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 카라반 설치, 전몰유허비 이설 등 이순신 순국공원의 활성화를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사적 제232호 / 1973.6.11. 지정)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시설물 설치 및 보완>
 - 위치 : 문화재구역, 1구역(개별심의)
 - 개요
 - 디자인 흰스 설치(214m), 종합안내소 설치(문화재구역), 차량통제시설 설치(3개소)
 - 카라반 캠핑장 설치(21대)
 - 밥상체험관 개선(비가림 설치 99m²)
 - 이충무공 전몰 유허비 이설(문화재구역)
- (4) 신청인 의견 : 이순신 순국공원의 방문객과 시설의 안전 및 편의 도모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57. 합천 영암사지 주변 도로 확포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주변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에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합천 영암사지(사적 제131호)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로 637-97(둔내리) 일원

(3) 신청내용<군도6호 확.포장>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로 637-97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 길이 1,633m, 폭 13.75m(확장 폭 5.75m)

(4) 신청인 의견

-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합천의 핵심경관자원으로 이용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선형 개량과 도로폭 확보
- 문화재 외곽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기존 가로수를 활용하고 법면은 식생블럭 및 폐심기를 시공함으로써 경관변화를 최소화 하였음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58. 산청 조식 유적 주변 다목적광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유적」 주변 원리마을 공동이용시설(다목적광장)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주민편의를 위해 마을 공동이용시설인 다목적광장을 설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산청 조식 유적(사적 제305호 / 1984.1.26. 지정)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사리 산72 외
- (3) 신청내용<원리마을 공동이용시설(다목적광장) 설치>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237-6번지 외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면적=668㎡, 진출입로 조성 길이=80m)/14대 주차
- (4) 신청인 의견
 -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주민 삶 만족도 향상 기여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59. 산청 조식 유적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사적 제305호 「산청 조식 유적」 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산청군 군정방침인 녹색산청 건설에 기여하고 남명기념관 전기료 절감을 위함.(산자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산청 조식 유적(사적 제305호 / 1984.1.26. 지정)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사리 산72 외
- (3) 신청내용<남명기념관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31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태양광 5kw, 사용면적 27m², 높이 2m
- (4) 신청인 의견
 - 남명기념관 전기료 감소로 운영비 경감에 기여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60. 익산 미륵사지 내 산림경영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내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내에 조림 및 임목생산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 (3) 신청내용<산림경영>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산32-1, 산33-1, 산33-4(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총면적 : 729,200m²(공익용산지)
 - 사업기간 : 2016. 12. ~ 2024.12
 - 산림경영계획

기존현황	조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종 : 감참, 활잡, 리기다○ 수령 : 40-50년 / 61,972본○ 수고 : 5~1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종 : 경제수(편백나무)/137,700본(묘목)○ 운재로 개설 : 4.7 km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 의견

- 사업부지는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문화재구역으로 조림 및 임목생산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임
- 미륵사지 사역에서 3.1km 이격되어 있으나 미륵산과 용화산과 연계되는 구릉지대로 문화재 경관 및 보존상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61. 익산 쌍릉 주변 임야 개간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주변 기존임야를 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쌍릉 주변 기존임야를 개간하여 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석왕동 산55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임야개간 위한 절토>
 - 위치 : 전북 익산시 석왕동 158-36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목적 : 소득원이 저조한 임야를 토지 생산성이 높은 전으로 개간하여 농가의 소득창출을 기하고자 함
 - 사업면적 : 8,197㎡
 - 세부내용 : 절토 6.5 ~ 1.0m / 소나무 굴취(수량 미제출)
 - 사업기간 : 2016. 12월 ~ 2017. 12월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 의견

- 사업부지는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에 해당하며, 기존 임야를 개간하여 전으로 사용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 쌍릉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여미터 이격되어 있고, 쌍릉의 배면에 해당하나 절토가 크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의 보존 및 경관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62. 남한산성 내외 탐방로 등 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탐방로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2차 회의(2016.11.9)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현지조사(2016.11.28) 후 다시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일원
- (3) 신청내용<2017년 탐방로 등 정비>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개요
 - 탐방로 정비 : 야자매트, 횡배수구, 목계단
 - 시설물 정비 : 이정표(방향안내판), 안내판, 휴게정자, 버스정류장, 야외테이블 및 의자, 가로수(불량목 교체), 관리번호표 부착
 - 훼손지 복구 : 식생토낭흙막이, 목재원주목 목책보수

라. 참고자료

- (1) 현지조사의견('16.11.28/문화재위원 ○○○, ○○○)
 - 남한산성 주변 탐방로 또는 등산로에 인위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였으면 함. 따라서, 신청사업 중 목재계단은 제외하였으면 함.
 - 신청사업은 기존 시설물의 보수 차원의 사업임.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없어야 할 것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63.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노인복지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1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3층으로 수직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8차 소위원회('16.09.28), 13차 위원회('16.11.09)에서 부결된 사항을 설계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4-1 일원
- (3) 신청내용<노인복지시설 증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8{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심의)}
 - 건축개요

구분	기존	1차('16.9.28)	2차('16.11.9)	금회 신청안
대지면적	1,227.00㎡	1,227.00㎡	1,227.00㎡	1,227.00㎡
건축면적	409.33㎡	490.14㎡	490.14㎡	490.14㎡
연면적	409.33㎡	1,212.93㎡	1,123.35㎡	1,123.35㎡
층수	지상 1층	지상 4층	지상 3층	지상 3층
높이	4.40m	15.30m	12.35m	8.95m
구조	벽돌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승강기	없음	1대	1대	1대
지붕	평지붕	평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6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4-1 일원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3-8{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0m 이격 /3구역(평지붕 14m 이하, 경사지붕 17m 이하)}
 - 건축개요
 - 대지면적 : 577m²
 - 건축면적/연면적 : 215.71m² / 765.50m²
 - 층수/높이 : 지하1층, 지상4층 / 17.2m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구조 / 경사지붕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65.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4-1 일원
- (3) 신청내용<다세대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3-9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97m 이격 / 2구역(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1m 이하)}
 - 건축개요
 - 대지면적 : 577m²
 - 건축면적/연면적 : 215.71m² / 765.50m²
 - 층수/높이 : 지하1층, 지상4층 / 17.2m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구조 / 경사지붕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66.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진입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다세대주택 신축(박경희, 박경아 신청 건)을 위하여 사업부지 전면에 암거형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1985.11.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4-1 일원
- (3) 신청내용<진입로 개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828(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 /2구역(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1m 이하))
 - 사업개요
 - 대지면적 : 104㎡
 - 암거 : 길이 약 9.2m, 폭 약 10.5m, 높이 2.46~3.95m
 - 석축 : 높이 2~3m(길이 15m), 높이 2~2.5m(길이 21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67.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 가축시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에 가축시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성 도기동 산성 주변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안성 도기동 산성(사적 제536호 / 2016.10.24.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66 일원
- (3) 신청내용<가축시장 조성>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31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60m 이격)
 - 건축개요
 - 대지면적 : 19,174m²
 - 건축면적/연면적 : 3,610.86m² / 3,430.75m²
 - 동별개요

동별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용도	가축시장	부속창고	부속식당	차량소독기	기계실
면적	2,009.25m ²	1,096.00m ²	198.00m ²	120.00m ²	7.50m ²
층수	1층	1층	1층	1층	1층
높이	13.30m	8.20m	5.20m	5.52m	3.00m
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68. 제주 삼성혈 주변 오피스텔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에서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삼성혈 문화재구역 경계 484m 이격된 구역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1인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삼성혈(사적 제134호)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이도일동 1313번지
- (3) 신청내용<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 1032-4, 1032-5(문화재구역으로부터 484m 이격 /5구역(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10층 이상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856.10m²
 - 연면적/건축면적 : 4,996.57m²/512.72m²
 - 층수/높이 : 지하3층, 지상10층(1개동) /32.30m(철근콘크리트조)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06/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 건물물 주변으로 약 376m이격거리에 지하3층, 지상 17층, 높이 54.5m 건물물 2016.4.28자로 기 허가되었으며, 삼성혈과 약 285m 떨어진 곳에 지하1층, 지상10층, 높이 29.5m 건물물 2016.9.9.자로 허가된 바 있음. 그리고, 신청지 바로 옆에 10층 건축물(한양신산타워빌)이 건축되어 있음

- 본 사업부지는 10층으로 건축하여도 삼성혈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단, 건축물 저층부 1층 지정석재 마감과 최상층부 10층 지정색스톤뿔칠 마감은 제주 지역성을 고려하여 현무암으로 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69. 원주 거둔사지 주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168호 「원주 거둔사지」 주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원주 거둔사지 주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원주 거둔사지(사적 제168호 / 1968.12.19.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 외
- (3) 신청내용<거둔사지 주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29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설치면적/설치용량/설치형태 : 4,479m²/198kW/경사가변형
 -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성 : 태양광 모듈(250W/792EA), 인버터(100kW/2EA)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12.01/문화재전문위원 ○○○, ○○○)
 - 이격거리가 가깝고, 도로에 인접하여 직접적인 조망이 이루어지는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신청사업 추진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70. 원주 법천사지 주변 축사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주변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원주 법천사지 주변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 2005.08.31. 지정)

- 소재지 :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외

(3) 신청내용<축사 신축>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179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1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9,770.00㎡/1,952.96㎡/1,952.96㎡
- 주용도 : 1동 1,028.91㎡(축사, 축산분뇨처리장), 2동 924.05㎡(축사)

(4) 신청인 의견

- 본 신청지는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 179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역으로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구획되어 있고, 현재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1995년 초지전용 후 축사를 신축하여 한우사육을 전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수가 증가하여 축사를 증축하는 과정에 무허가로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을 하고 있으나, 금번 축사 양성화 기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01/문화재전문위원 ○○○, ○○○)

- 상당거리가 이격되어 있고, 인접하여 유사기능의 기존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구역의 허용기준 및 기존의 개발 정도를 감안할 때, 역사문화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낮을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71. 부산 금정산성 주변 고당샘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소재 사적 제215호 「부산 금정산성」 주변의 고당샘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금정산성 주변의 고당샘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 1971.02.09. 지정)
 -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43번지 등 일원
- (3) 신청내용<고당샘 정비사업>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산1-1(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현무암 포장, 얇은벽 검 플랜트, 현무암 붙이기(5.2m×9.8m)
 - 석축 재활용(1.5m), 도수로 재활용(9m)
 - 사각셀타설치(2.5m×2.5m/목재, 아스팔트 씬글, 갈색)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14-072

1. 수원 화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의 이아터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 일원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지 : 이아터 8,958㎡

합 계(변경)			기 지정(당초)			추가 지정 신청		
계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계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 계	지정구역	보호구역
393,623	380,103	13,520	384,665	371,145	13,520	8,958	8,958	-
/1,417필지	/1,250필지	/167필지	/1,388필지	/1,221필지	/167필지	/29필지	/29필지	

(4) 신청사유

- 수원화성 주변 미복원된 중요 역사시설물 이아(貳衙)부지 1개 구역에 대하여 고증 및 연구자료 및 시굴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문화재 복원 및 건축행위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라. 지정조사보고서

□ 현지조사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6.10.14.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수원화성(水原華城)의 이아터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수원화성(水原華城)”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수원화성의 관아터로서 수원화성과 일체적인 시설로서, “수원화성(水原華城)”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수원화성은 정치·경제·문화·예술적 역량과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반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계획신도시이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왕도 정치와 탕평정치의 성과물이다.
- 또한 조선왕조의 발전방향과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자족도시를 형성하였다.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 원형 : 팔달문, 화서문, 동장대, 동북각루, 동북노대, 용도, 서북공심돈, 북성적대, 북암문, 서암문, 낙남헌, 화령전, 지지대비, 향교, 용현
- 복원 : 장안문, 창룡문, 서장대, 서북각루, 서남각루, 동남각루, 포루(10), 성신사, 봉돈, 서노대, 치성(10), 북수문, 남수문, 동북공심돈, 서남포사, 동암문, 서남암문, 행궁시설(17), 종루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성벽은 서쪽의 팔달산 정상에서 길게 이어져 내려와 산세를 살려가며 쌓았는데 크게 타원을 그리면서 도시 중심부를 감싸는 형태를 띠고 있다. 성안의 부속시설물은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들이 있었으며, 현재는 화성행궁과 내포사가 복원되었다. 특히 다른 성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안문·팔달문·화서문·창룡문의 4대문을 비롯한 각종 방어시설들과 돌과 벽돌을 섞어서 쌓은 점이 화성의 특징이다.
- 화성은 쌓은 후 약 200여년이 흐르는 동안 성곽과 시설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파손되었는데, 1975년부터 보수,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효심에서 근본이 되어 당파정치 근절과 왕도정치의 실현 그리고 국방의 요새로 활용하기 위해 쌓은 수원 화성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화성 이야는 수원 유수부를 보좌하는 제2의 관아로 화성행궁과 연접하여 조선후기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과 함께 화성의 축을 형성함
- 1789년 사도세자의 현릉원을 옛 수원부 뒤 산에 이장하면서 관아 건물들을 이기한 후 1795년 화성 축조를 시작할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흔적이 없으나 이야 뒤편에 작은 동산이 남아있음.
- 이야(貳衙)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한 정확한 건립시기, 1891년에 발간된 화영중기와 1899년에 발간된 수원군읍지에 규모에 대한 기록, 화성성역의계의 화성전도와 수원성도에 이야 일원에 대한 그림, 1936년 제작된 수원관광지도, 각종 지형도 등 학술적 고증자료가 풍부함.
- 이야(貳衙)는 화성유수부 제2청사이자 실제 수원의 정치가 이루어진 곳으로 화성 유수를 보좌한 정5품 관관이 주재한 곳임.
- 『화성성역의계』, 『화성전도』에서 나타나듯 화성행궁 북동쪽 방향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낮은 구릉을 끼고 형성되어 있었음. 현재 관아는 남아있지 않지만 구릉의 일부가 존재함.
- 이야터는 1911년 지적원도에 관(官)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1917년 <수원군지도>를 통해 당시까지 본래 관아 건물이 ‘수비대사무실’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1920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이 이야터에 벽돌조 건물로 신축됨에 따라 훼손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이야터 시굴조사 결과 근현대에 조성된 건축물의 기초로 인하여 대부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화성행궁과 동일한 형태의 입사기초 4기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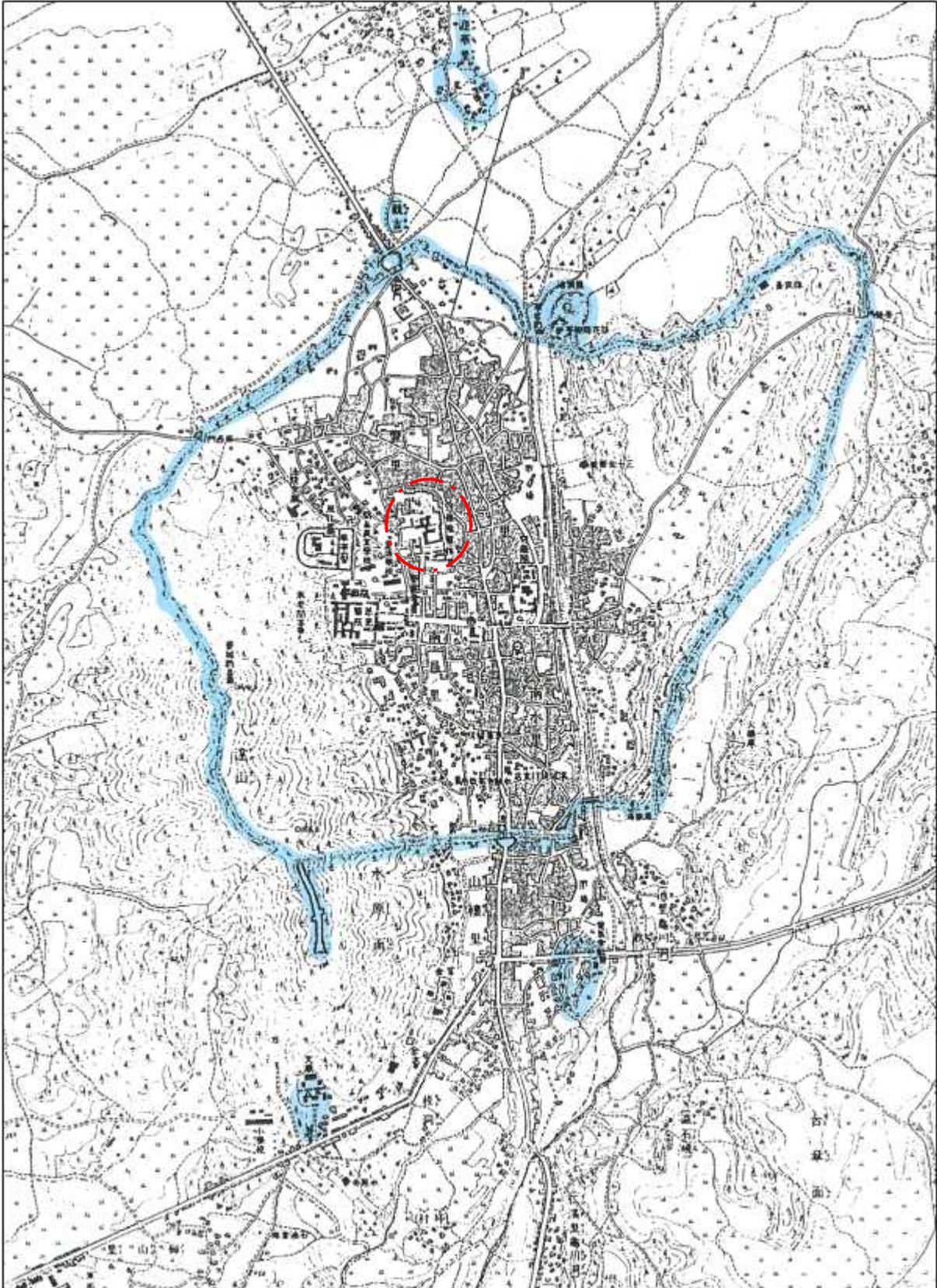
6. 지정 대상 및 범위

신청면적 : 29필지 8,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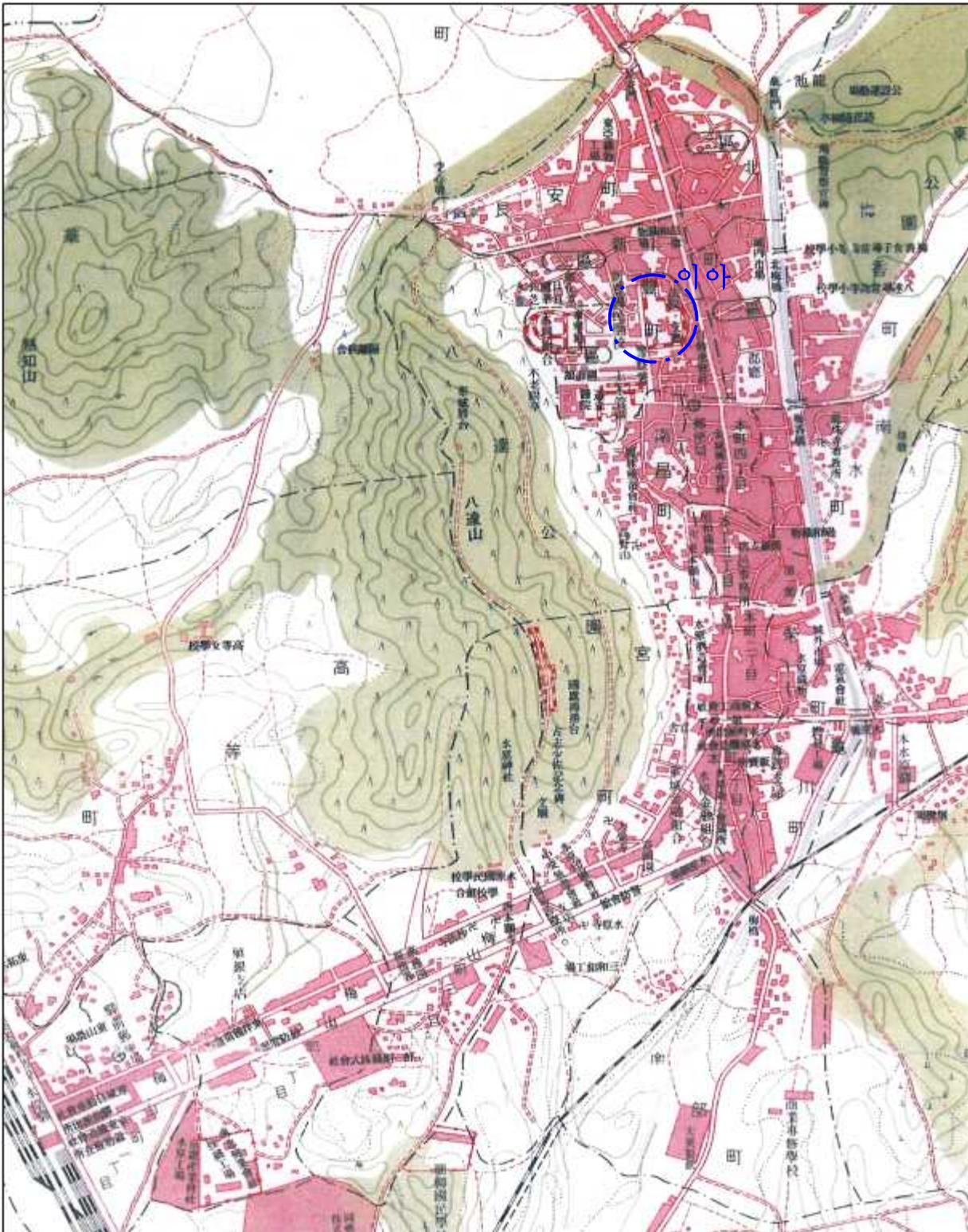
구 분	합 계		지정 구역		보호 구역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수원화성 (사적3호)	29	8,958	29	8,958	-	-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총 계		29필지	8,958	8,958		
1	팔달구 신평동	221-3	2,709	2,709		
2		221-14	124	124		
3		221-15	124	124		
4		221-1	481	481		
5		221-4	6	6		
6		221-19	622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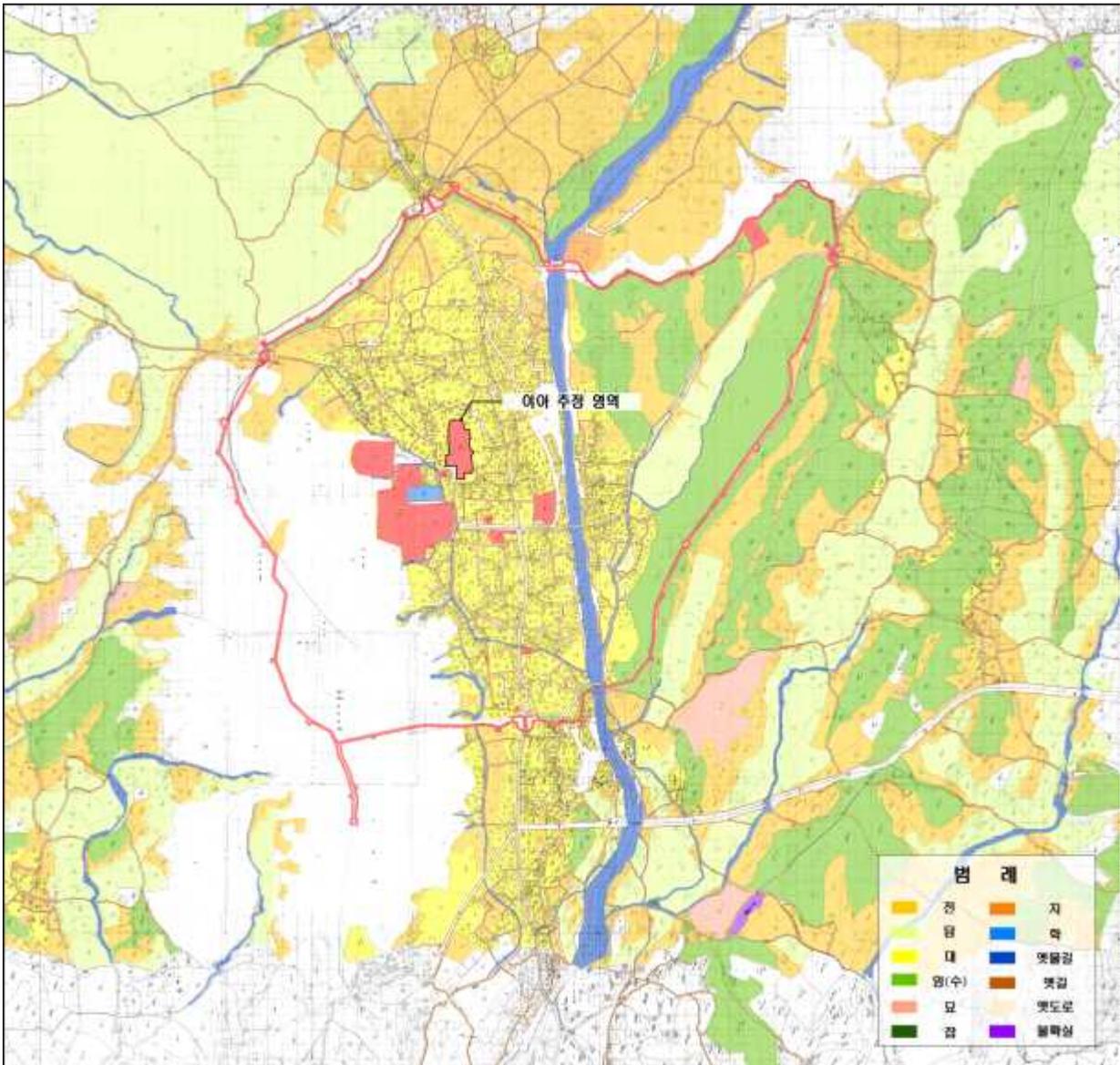
7		221-21	283	283		
8		221-23	212	212		
9		221-24	136	136		
10		221-25	218	218		
11		221-26	204	204		
12		221-27	248	248		
13		330-1	7	7		
14		330-4	7	7		
15		330-5	1	1		
16		192	585	585		
17		193-1	347	347		
18		193-2	241	241		
19		194-1	466	466		
20		218	170	170		
21		218-1	173	173		
22		218-2	287	287		
23		218-3	28	28		
24		219	162	162		
25		219-4	264	264		
26		219-6	245	245		
27		220	343	343		
28		220-1	200	200		
29		220-3	65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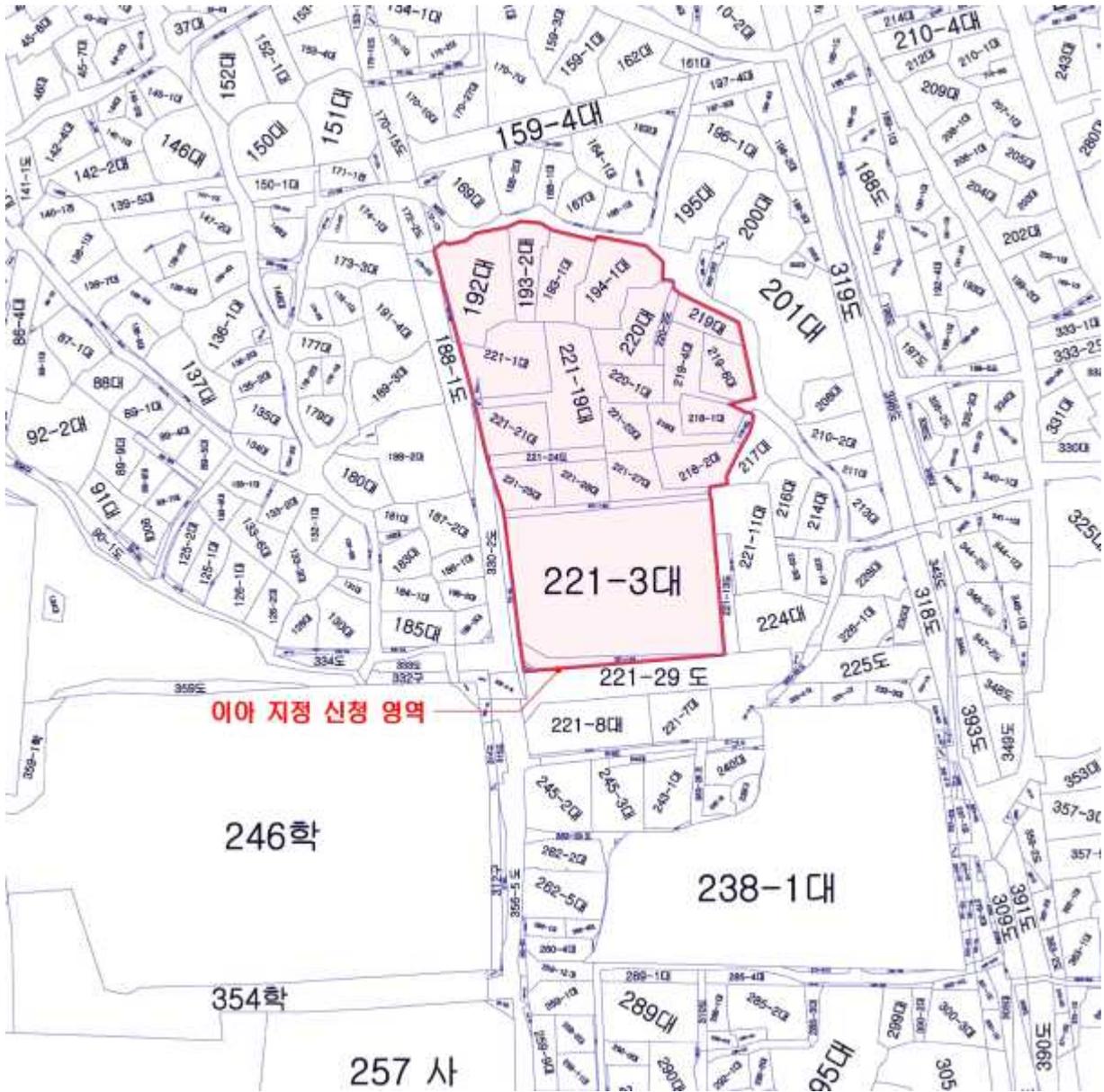
< 근세 한국 일반분지일 지형도-조선총독부-1917년 >



< 수원읍 중심지 지도-194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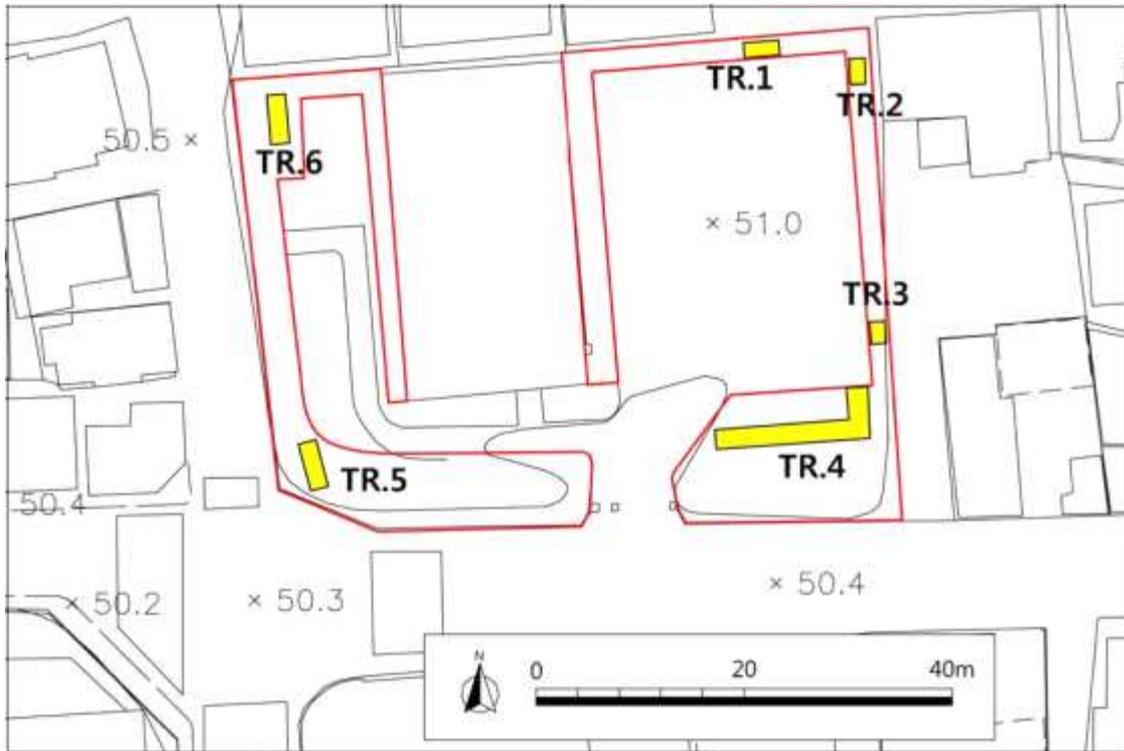
< 수원 화성 지적원도-191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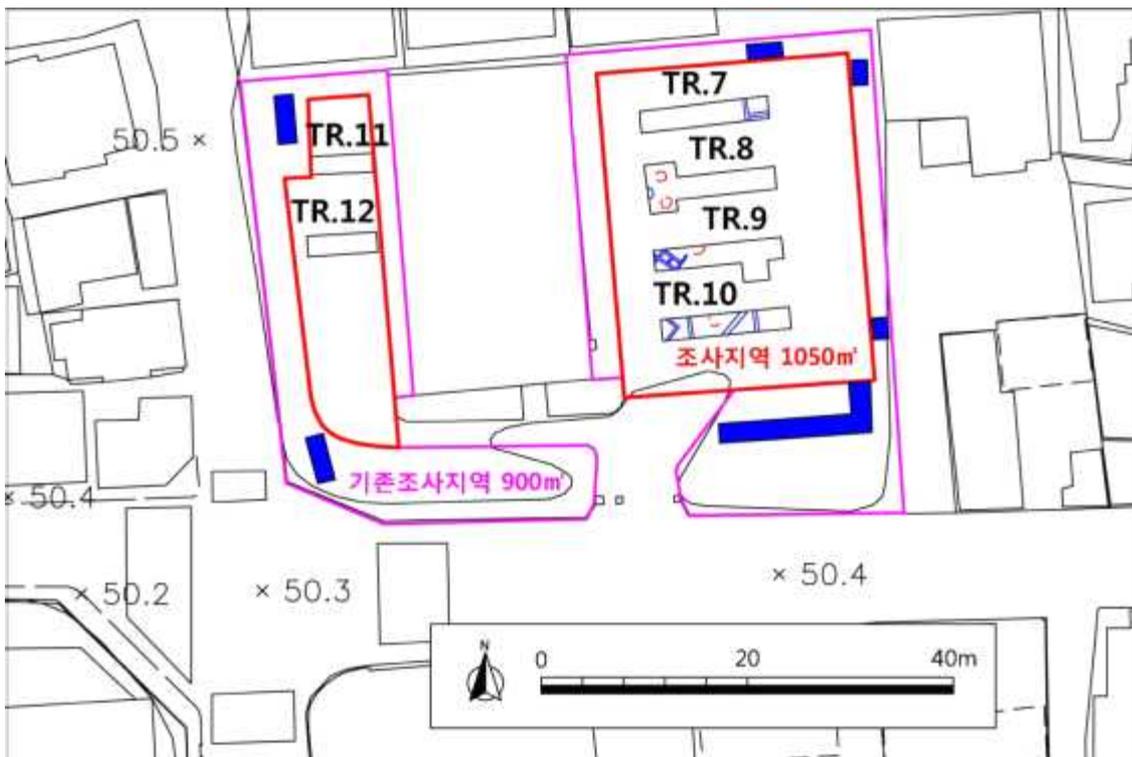
< 이아터 지적도 >



< 이아터 추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범위도-2015년 >



< 1차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재)한울문화재연구원-2015년 >



< 2차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재)한울문화재연구원-2015년 >

현장사진



이아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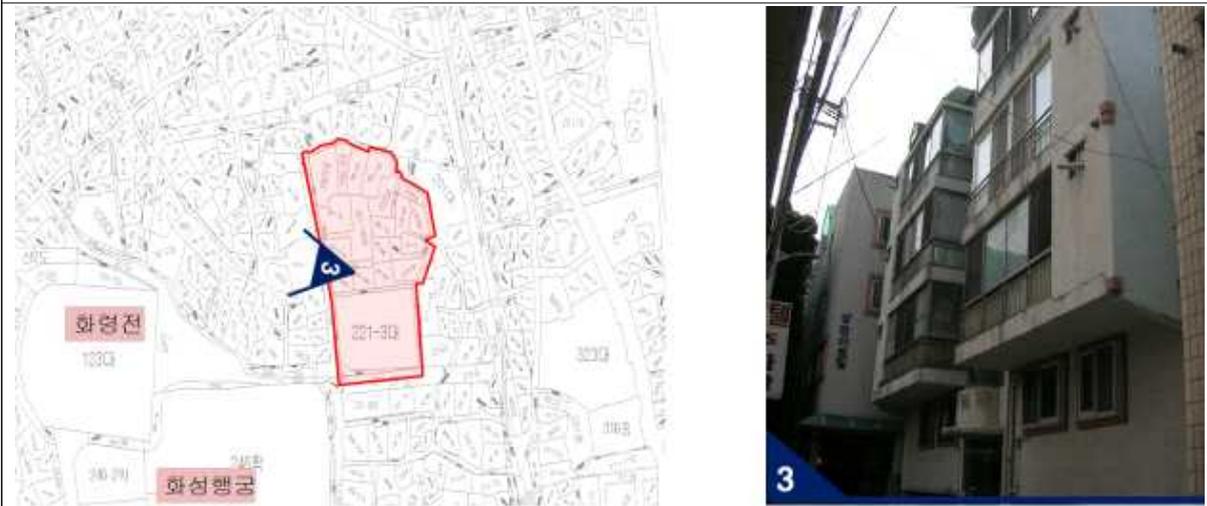
이아 언덕 현황



이아터 현장사진 (신평동 221-3번지)



이아터 현장사진 (신평동 221-25번지)



이아터 현장사진 (신평동 221-26번지)



이아터 현장사진 (신평동 221-21번지)



이아터 현장사진 (신풍동 221-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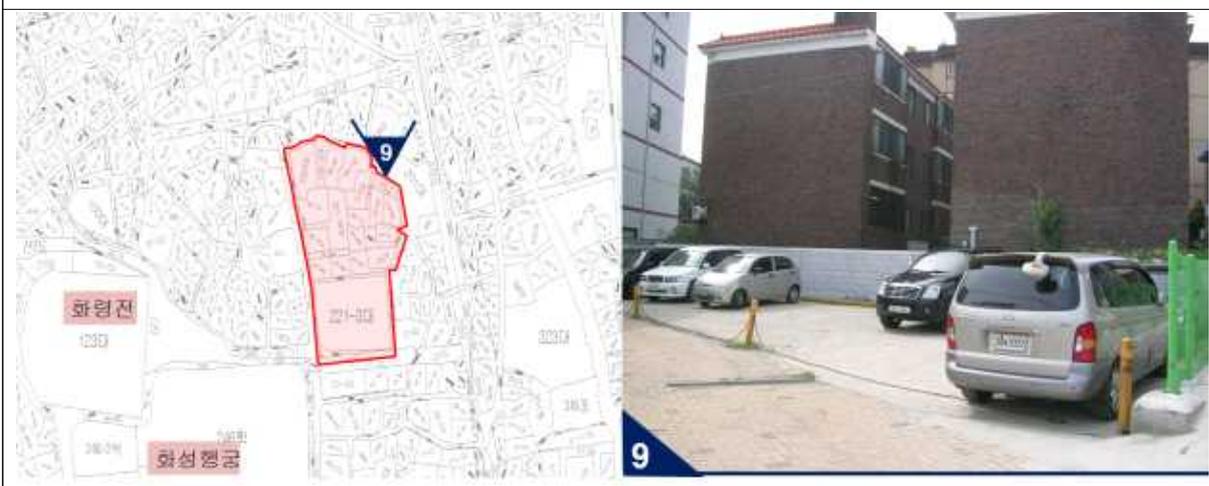
이아터 현장사진 (신풍동 192번지)



이아터 현장사진 (신풍동 221-1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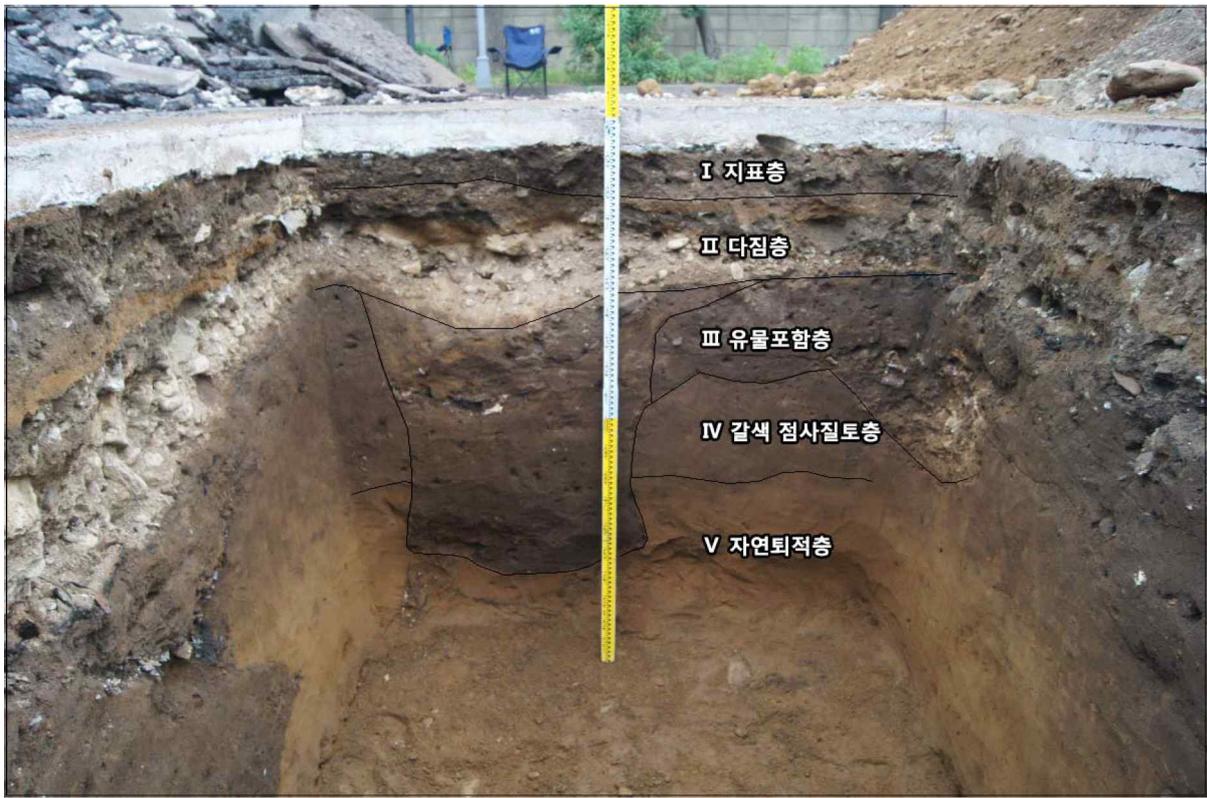


이아터 현장사진 (신풍동 193-2번지)



이아터 현장사진 (신풍동 219-4번지)

시굴조사사진



트렌치9 동벽 토층



트렌치9 전경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이아터를 추가지정하되, 문화재 내부이므로 역사문화환경의 확대는 없으며, 현황의 개발 상황이 이으므로 허용기준은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①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

○ 문화재구역 지정 신청지는 수원화성 성곽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성곽내부 전지역이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으로 문화재청 고시 제2014-62호(2014.6.19.)일자 고시되어 있음.

② 수원화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적 제3호 화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번지 외**

2.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성곽 내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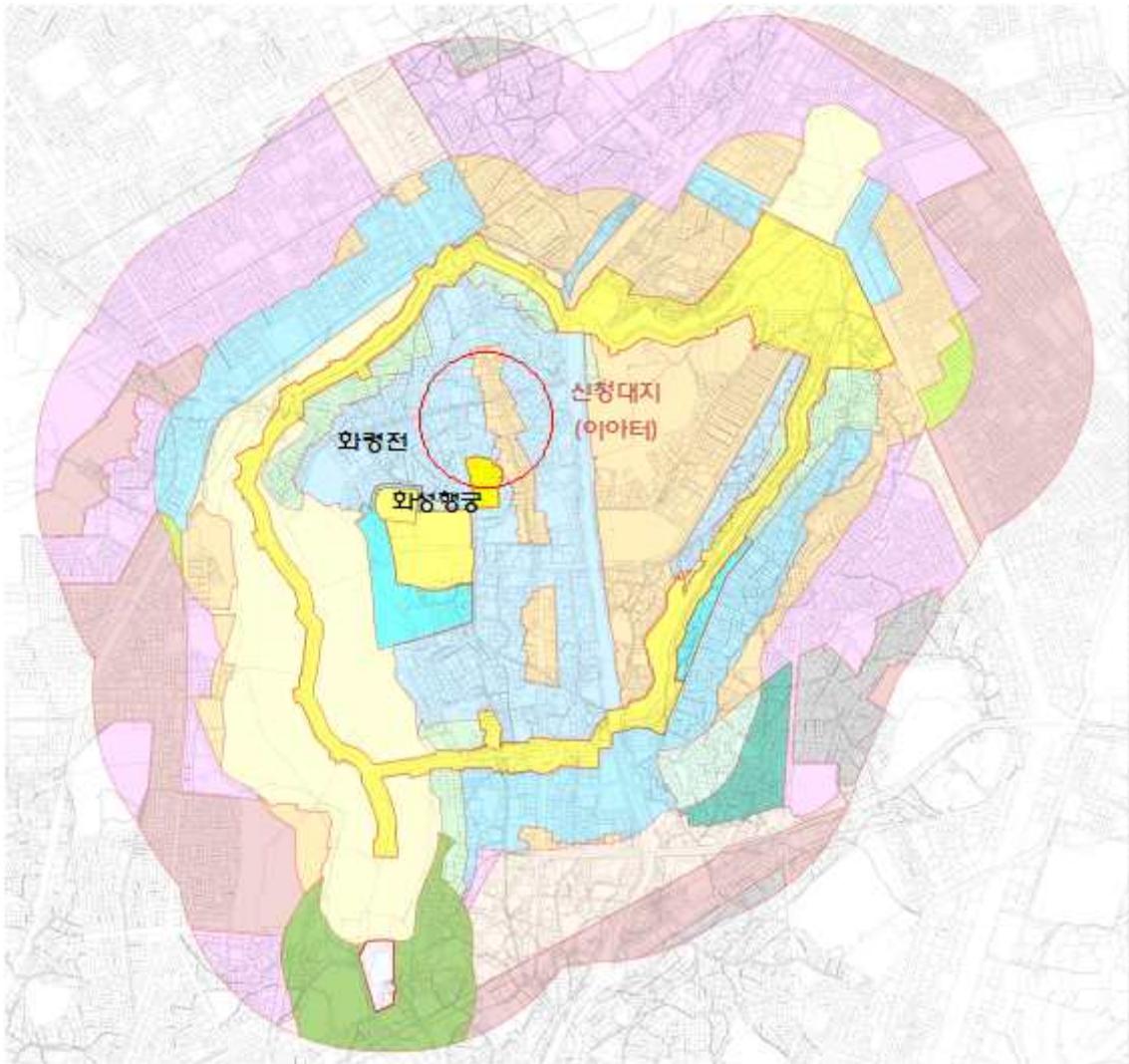
구획 기준	허용 기준	
	영자형	공시자형 (공사가 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지방정체는 영사자형으로 인정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6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공행사항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승강기실, 계단실, 방화, 방서실, 옥상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승강기실, 계단실, 방화, 방서실, 옥상 등의 수평면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50%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 이상 옥상 도판을 설치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새축은 허용

③ 이아터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내 용
지정유형	국가 사적
지정명	수원화성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 34 일원
면적	8,958㎡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6층 이하, 21m 이하)
현상변경허용기준	내부3구역 (평지붕 : 최고높이 11m이하 / 경사지붕 : 최고높이 15m이하)



<수원 이아터 문화재구역 기재 도면>

- 문화재구역 지정 신청지는 수원화성 성곽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성곽 내부 전 지역이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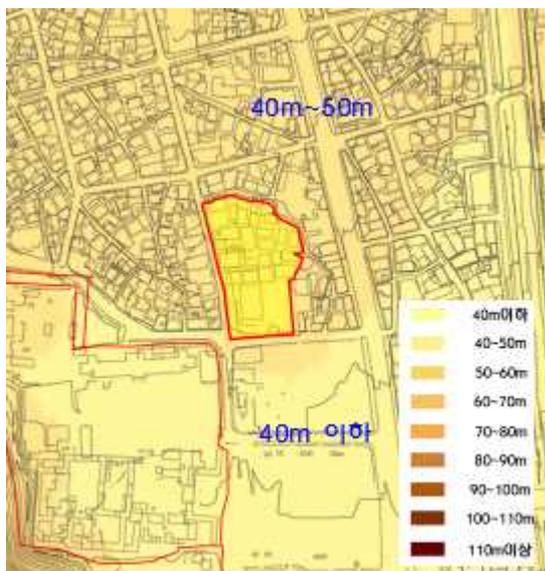
구역기준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 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 가산함.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위성사진>



<소유자현황>



<표고현황>



<건축물현황>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역사시설물 이아부지 문화재구역 신청지

○ 위치 및 규모

문화재	지정 신청 위치	면적(m ²)	이용현황	비 고
역사시설물 (이아)	팔달구 신평동 221-1번지 등 29필지	8,958	교회, 도로, 상가, 주택, 모텔 등	

○ 정비·활용계획

- 단기 : 역사시설물 부지 보존을 위해 기존건축물 철거 후 녹지(공원)공간 조성
- 중장기 : 고증문헌 및 연구자료를 통한 문화재 복원 추진

○ 수원화성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내 이아터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비 계획 진행

- 수원화성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2015.11~2016.11)이 현재 진행 중이며 수원화성 내 포함되는 문화유산이므로 주변 유적(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령전)과 함께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①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구분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비 고
이아부지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1종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방화지구, 최고고도지구(6층이하, 21m이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지역 (내부3구역 평지분 11m이하/경사지분 15m이하)	이아 원형복원	

②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도



이아터 주변 도시계획 현황도

9. 종합 의견

- 화성 이야는 수원 유수부를 보좌하는 제2의 관아로 화성행궁과 연접하여 조선후기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과 함께 화성의 축을 형성함
- 1789년 사도세자의 현릉원을 옛 수원부 뒤 산에 이장하면서 관아 건물들을 이기한 후 1795년 화성 축조를 시작할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흔적이 없으나 이야 뒤편에 작은 동산이 남아있음.
- 이야(貳衙)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한 정확한 건립시기, 1891년에 발간된 화영중기와 1899년에 발간된 수원군읍지에 규모에 대한 기록, 화성성역의계의 화성전도와 수원성도에 이야 일원에 대한 그림, 1936년 제작된 수원관광지도, 각종 지형도 등 학술적 고증자료가 풍부함.
- 이야(貳衙)는 화성유수부 제2청사이자 실제 수원의 정치가 이루어진 곳으로 화성 유수를 보좌한 정5품 관관이 주재한 곳임.
- 『화성성역의계』, 『화성전도』에서 나타나듯 화성행궁 북동쪽 방향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낮은 구릉을 끼고 형성되어 있었음. 현재 관아는 남아있지 않지만 구릉의 일부가 존재함.
- 이야터는 1911년 지적원도에 관(官)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1917년 <수원군지도>를 통해 당시까지 본래 관아 건물이 ‘수비대사무실’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1920년 경성지방방법원 수원지청이 이야터에 벽돌조 건물로 신축됨에 따라 훼손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이야터 시굴조사 결과 근현대에 조성된 건축물의 기초로 인하여 대부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화성행궁과 동일한 형태의 입사기초 4기 확인함.
- 현재 일부 건물지의 잔존 흔적만이 남아 있으나, 지적도에서 그 영역이 확실하고 수원화성의 관아라는 일체성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됨. 따라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중장기 정비계획 확인 후 재검토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II 권역에 속하는 2필지 251m²를 추가 지정하고, III 권역에 속하는 2필지 300m²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335필지 386,216.3m²
 - 추가지정 및 해제 신청면적
 - 추가지정 : 2필지 251m²
 - 해제 : 2필지 300m²
 - 추가지정 및 해제 후 면적 : 1,335필지 386,167.3m²
- (4) 지정 및 해제사유
 - (지정)풍납토성 내 II 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해제)III 권역 내 다세대주택 신축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6.10.31, 11.9, 11.23)

- II권역은 풍납토성의 핵심권역(사적지정·매입예정지에 해당)으로 해당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2개소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III권역은 풍납토성 내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48	대	96	96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9-17	대	155	155		
합계				251	25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8-1	대	168	168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93-2	대	132	132		
합계				300	300		

3. 서울 호암산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제343호 「서울 호암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호암산성의 측량에 의한 구역의 변경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호암산성(사적 제343호)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일원
- (3) 지정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6필지 75,390㎡
 - 추가지정 신청면적 : 3필지 58,400㎡(2필지는 기존지정)
 - 추가지정 후 면적 : 7필지 133,790㎡
- (4) 신청사유
 - 최근 측량 결과 산성의 북동부와 남쪽의 성벽이 지정구역 외곽에서 확인되어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성벽선을 따라 지정구역을 확대 신청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16.10.1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서울 호암산성 사적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참조
- (2)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
 - 일시 : 2016.6.10.
 - 회의결과 : 원안동의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호암산성(서울 虎巖山城) 사적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6.10.10(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서울 호암산성의 측량에 의한 구역의 변경에 따라 추가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서울 호암산성의 잔존구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적**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서울 호암산성(서울 虎巖山城)”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서울 호암산성의 측량 확인에 의한 성곽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서울 호암산성(서울 虎巖山城)”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서울 호암산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경계를 이루는 호암산(347m) 정상에 북동-서남으로 길게 축조된 둘레 1,547m, 면적 약 68,689㎡의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성의 동쪽은 삼성산(460m), 관악산(629m) 등 높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쪽으로는 북류하는 안양천을 따라서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시흥동 방면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중간 부분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터진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이 당시의 문지로 추정되며, 시흥동에서 이 문지까지의 고도차는 약 150m 정도이다.
- 산성의 동북지역은 관악산과 삼성산의 험준한 봉우리들로 막혀 있으나, 서쪽은 안양천을 끼고 발달한 넓은 평지를 이룬다. 따라서 산성 정상에서 이들 평야지대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 평야지대는 현재 공장과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도시가 발달되기 전에는 비옥한 농경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평야는 남북으로 좁고 길게 형성되어 멀리 한강 이북 양화도 들판까지 연결되고 있다. 또한, 산성 정상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멀리 소래·군자 일대의 해안선(남양만)이 보이며 날씨가 맑으면 포구의 배가 보일 정도로 가깝게 느껴진다. 그리고 산성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한강을 건너 용산과 남산 그리고 삼각산까지 조망된다.
- 이와 같은 입지조건으로 볼 때 서울 호암산성은 안양·금천 일대 평야를 관할하는 요새로서 서쪽 해안과 북쪽에서 침입하는 적에 대한 공격과 방비를 위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서울 호암산성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 사이에 축성되어 통일신라 시기에 군사적 전략 거점 및 행정 치소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통일신라 이후 국내 정세가 안정되면서 고려~조선에서는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 시·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제1우물지(한우물)의 토층에서 통일신라 유물층과 조선시대 유물층 사이에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토층이 확인된 것과 소량의 북송(北宋) 화폐인 희녕원보(熙寧元寶)와 고려의 청자편이 출토된 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희녕원보는 11세기에 주로 사용된 화폐이고, 고려와 북송의 사교역이 활발했던 시기임).
- 『동문선』의 「호암설」과 『경기읍지』의 「시흥조」에 조선시대 도읍설화와 기우제에 관련된 이야기, 서울 호암산성 내의 석구상, 제1우물지의 조선시대 석축재에 새겨진 ‘石狗池’라는 글자로 볼 때 역시 조선시대에도 군사적 기능 외에 풍수지리나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 즉, 나당전쟁 시기를 즈음하여 전략적으로 축성된 서울 호암산성은 통일신라 시기까지 군사적 전략 거점과 행정 치소로 운영되다가 비교적 국내 정세가 안정되었던 통일신라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군사적 기능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생활 및 의례시설로 변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일시	내용	비고
1972.08.30	문화재 지정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호
1977.04.05	경고판 설치	영등포구청장, 남부경찰서장
1977.11.04	안내판 설치	영등포구청
1978.07.26	문화재 보호구역 고시	서울시, 총면적 5,730㎡
1979.11.10	안내판 교체	영등포구청, 국영문표기, 철제조립식
1986.05.07	안내판 교체	구로구청, 국영문표기, 알루미늄조립식
1989	한우물 시민공원화계획 수립	구로구청(한우물 정비복원계획 수립)
1989.06.24~1990.11.30	1차 한우물 보수정비공사 (주변환경정비)	수습조사(1989.10.13.~1989.11.01)와 시·발굴조사(1990.03.12.~1990.05.20) 병행 내용: 진입로 주변 석축공사, 수목 정비, 석구상 정비, 여과기 및 휴게시설 설치
1990.12.21~1991.09.16	2차 한우물 보수정비공사 (한우물 복원정비)	내용: 한우물 바닥 및 내벽 복원정비, 배수로 정비 및 석축 쌓기, 난간 및 보호철책 설치
1991.02.26	사적 승격	사적 제343호(문화재청)
1995.03.01	금천구로 관리 업무 이관	구로구에서 금천구 분구
1995.04.25	한우물 여과기 철거	문화재청과 협의
1995.06.02	석축 보수 방안 마련	금천구청 문화공보과-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

1995.06.20~1995.07.03	우기 대비 임시조치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1995.10.26	석축보수공사 설계 용역 완료	금천구청 문화공보과
1995.11.04	현상변경허가	석축보수, 문화재관리국
1995.11.30	석축보수공사	옹벽 및 석축공사 병행
2009.11.10	토지매입	시흥동 산 93-5 임(8,580㎡)
2010.06.25	토지매입	시흥동 산 93-6 임(12,950㎡)
2012.05.24	토지매입	시흥동 산 93-3 임(3,363㎡) 시흥동 산 93-8 임(11,900㎡)
2014.04~12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금천구청 문화체육과(한강문화재연구원)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서울 호암산성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세력권 안에 넣고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축성된 거점 성곽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한강 유역에 존재하는 신라 성곽 유적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 백제 성곽에 비해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 호암산성은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신라로부터 출발하여 고려·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호암산성은 역사의 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도 변화해 왔다. 국방과 행정을 위한 거점 성곽에서 사람들의 생활시설로 변화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담고 있는 중요한 장소로서 역사의 흐름과 시대상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호암산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이며 서울 둘레길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울 호암산성이 있다. 서울 호암산성은 인근 삼국시대의 성곽 유적들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새로운 역사·문화공간 중심지로의 역할 수행에도 충분하다.
- 이렇듯 서울 호암산성은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을 상징하는 상징성과 역사·학술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까지 모두 가진 유적이라 할 수 있다.
- 현장 조사결과 산성의 북동부와 남쪽의 성벽이 기존 지정구역 범위 외곽으로 확장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좌표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성벽선을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 성벽 유구 중 남쪽 등산로에서 새롭게 확인된 체성벽과 보축성벽은 호암산성의 축조시기 및 축조공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 유구이므로 발굴조사 및 유적 정비와 등산로 우회 등 유적 보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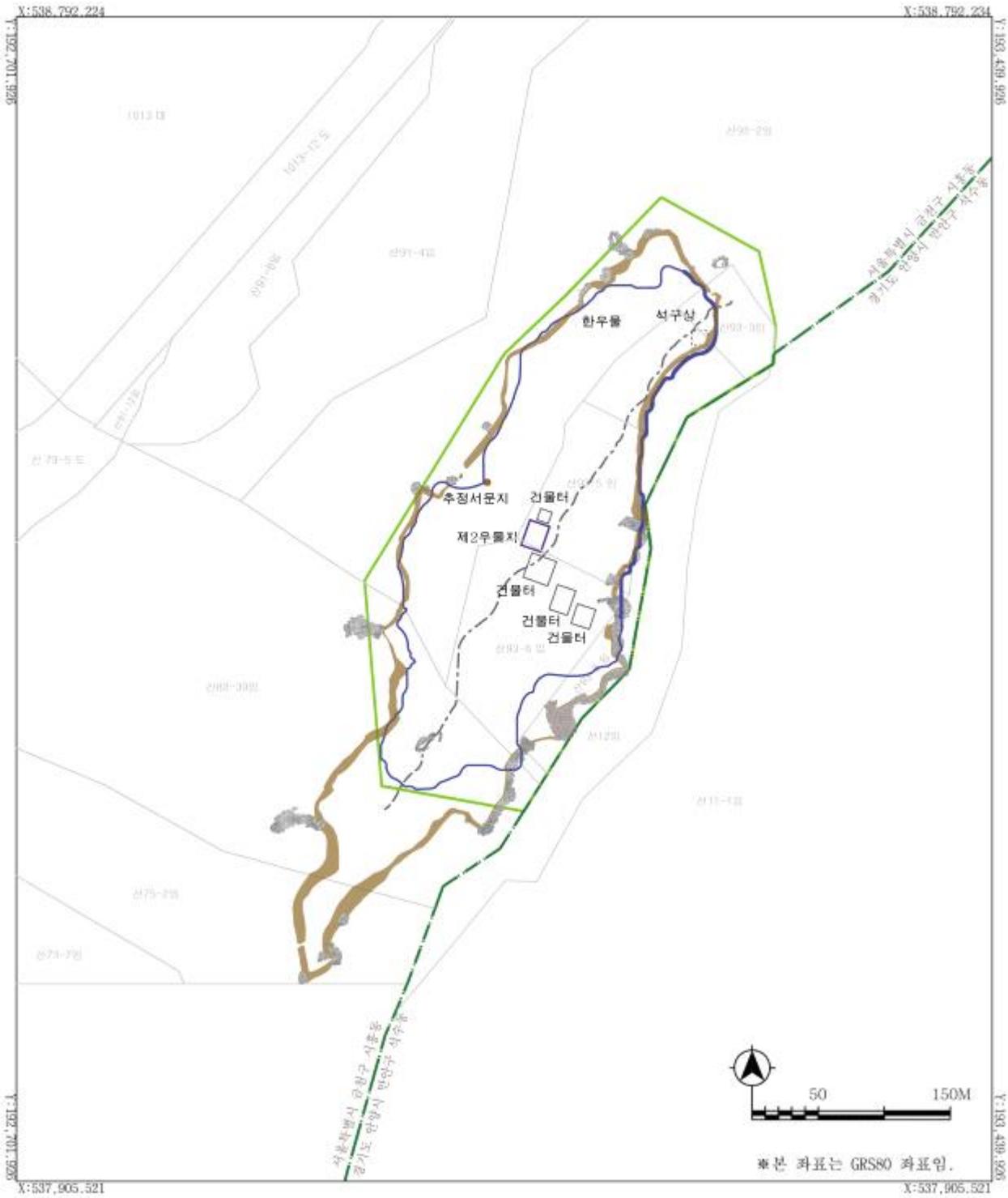
6. 지정 대상 및 범위

신청면적 : 7필지 58,4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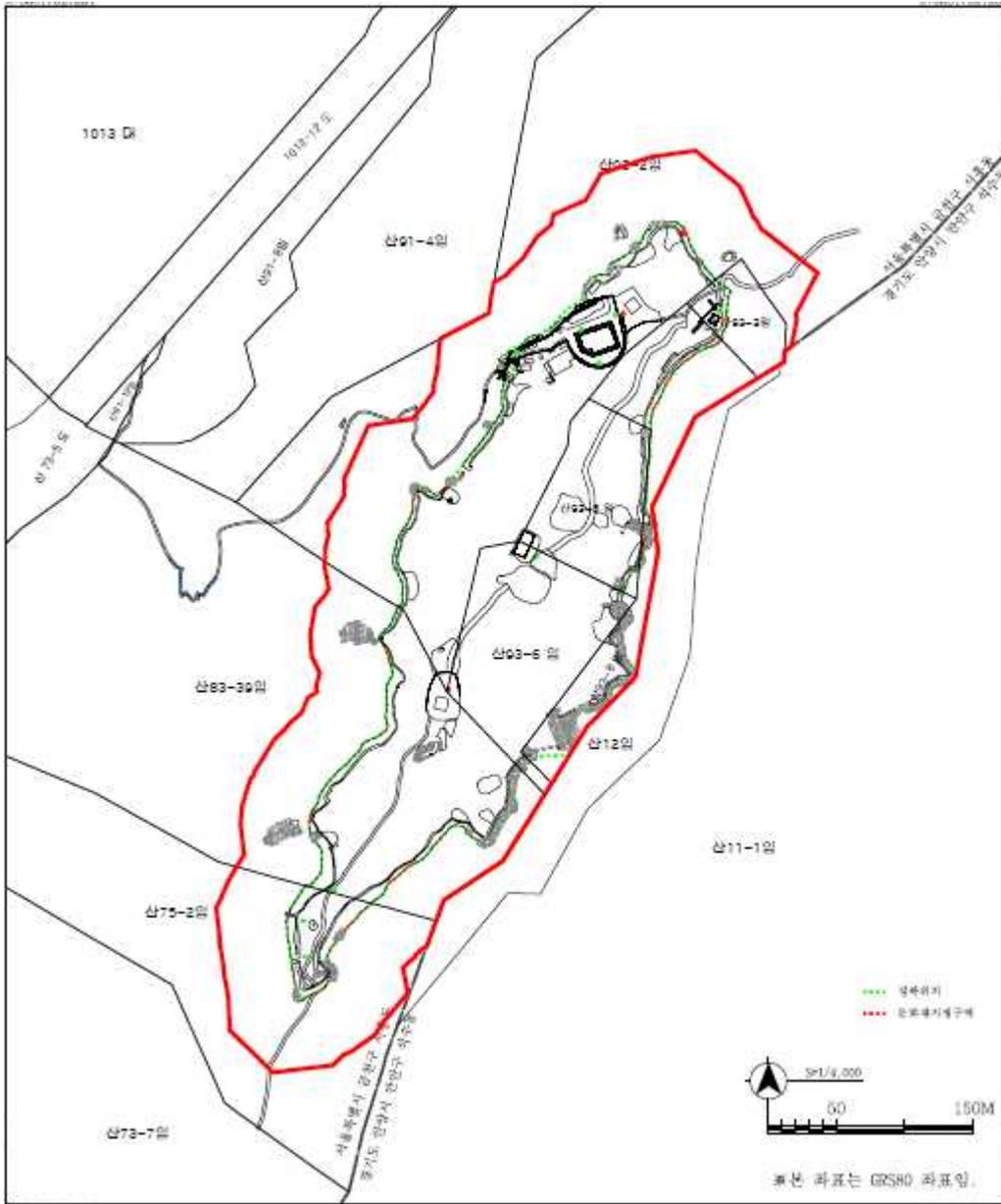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m ²)	기존지정 면적(m ²)	추가지정 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83-39	임야	90,961	10,869	21,993		
2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93-2	임야	159,769	27,728	19,935		
3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93-3	임야	3,363	3,363	0		
4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93-5	임야	8,580	8,580	0		
5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93-6	임야	12,950	12,950	0		
6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93-8	임야	11,900	11,900	0		
7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75-2	임야	50,704	0	16,472		
계				338,227	75,390	58,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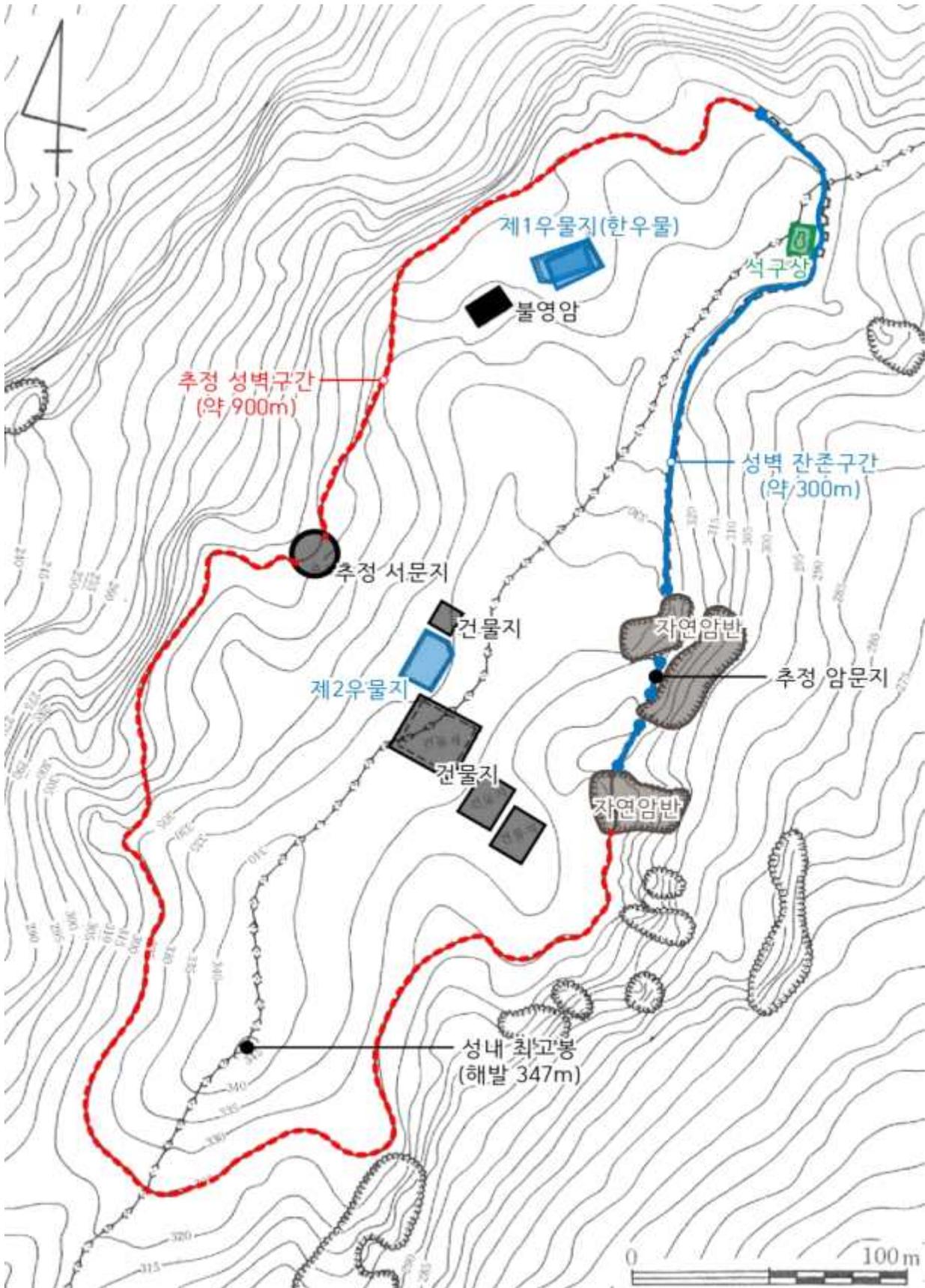
서울 호암산성 위치도



서울 호암산성 지적도 및 기존 지정구역(초록색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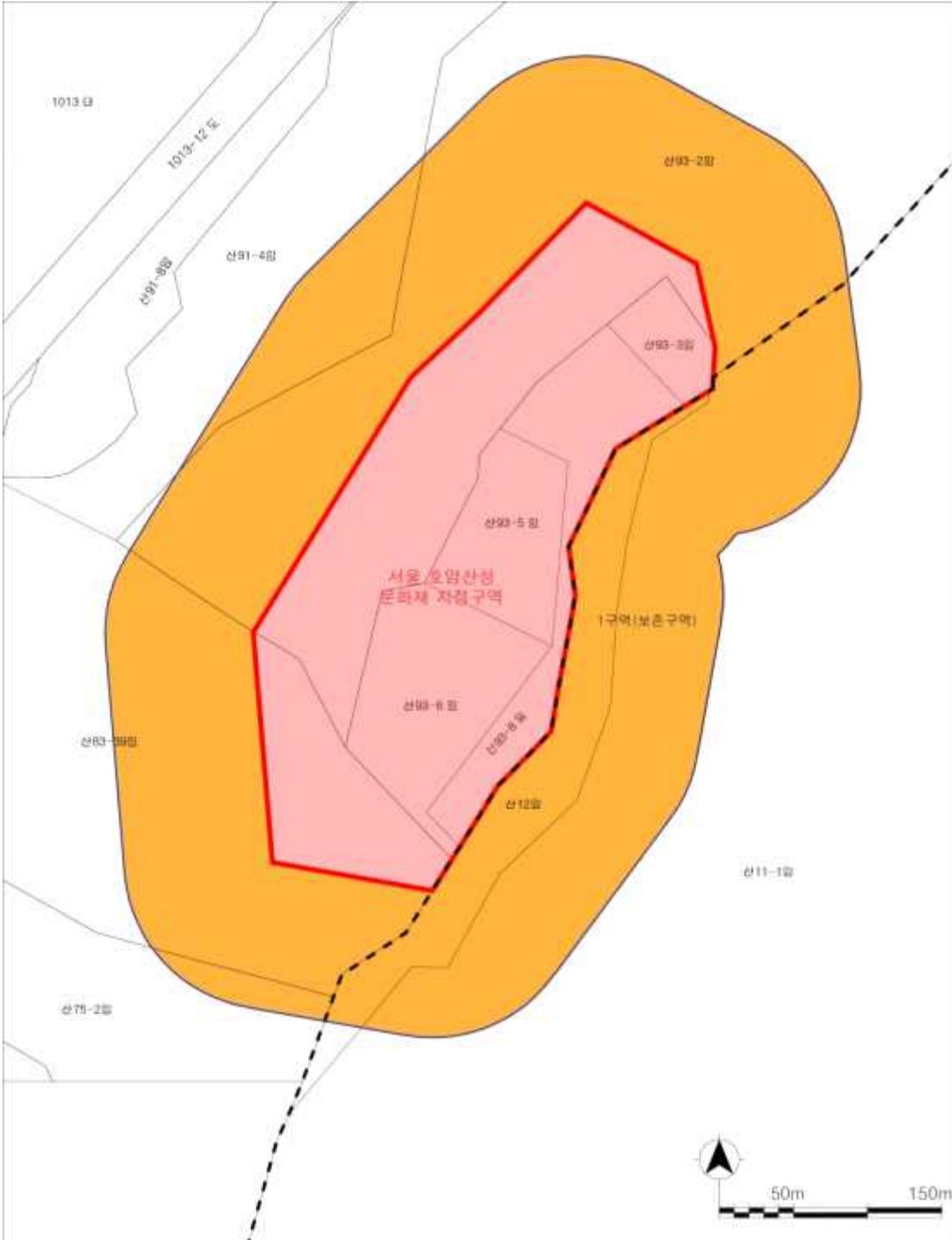
서울 호암산성 추가지정 후 지정구역(붉은색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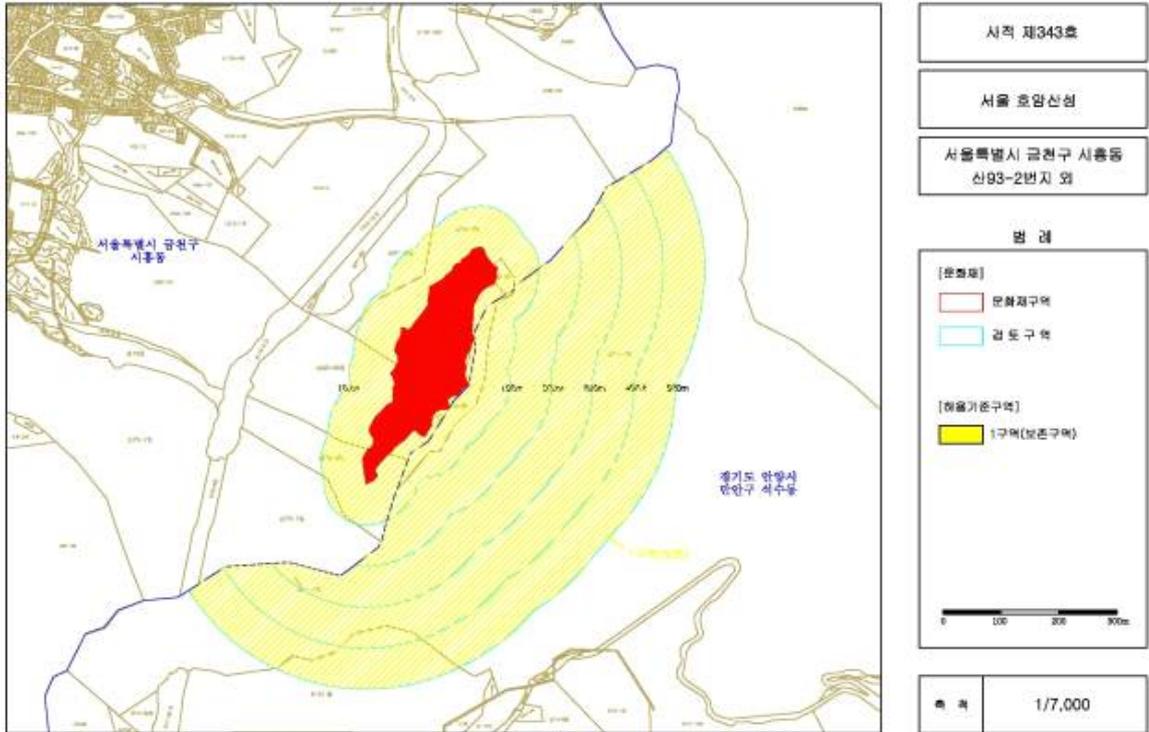
호암산성 평면도(서울대학교博物館, 『한우물-虎岩山城 및 蓮池發掘調査』, p.115, 1990. - 산성지 평면도에 가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기존 서울 지역의 100m 구역을 준용하여, 하천변까지 100m를 개별심의구역으로 하였으나, 경기도 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의 외곽 500m 안쪽을 기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별심의구역(1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기존 서울 호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서울 호암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1) 기초정비계획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 여건 조성을 위한 기초정비계획

- 현황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남측 성벽을 포함하는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측량사업을 실시한다.
-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통해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변경·고시한다.
-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작성하고, 확대된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다.
- 토지매입 진행 상황에 맞추어 성벽과 성 내·외부의 수목을 정비하여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한 정비사업 추진 및 보존관리사업 여건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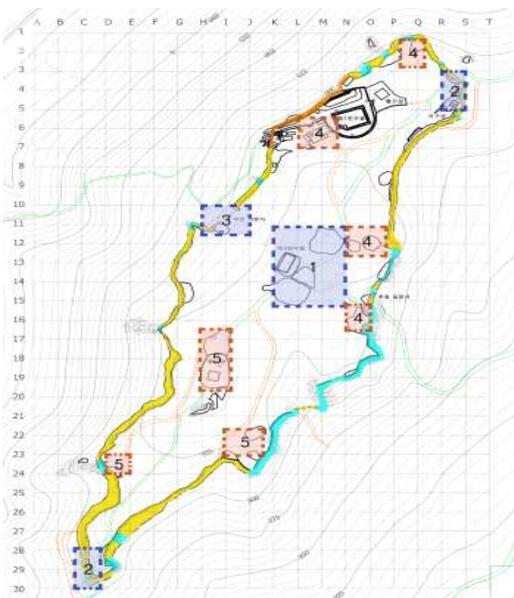
2) 학술조사계획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우선순위

- 서울 호암산성의 본격적인 유적 정비 이전에 매장문화재 조사가 가능한 지역과 성곽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성곽시설 부분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 각 단계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하여 향후 유적 복원 정비를 위한 원형 고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학술대회를 실시한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외 학술조사 및 연구

- 계획 수립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성들의 석재 재질 분석 및 채석장 추적 연구와 성벽 3차원 디지털 스캔, 변위측정 등의 학술조사 및 연구를 시행한다.
- 1차 조사지역은 제2우물 및 추정 건물지1로 면적은 약 2,400㎡이다. 1987년 시굴 조사에서 제2우물의 일부가 조사되었으나, 전체적인 규모 및 축조방법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추정 건물지는 시굴조사 후 복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유적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등산로가 건물지 내부에 개설되어 유적의 붕괴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다.
- 3차 조사지역은 추정 서문지로 면적은 약 1,200㎡이다. 현재 서문지 주변으로 성돌이 산재하고 있으며, 지형상 주출입시설로 판단되기에 발굴조사 후 정비·복원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4차 조사지역은 제2우물 북쪽의 추정 건물지에 대한 시굴조사로 면적은 약 1,200㎡이다. 지표조사 시 2열의 석렬이 확인되었으며, 제2우물과 인접해 있어 호암산성과 관련한 주요 건물지가 유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5차 조사지역은 제2우물 남쪽의 추정 건물지에 대한 시굴조사로 면적은 약 1,600㎡이다. 현재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호암산성의 정상부의 평탄지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대(장대)가 자리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 6차 조사는 앞선 조사 성과에 따라 성 내·외부에 추가 유적의 가능성이 제시될 경우, 유적의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계획하였다.
- 현장설명회는 매장문화재조사 후 또는 유적정비부분 과정에서 실시하여 연구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삼는다.



발굴조사 및 학술조사 계획도

3) 유적정비계획

성곽 유적 정비계획

- 성곽 시설 가운데 성문, 치 등과 같은 시설은 온전히 보존된 유적이 거의 없으나, 서문지가 위치와 주변 지형 등을 토대로 볼 때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다.
- 새롭게 조사된 성벽의 총 연장길이는 1,547m로 측량되었는데, 자연암반구간을 제외한 성벽 가운데 형태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 훼손된 구간(불영암 진입로 일대)은 109.4m, 원형 또는 변형된 채로 남아있는 석축 성벽 구간이 1,015.5m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석축 성벽 구간은 성돌이 흘러내려서 주변에 산재된 상태이며, 원형 성벽 구간은 동벽에 주로 남아있고, 서·남·북벽의 잔존 성벽은 대부분 변형된 상태로 남아있다.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유적의 현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서울 호암산성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서문지와 탐방로로 주로 이용되는 남·북측의 현황 진입로 부분의 성벽 구간을 복원구간으로 설정했다.
-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대부분 성돌이 흘러내려 산재하고, 원형 또는 변형된 성벽은 조사 당시에 안정된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보강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로서는 잔존 성벽의 안정성이 양호한 상태이지만 탐방객의 이용과 기후의 영향, 지형의 변형으로 인한 붕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시적인 붕괴 성벽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성내 유적 정비계획

- 성내 유적은 제2우물지와 주변 건물지가 1990년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복원정비한다.
- 이 외에 불영암과 성내 동·북측의 추정 건물지, 성내 남측의 추정 건물지는 시·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복원정비한다.

구간별 성벽 현황

- 전체 성벽 구간을 1~16구간으로 구분하여 성벽의 잔존 상태를 조사했으며, A~G 구역으로 구분하여 전체 성벽의 보존상태를 정리했다.
- 전체 성벽 가운데 훼손 또는 변형 되었거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추정된 성벽 구간을 제외하고, 원형으로 보존된 성벽의 길이는 약 122m 이다.
- 구역별·구간별 성벽 보존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보존 현황별 성벽 보존관리 방안

- 성돌이 흘러내려 산재한 구간과 완전히 유실되어 추정하는 구간의 성벽은 현재 원형을 추정할 수 없으나, 안정성은 확보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훼손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현상을 보존한다.

- 원형이 보존된 구간과 변형된 채로 잔존하는 성벽은 대체로 성벽의 높이가 높지 않고 뒷채움 흙이 양호한 상태로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복원정비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상을 보존한다.
- 성벽의 복원 정비 구간은 성곽의 특징과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서문지와 남·북측의 진입부로 설정하되, 성문과 연결된 양측의 성벽 일부를 함께 복원한다.

정비 기본 방향	구역	구간	보존관리 대상
현상유지관리	A~G구역 전구간	1~16구간	원형, 훼손, 변형 성벽
복원정비	A구역	1구간(45m~85m)	북측 진입로 주변 성벽
	D구역	9구간(800m~840m)	남측 진입로 주변 성벽
	F구역	13구간(1,240m~1,300m)	서문 및 주변 성벽

4) 시설정비계획

탐방객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계획

- 서울둘레길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 호암산성은 평소 탐방객의 이용이 많은 사적지로 성 내·외의 탐방로가 탐방객에 의해 임의로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 임의로 조성된 탐방로는 성벽과 성내 자연환경의 훼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탐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정비한다.
- 전시(안내)시설은 불영암 위치에 조성하되 사전에 관계자 협의와 전시(안내)시설 조성 타당성 연구를 통해 불영암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 전시(안내)시설 조성과 탐방로 정비가 완료되면 탐방객의 문화재 탐방을 안내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안내판을 정비한다.

탐방로 정비계획

- 등산객에 의해 임의로 개설된 탐방로는 탐방객의 안전과 유적 보호를 위해 기존 등산로 가운데 남측과 북측의 진입로를 연결하는 서울 호암산성 중심의 등산로와 서문에서 연결되는 등산로를 주 탐방로(정비면적 1,110㎡)로 정비한다. 이 외에 주 경관 조망점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각각 보조 탐방로(정비면적 240㎡)로 정비한다. 평지의 탐방로는 경화 마사토 포장하고 경사가 심한 곳은 목재 데크를 설치한다. 탐방로 양측에는 소폭의 배수로를 둔다. 앞서 추정 서문지 정비계획에서 언급했듯이 추정 서문지로 연결되는 외부 동선도 주출입로(정비면적 30㎡)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탐방 안내판 설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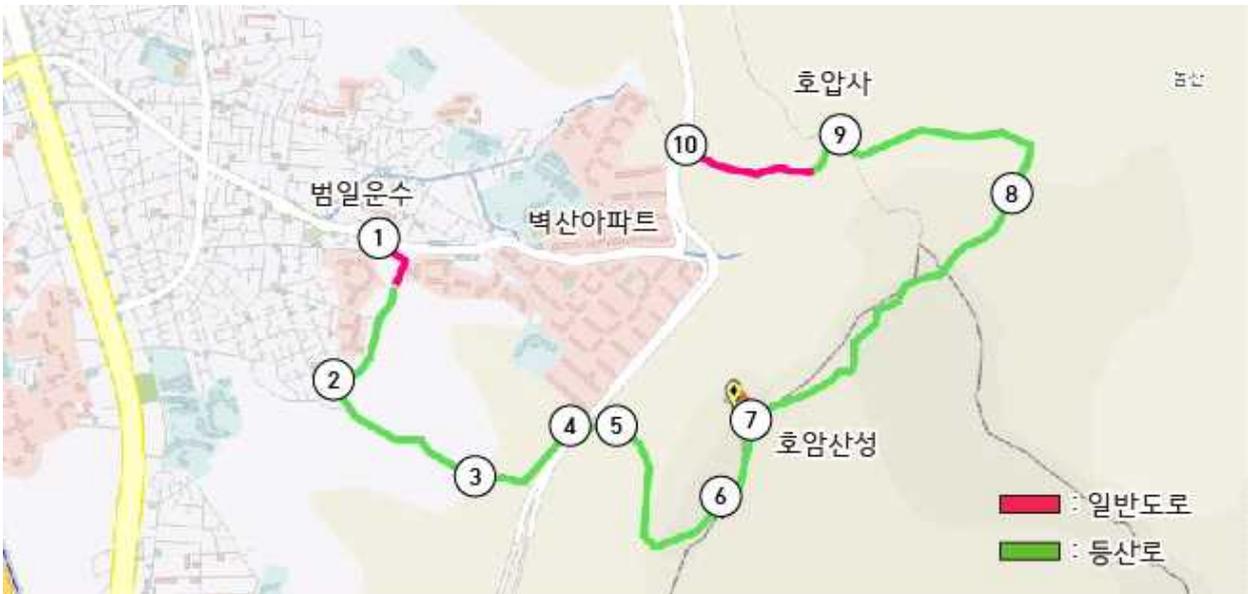
- 탐방 안내판은 2010년에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을 기준으로 설치 위치와 종류, 형태 등을 결정한다.
- 탐방 안내판은 안내판의 기능과 탐방객의 동선, 유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종합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 안내판, 파노라마 안내판을 각각의 위치에 설치한다.
- 문화재 종합안내판은 복원정비된 추정 서문지 앞과 남측 및 북측 진입부에 각 1기(총 3기)를 설치한다. 문화재 개별안내판은 우물지 2개소, 건물지 및 석구상 각 1개소, 총 5개소에 설치한다.
- 길찾기 안내판은 성내 주 탐방로와 보조 탐방로가 만나는 교차로 지점 3개소에 각 1기씩 설치한다. 파노라마 안내판은 조망테크 3개소에 설치한다.

5) 활용계획

호암산 역사·생태 탐방 트레킹

- 호암산 일대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원과 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하여 호암산 역사·생태 탐방 코스를 구성하는 안으로, 별도의 시설 정비나 예산 투자 없이 기존의 생태 탐방코스(서울두드림길, 생태문화길, 호암산 나들길)를 이용하여 호암산을 경유하는 역사·생태 탐방코스를 운영한다.
- 총 탐방 거리는 3.95km, 소요시간은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코스이다.

경유지		탐방 내용	비고
1	범일운수 중점	출발 및 도착	
2	시흥계곡 입구	트레킹 시작	
3	산복약수터	휴식	
4	생태통로	트레킹	호암산의 생태
5	호암폭포	휴식	금천구의 역사
6	칼바위 전망대	금천구 전망 관람	금천구 역사유적지 소개
7	서울 호암산성	문화재 탐방	
8	흔들바위 전망대	휴식	
9	호암사	문화재 탐방	
10	호암사 버스 정류장	출발 및 도착	



신라 성곽 지하철 탐방

- 금천구 주변 지역에 위치한 신라 성곽을 지하철을 이용하여 탐방하는 테마코스로 강서구의 양천고성지와 금천구의 서울 호암산성, 강남구의 대모산성을 탐방하는 코스이다.
- 금천구와 인접한 강서구, 강남구의 신라성곽을 중심으로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대중교통과 트레킹으로 탐방하는 코스이다.

경유지		탐방내용	비고
1	양천고성지	문화재 탐방	출발 및 도착
2	겸재정선미술관, 양천향교	문화탐방	도보 이동
3	양천향교역	휴식	지하철 이동
4	석수역	트레킹시작	서울둘레길 관악산 5코스
5	서울 호암산성	문화재 탐방	트레킹
6	서울대입구역	휴식	지하철 이동
7	대모산입구역	트레킹 시작	도보 이동
8	전주이씨광평대군묘역	문화탐방	도보 이동
9	서울 대모산성	유적지 탐방	출발 및 도착

※ 지하철 안내 : 양천향교역(9호선) → 노량진역(환승, 1호선) → 석수역(1호선) → 서울대입구역(2호선) → 선릉역(환승, 분당선) → 대모산입구역(분당선)



서울 호암산성의 문화콘텐츠 개발

- 서울 호암산성은 신라 성곽이라는 문화유적 외에 한양 도읍시의 석구상에 관련된 설화와 서울 호암산성 내 제1우물지에 관련된 기우제 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나, 구전되는 이야기에 머물고 있다.
- 서울 호암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이를 영상이나, 연극, 그림 등의 시각적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로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신라 문화권 형성을 위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 서울·경기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년간 경기 북부와 한강 유역 일대에 남겨진 고구려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고구려 문화권을 역사문화관광벨트로 개발하는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 서울 호암산성의 역사적 가치 제고를 통한 역사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고구려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관광벨트처럼 호암산성과 주변 한강 유역의 신라 성곽을 신라문화권으로 묶어 역사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금천구를 중심으로 신라 역사유적을 관리하는 주변(양천구, 강남구)의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적인 역사문화관광벨트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종합적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

- 서울 호암산성이라는 개별 문화재와 정비사업을 금천구 관광 활성화의 시발점으로 삼을 순 있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재,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9. 종합 의견

- 서울 호암산성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세력권 안에 넣고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축성된 거점 성곽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며,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적이라 할 수 있음.
- 2014년 현장 조사결과 산성의 북동부와 남쪽의 성벽이 기존 지정구역 범위 외곽으로 확장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좌표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성벽선을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이 필요함.
- 성벽 유구 중 남쪽 등산로에서 새롭게 확인된 체성벽과 보축성벽은 호암산성의 축조시기 및 축조공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 유구이므로 발굴조사 및 유적 정비와 등산로 우회 등 유적 보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가로 확인된 호암산성의 유구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원주 거둔사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168호 「원주 거둔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원주 거둔사지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원주 거둔사지(사적 제168호 / 1968.12.19.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번지 외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면적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4번지 등 16필지 21,137㎡
- (4) 신청사유
 - 사적 지정구역 전면 폐교 부지와 좌측 농경지에 남아 있는 당간 지주와 석축 유구 확인 등을 통해 동 부지가 사역범위임을 확인, 이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추가지정보고서

원주 거둔사지(原州 居頓寺址) 추가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6.10.06(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원주 거둔사지(原州 居頓寺址)의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원주 거둔사지(原州 居頓寺址)”로 신청함.

■ 검토의견: 원주 거둔사지(原州 居頓寺址)의 추가적인 사역을 확인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주 거둔사지(原州 居頓寺址)”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거둔사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번지 일원으로 현계산, 황학산, 덕갈봉, 축새봉으로 둘러싸여 있다.
- 거둔사지는 현계산(해발 535.2m)의 말단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131~132m 내외이고 남쪽에는 정산천이 있으며 서에서 동쪽으로 관류하여 남한강과 합류한다.
- 거둔사지는 산지에 조성되었지만 남한강이 가까이 있어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거둔사지로의 주 접근방법은 부론-귀래간 531번 지방도를 이용하여 정산로에 진입하여 북동쪽으로 약 3km 직진하면 북쪽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또는 손곡리에서 통점교를 건너 동쪽의 손곡저수지를 지나 남쪽으로 3km정도 직진하면 도착하게 된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원주 거둔사지는 현계산 기슭의 작은 골짜기를 끼고 펼쳐진 곳에 있는 절터이다.
- 발굴조사 결과 신라 후기인 9세기경에 처음 지어져 고려 초기에 확장·보수되어 조선 전기까지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 절터에는 중문터, 탑, 금당터, 강당터, 승방터, 회랑 등이 확인되었는데, 금당의 규모는 앞면 5칸·옆면 3칸으로 2층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문지 북쪽의 3층석탑(보물 제750호)은 처음 세워질 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탑의 동쪽에는 원공국사 지중(930~1018)를 위한 원공국사승묘탑비(보물 제78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원공국사승묘탑(보물 제190호)은 현재는 경복궁 뜰 안에 옮겨 놓았다.
- 거둔사는 고려 초기 불교계의 중심이었던 법안종의 주요 사찰이었지만, 고려 중기 천태종이 유행하면서 천태종 사찰로 흡수되었다. 거둔사는 신라말 고려초의 절터로서 보기 드문 일탑식 가람으로 주목할 만한 곳이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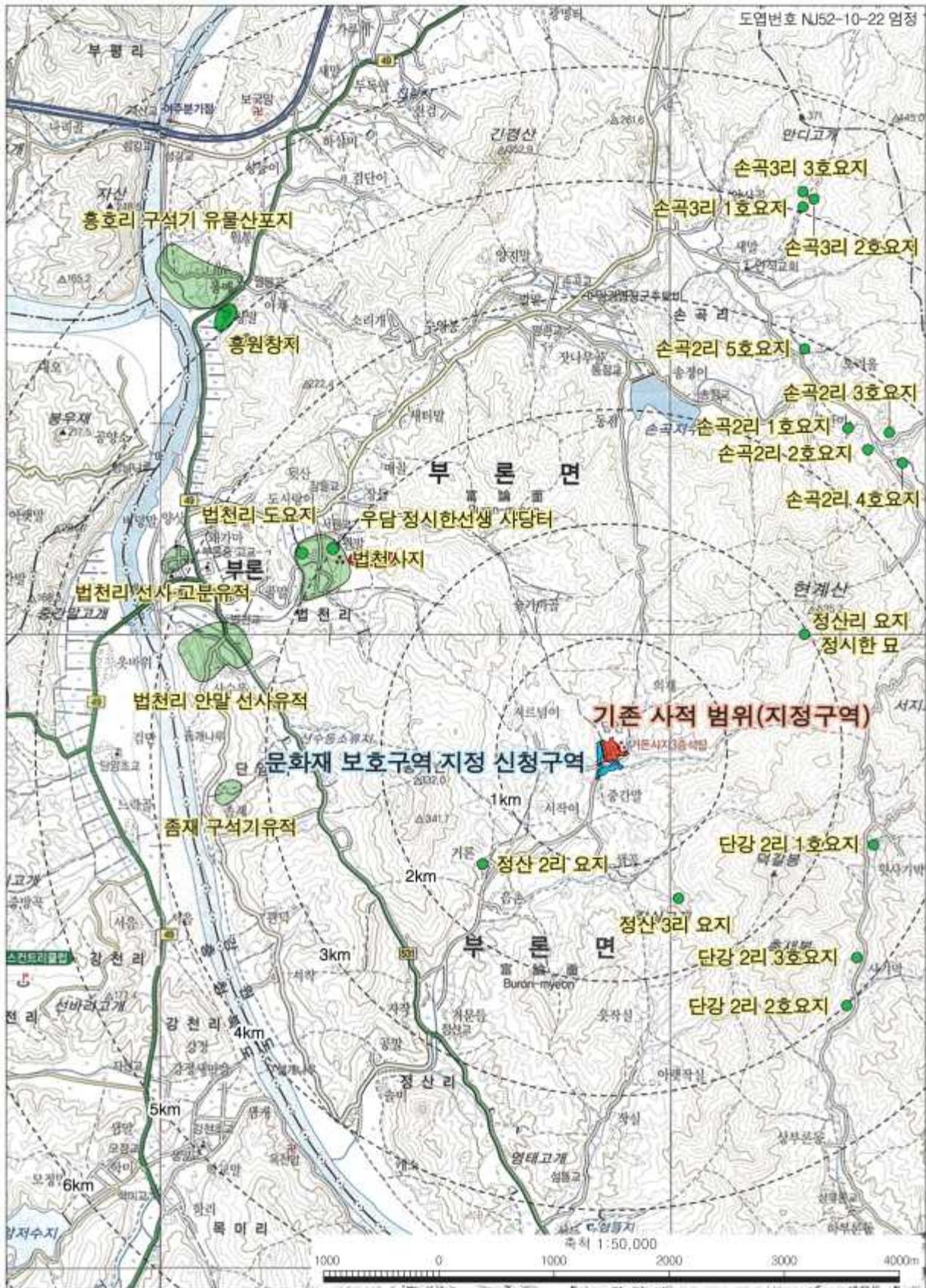
- 현재 거둔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는 남쪽과 서쪽 구역이 지정되지 않음으로서 금당지와 석탑을 축으로 하는 주축선이 동쪽으로 치우쳐져 본래의 거둔사지가람배치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녀왔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거둔사지의 가람배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I 구역과 서쪽의 II 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행정기관과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I 구역인 부론면 정산리 248번지 외 2필지에는 현재 폐교된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운동장에는 길이 약 716cm, 두께 82cm 정도의 방형 석재가 소재하고 있다. 부재의 상단은 반원형으로 치석되었으며 하단부에는 관통되지 않은 원공(圓孔)이 있다. 이는 거둔사에 건립하려 했던 당간 지주 2개 중의 1개체로 보이며 동일한 크기의 1개체는 채석장 인근에 있다. 현재 거둔사의 가람배치로 볼 때 현재의 위치가 당간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여진다. 즉, 현재의 거둔사지 사역 내에는 당간을 세울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I 구역 부지가 당간을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여진다. 따라서 당간지주의 부재가 현존하는 I 구역은 거둔사가 경영될 당시부터 사역 내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 II 구역의 부론면 정산리 210번지 외 10필지에는 거둔사지에서 가장 앞 열의 대형 기단석열과 축을 같이 하는 기단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또 다른 축대시설이 남아 있다. 경작지에서도 와편과 석물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거둔사가 경영되던 당시에 사역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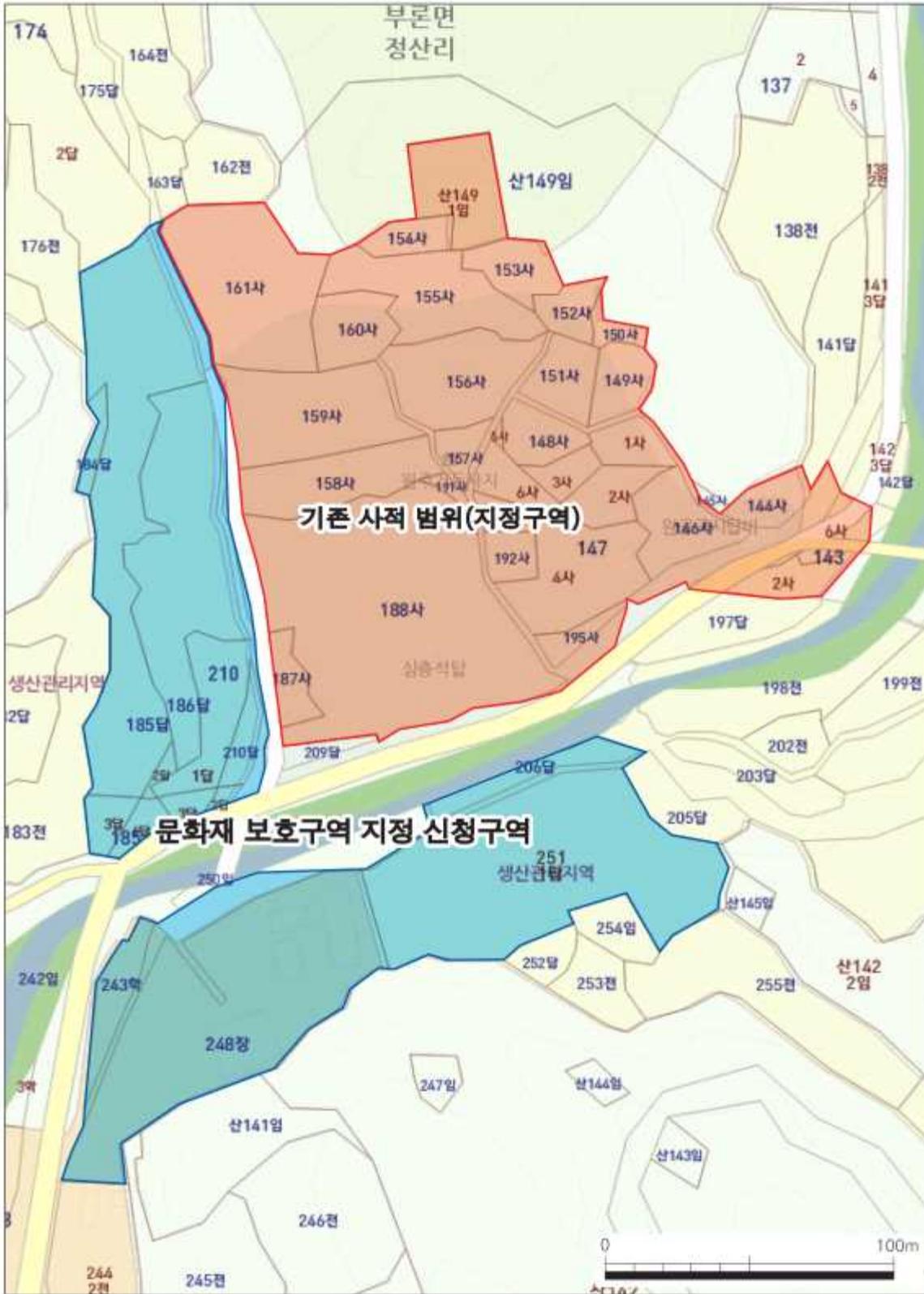
6. 지정 대상 및 범위

신청면적 : 16필지 21,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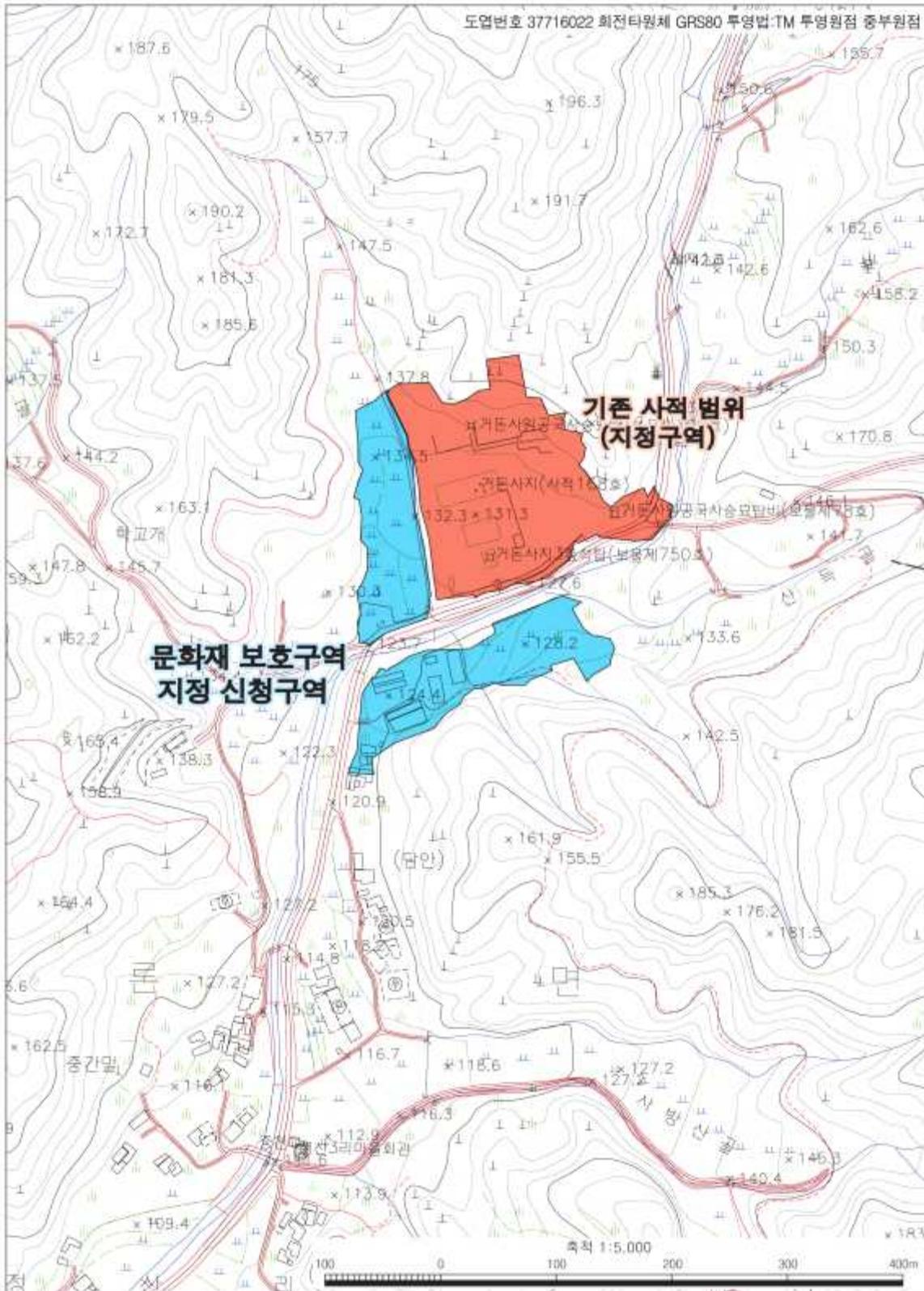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유현황	비고
계	16필지		23,534	21,137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구역	184	답	149	149		
	185	답	3,858	3,858		
	185-1	구	1,751	820		
	185-2	답	69	69		
	185-3	답	246	246		
	185-4	답	240	240		
	186	답	2,826	2,826		
	206	답	516	516		
	210	답	268	268		
	210-1	답	794	794		
	210-2	답	90	90		
	210-3	답	190	190		
	225-1	도	2,169	703		
	243	학	487	487		
	248	장	4,853	4,853		
	251-1	답	5,028	5,028		



<거둔사지 주변 유적 현황도(1:50,000)>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 범위 : 지적도>



<거돈사지 수치지형도(1:5,000)>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 범위 : 항공사진>



거둔사지 및 주변 항공사진



I 구역(추가지정 구역 남서쪽) 항공사진



I 구역 내 옛 정산분교 운동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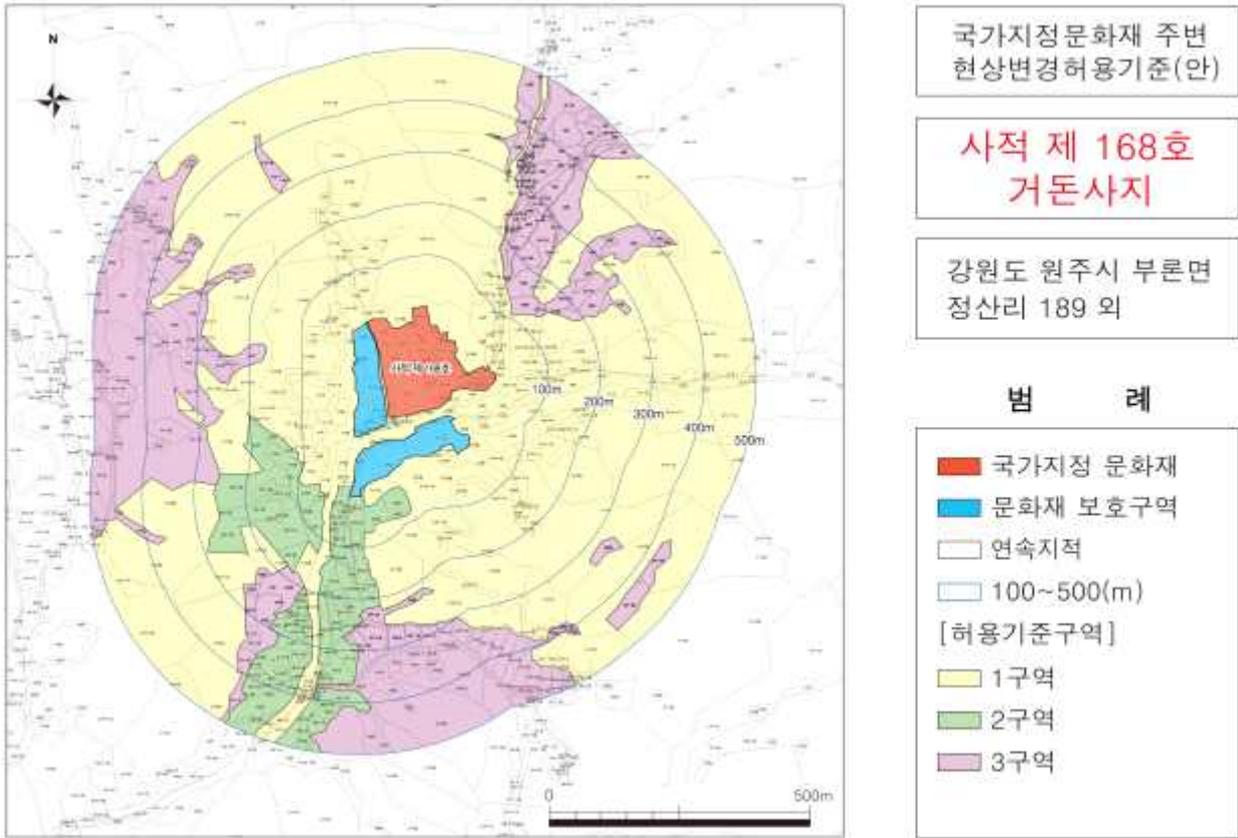
I 구역 내 당간지주



II 구역(추가지정 구역 서쪽) 내 잔존 축대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거둔사지 연접지는 임야로서 일체성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하고 있음. 추가지정에 따른 500m범위는 확대 되나 연접하여 개별심의구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현황의 허용기준을 준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기본방향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 계승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와 인류문화 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문화재 보존을 통한 민족문화의 계승과 이에 대한 활용을 통한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 발전에의 기여”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보존 정비를 해석하면 보존과 정비 또는 보존정비는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정비는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존정비는 보존만을 위한 조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까지 감안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활용이라는 개념에 따라 거둔사지 사적 확대 지정 후 학술조사, 보존관리 방안, 역사학습공간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거둔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기본방향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원주 거둔사지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의 타당성 검토

● 원주 거둔사지 학술 시·발굴조사 계획 수립과 옛 정산분교 소재 당간지주 보존 관리 방안 수립

● 원주거둔사지 관람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역사학습공간 활용안 제시

○ 활용계획

거둔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문헌, 지표조사, 지역주민 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I 구역에 해당하는 옛 정산분교에서는 당간지주가 확인되었고 지역주민의 전언하는 바에 의하면 학교설립도기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II 구역에서는 1986년 지표조사당시 전답에 거둔사지 관련 석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금번 지표조사에서 건물지 축대와 유물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기존 거둔사지 사역범위는 서남쪽(옛 정산분교)과 서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지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한것처럼 거둔사지 사적지정 확대범위 내에는 거둔사지와 관련있는 당간지주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표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둔사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은 타당하다.

그러나 정확한 사역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후에 시굴 및 발굴조사와 같은 고고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거둔사지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거둔사지는 전체적으로 잔디를 식재하여 기단석 및 초석 등을 노출하였고 안내판을 설치, 문화관광해설서비스를 통해 관광객의 이해를 돕고 있으나 거둔사지의 역사성과 원주지역 고려시대 불교 문화사를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법천사지, 흥법사지와 연계된 원주지역 폐사지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거둔사지의 관람객 편의시설로는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만 간이 화장실과 휴지통은 거둔사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주차장, 휴게시설은 협소하여 관람객 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폐허로 방치된 옛 정산분교를 활용하여 거둔사지 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이 확충되어 관람환경이 개선되어질 것이다. 옛 정산분교의 활용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와 지역주민의 역사문화학습공간의 장으로 이용되고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법천사지, 흥법사지와 연계된 폐사지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종합 의견

○ 현재 거둔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는 남쪽과 서쪽 구역이 지정되지 않음으로서 금당지와 석탑을 축으로 하는 주축선이 동쪽으로 치우쳐져 본래의 거둔사지 가람배치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녀왔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거둔사지의 가람배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I 구역과 서쪽의 II 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행정기관과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I 구역인 부론면 정산리 248번지 외 2필지에

는 현재 폐교된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운동장에는 길이 약 716cm, 두께 82cm 정도의 방형 석재가 소재하고 있음. 부재의 상단은 반원형으로 치석되었으며 하단부에는 관통되지 않은 원공(圓孔)이 있음. 이는 거둔사에 건립하려 했던 당간지주 2개 중의 1개체로 보이며 동일한 크기의 1개체는 채석장 인근에 있다. 현재 거둔사의 가람배치로 볼 때 현재의 위치가 당간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여짐.

즉, 현재의 거둔사지 사역 내에는 당간을 세울 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I 구역 부지가 당간을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여짐. 따라서 당간지주의 부재가 현존하는 I 구역은 거둔사가 경영될 당시부터 사역 내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

- II구역의 부론면 정산리 210번지 외 10필지에는 거둔사에서 가장 앞 열의 대형 기단석열과 축을 같이 하는 기단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또 다른 축대시설이 남아 있음. 경작지에서도 와편과 석물이 확인되고 있음. 이는 거둔사가 경영되던 당시에 사역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현장조사 내역으로 볼 때 I·II구역은 사적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구와 유물을 보호하고, 나아가 거둔사지의 온존한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5.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구 경상감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 경상감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16년도 사적분과 제12차 위원회('16.11.9.)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현지조사 실시('16.12.6.) 후 다시 부의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선화당(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82.3.4. 지정)
 - 징청각(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82.3.4. 지정)
 -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9호, '03.4.30. 지정)
 - 관풍루(문화재자료 3호, '82.3.4. 지정 / 현재 달성공원 내 위치)
- 소재지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 (3) 지정신청 명칭 : 대구 경상감영(大邱 慶尙監營)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60필지 48,378.5m²
- (5) 관리단체(안) : 대구광역시 중구
- (6) 신청사유
 - 1601년(선조 34)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원주 강원감영과 더불어 유일하게 조선시대 감영원형지를 보존하고 있고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 임진왜란 이후 8도의 관아 구성과 구한말 격변기 관아 공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라. 현지조사의견('16.10.25/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1)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안) : 대구 경상감영(大邱 慶尙監營)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 등 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 조사에 의해 부속 건물지가 일부 유적으로 잔존하는 상황으로, “대구 경상감영지(大邱 慶尙監營址)”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대구는 고대부터 달성(사적 제62호)을 중심으로 달구벌국을 형성하였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 경상감영이 있는 위치로 고을의 중심이 이동되어 현재까지 대구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음.

○ 경상감영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21번지) 일원의 대구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전동, 포정동, 서문로1가, 대안동, 북내동, 서내동의 6개동에 걸쳐 자리하고 있음.

○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경상도는 태종 13년 도역이 개편된 이래 한말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경상감영은 개국 초 경주에 있다가 세종 조초부터 상주로 옮겨 임진왜란 때까지 존속되었음.

○ 임진왜란 이후 대구로 감영처를 옮겨 경상도의 71개 고을을 다스렸음. 세종 원년에 대구현이 군으로 승격하였고, 세조 12년(1466) 대구군이 도호부로 승격되었음.

○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1960년대까지 경상북도청으로 이용되었으며, 현재 경상감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3) 연혁·유래 및 특징

○ 조선은 태종 13년(1413)에 전국을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함경·평안의 8도로 나누어 감사를 두고, 그 밑에 유수부,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을 설치하였음. 조선 개국 초에서 태종 7년(1407)까지는 경주에 경상감영이 있었으나, 8도제가 확립되고 경상감사의 직무를 상주목사가 겸하면서, 상주는 경상감사가 머무는 행영이 되었음.

○ 태종 8년(1408) 8월부터 14년 7월까지 6년 간 이원·안순·한용 등이 도관찰출척사 겸 상주목사였고, 세종 30년(1448)부터 단종 2년(1454) 8월까지 6년 간은 민공·이인손·이승지·김순 등이 도관찰출척사 겸 상주목사였음. 태종 8년 이후 상주가 경상감사의 본영이었으나, 선조 26년(1593)에

성주(星州) 속현 팔거현(八莒縣)으로 감영이 이동하였다가 선조 29년(1596)에 대구 달성(達城)으로 옮겼고, 다시 선조 32년(1599)에 안동(安東)으로 이동하였다가, 선조 34년(1601)에 체찰사 이덕형의 노력으로 대구부(大丘府)에 정착함.

- 경상도는 태종 7년(1407), 중종 14년(1519), 그리고 선조대(1568~1608)에 몇 차례 좌·우도로 나뉘었으며, 이때도 좌도감사는 경주부윤이 겸하였지만, 우도감사는 상주목사가 겸하였음. 이처럼 약간씩의 변동은 있었지만, 상주는 태종 8년부터 선조 34년까지 경상감사가 머무는 중요한 지역이었음. 그러나 당시 감영의 기능은 감사가 1년 동안 도내 제읍을 순력해야 하므로, 도정을 종합하는 중심지 또는 관찰사 순력 시 일시 휴식하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음.
- 대체로 조선 전기까지는 상주가 8도제 하의 경상감사의 행영으로 본영이었기 때문에 경상도의 중심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선조 34년 경상감영이 대구부에 설치되면서 상주는 8목의 하나로서의 위상만 가지게 되고, 새로 감영이 설치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음.

< 경상감영 연보 >

연 도	내 용
1601년(선조34)	대구 경상감영 설치[지금의 포정동 현 위치]
1670년(현종11)	경상감영 1차 화재[영리청 화재로 문서 전소]
1730년(영조 6)	경상감영 2차 화재[관찰사 조현명 부임기간 중 화재발생 및 중건]
1736년(영조12)	대구읍성 축조[경상감사 민응수의 건의]
1806년(순조6)	경상감영 3차 화재[184칸 전소]
1807년(순조7)	경상감영 재건[현 선화당, 징청각]
1870년(고종7)	대구읍성 대중수 및 공해 각처 256칸 보수
1895년(고종32)	1895년 지방관제 개혁으로 대구군으로 개편 1896.7 경상북도 관찰부로 전환
1897년(고종34)	경상감영의 중영이던 제승당을 최초의 대구경찰청사로 사용
1906년(고종43)	경상감영 외영리청 터에 대구우체국 신축(6월)
1906년(고종43)	경상감영의 선화당에 대구이사청 설치
1907년(고종43)	대구읍성 철거 [1906~1907]
1908년(순종 2)	객사 철거 대구경찰서 신축 이전[1908.10 현 중부경찰서 자리]
1909년	대구이사청 선화당에서 이전 대구읍성 내 십자도로 개설[개수공사 1910.5~1912.5]
1910년	경상감영 선화당 및 내영리청에 헌병대 본부 및 헌병분대, 분건소 설치[6월]

연 도	내 용
1918년	현 종로초 부지(구.대구부아)에 대구본정공립심상소학교 개교[1918.4.1]
1920년	관풍루 이축
1920년대 이후	선화당은 경상북도 산림과, 징청각은 농무과로 이용됨
1966년	경상북도청 이전(1966.4.1 현 산격동 도청부지로 이전)
1970년	중앙공원(현 경상감영공원)개원[1970.10.26]
1972년	선화당, 징청각 문화재 지정(1972.12.29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지정) → 1982.3.4 대구시유형문화재 지정
1997년	경상감영공원으로 명칭 변경(97.10.13 준공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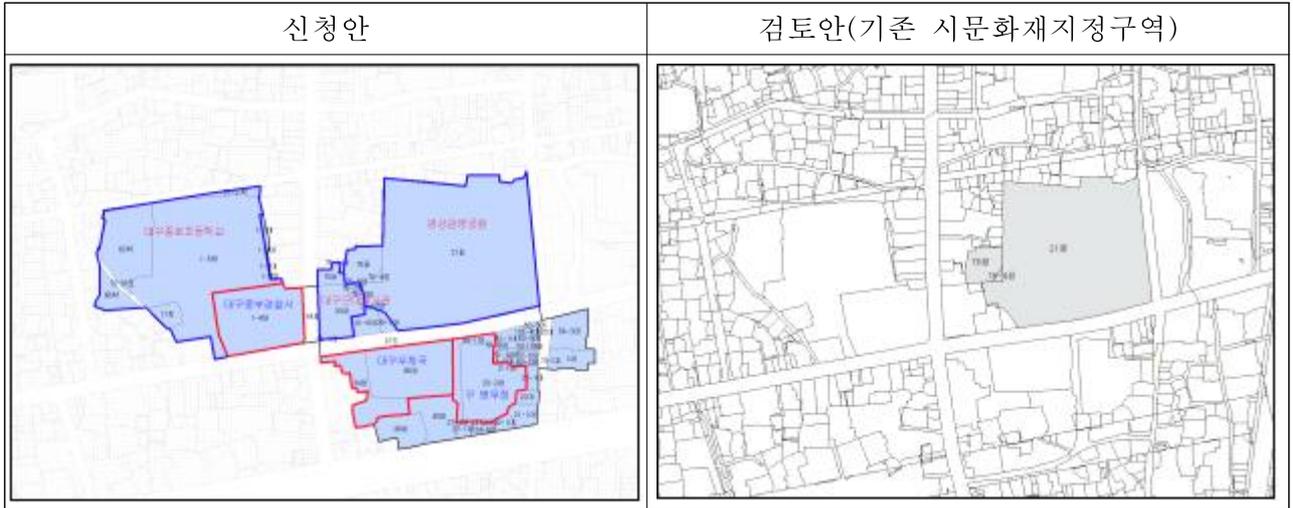
※ 현재 경상감영과 관련되는 건물 중, 선화당(시유형문화재 제1호, 1982.3.4 (도지정 1972.12.29), 징청각(시유형문화재 제2호, 1982.3.4(도지정 1972.12.29)이 있으며, 관풍루(문화재자료 제3호, 1982.03.04)는 대구 달성으로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이 건되었음.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대구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주요 행정지역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감영(원주), 경상감영(대구), 충청감영(공주), 전라감영(전주), 경기감영(서울,수원,광주,영평)의 자취가 남아있으며, 강원감영과 대구의 경상감영도 그 원형의 자취가 잘 남아 있음.
- 1601년(선조 34)에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원주 강원감영과 더불어 조선시대 감영지가 보존되고 있으며,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 위치에 보존되어있음.
- 또한 경상감영과 관련된, 학술자료·문헌자료·고지도·엽서·사진·도면 등이 풍부하여, 향후 발굴조사 성과에 더하여 충실한 고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음.

(5)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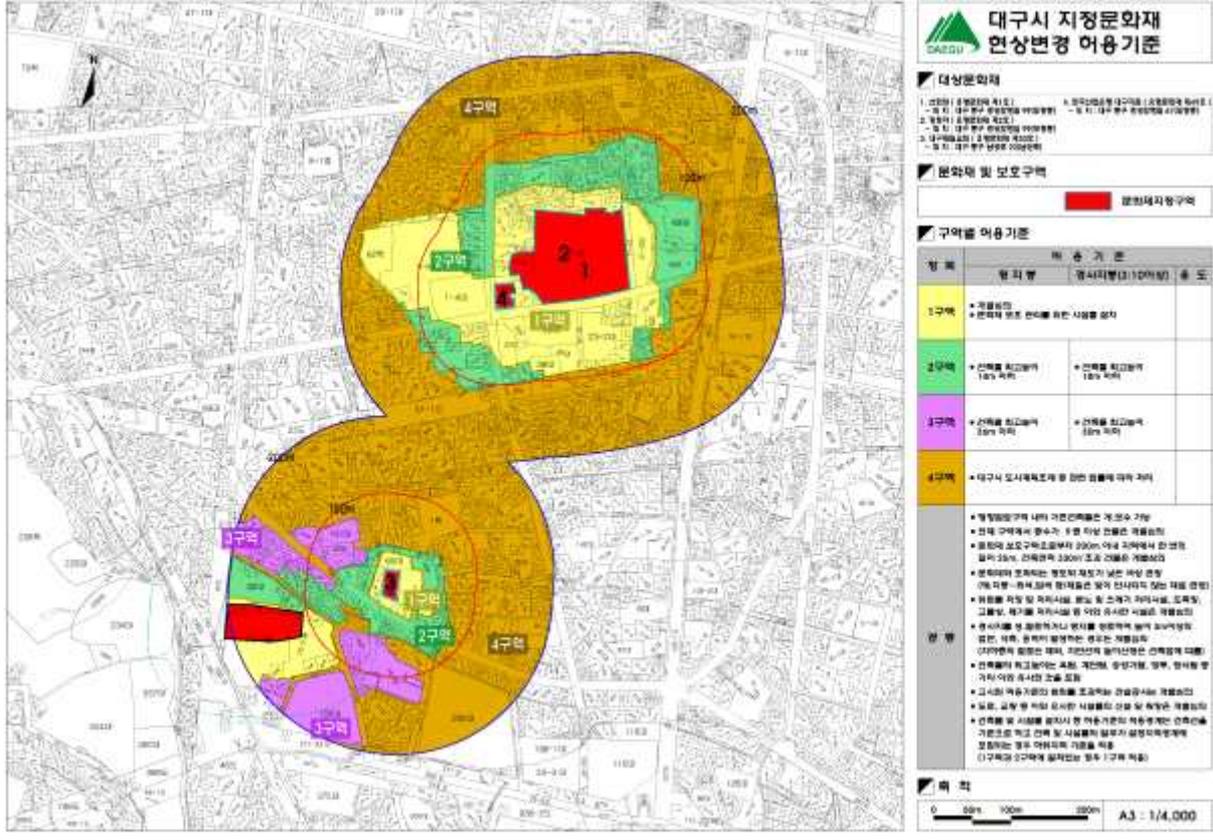
- 사적 지정 신청은 문화재구역 60필지 48,378.5㎡ 신청함.
- 검토의견 : 지정구역의 범위에 있어서는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하여 유구가 확인된 공원구역만 사적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그 주변에 대하여는 향후 학술적인 조사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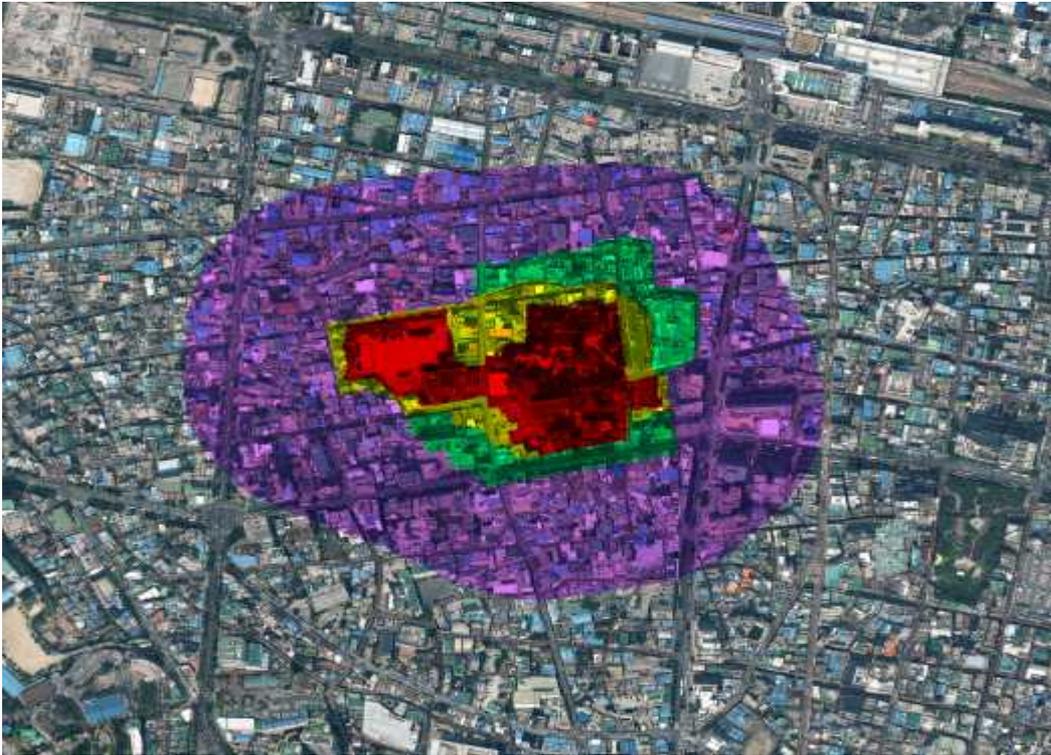
(6)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 검토의견 : 현재 기준은 대구 경상감영지로 추정되는 곳을 1구역(개별심의 구역)으로 하고 있음. 경상감영 추정지를 포함하여 지정구역이 확장된다면 연결지는 높이에 대한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시도지정문화재 행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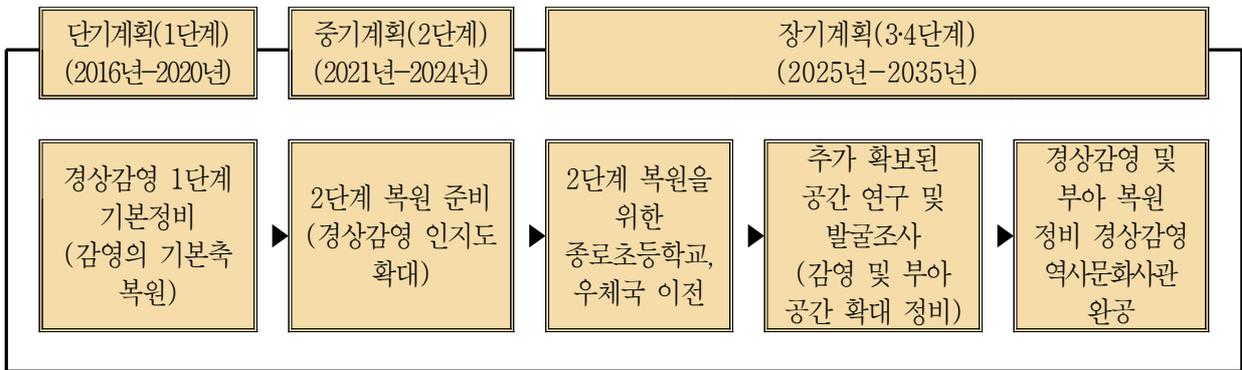
<신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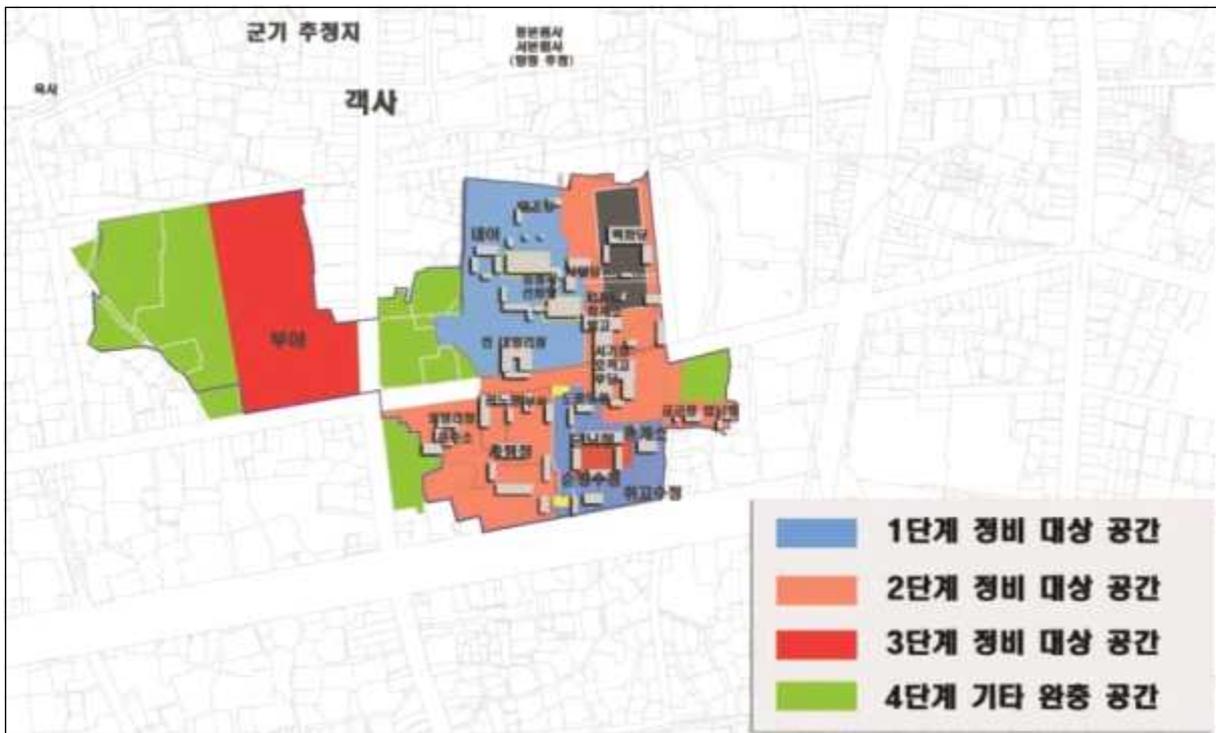
항 목	허 용 기 준		
	평 지 봉	경사지봉(3:10이상)	용 도
1구역	○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9층 이상 건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 (예: 지붕-회색, 밤색 등/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7)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복원·정비의 단계별 계획



<단계별 복원 정비 대상 공간>



(8) 종합 의견

- 대구는 신라·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주요 행정지역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원감영(원주), 경상감영(대구), 충청감영(공주), 전라감영(전주), 경기감영(서울, 수원, 광주, 영평)의 자취가 남아있으며, 강원감영과 대구의 경상감영도 그 원형의 자취가 잘 남아 있음.
- 1601년(선조 34)에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조선시대 감영지가 보존되고 있으며,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 위치에 보존되어 있고 원래의 관아 문인 관풍루가 달성에 이전 복원되어 있음.
- 또한 2015년 시(발)굴 조사를 통해 현재의 건물 외에도 감영 부속 건물지가 잔존함을 확인하였음.
- 그리고 경상감영과 관련된, 학술자료·문헌자료·고지도·엽서·사진·도면 등이

풍부하여, 향후 발굴조사 성과에 더하여 충실한 고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이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단, 지정구역의 범위에 있어서는 현재 선화당과 징청각이 잔존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하여 유구가 확인된 공원구역만 사적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그 주변에 대하여는 향후 학술적인 조사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바.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12.06/문화재위원 ○○○, ○○○, ○○○)

(가) 문화재위원 ○○○

- 경상감영은 감영의 중심 영역이 잘 보존되어 있고 징청각과 선화당이라는 본당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관풍루라고 하는 감영의 정문이 옮겨져 있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차후 원위치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최소한 중심축에 해당하는 관풍루, 포정문, 선화당, 징청각 영역이 문화재 영역으로 지정되어 장기적으로 원형을 회복해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문화재위원 ○○○, ○○○

- 확대지정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역사성을 더 확연히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도한 복원은 현상유지보다 졸속한 문화재 관리인 경우가 있다.
- 현재의 상태는 문헌자료의 확보, 시굴조사의 확증 등을 통하여 복원, 유지 가능하다고 여겨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2)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 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동	1	대	588.4	588.4		
2	전동	2-1	대	3.3	3.3		
3	전동	2-2	대	33.1	33.1		
4	전동	20-1	대	179.2	179.2		

5	전동	21-1	대	366.6	366.6		
6	전동	22	대	201.7	201.7		
7	전동	23-1	대	196.0	196.0		
8	전동	23-2	대	2,450.3	2,450.3		
9	전동	24-2	대	79.3	79.3		
10	전동	24-6	대	103.1	103.1		
11	전동	27-1	대	136.2	136.2		
12	전동	27-4	대	18.2	18.2		
13	포정동	21	공	13,814.2	13,814.2		
14	포정동	26-6	대	3.3	3.3		
15	포정동	26-17	대	15.9	15.9		
16	포정동	30-1	대	156.4	156.4		
17	포정동	31-6	대	412.6	412.6		
18	포정동	33	대	1,279.3	1,279.3		
19	포정동	33-1	대	16.5	16.5		
20	포정동	34	대	1,421.0	1,421.0		
21	포정동	35	대	2,845.4	2,845.4		
22	포정동	38	대	878.9	878.9		
23	포정동	40	대	1,049.3	1,049.3		
24	포정동	40-1	대	633.8	633.8		
25	포정동	51-1	대	224.8	224.8		
26	포정동	51-3	대	33.1	33.1		
27	포정동	51-4	대	79.3	79.3		
28	포정동	51-5	대	86.0	86.0		
29	포정동	52	대	33.1	33.1		
30	포정동	52-1	대	9.9	9.9		
31	포정동	52-2	대	36.4	36.4		
32	포정동	52-3	대	89.3	89.3		
33	포정동	52-4	대	95.9	95.9		
34	포정동	52-5	대	133.2	133.2		
35	포정동	52-6	대	145.5	145.5		

36	포정동	52-7	대	9.9	9.9		
37	포정동	52-9	대	4.0	4.0		
38	포정동	52-10	대	26.8	26.8		
39	포정동	52-11	대	24.5	24.5		
40	포정동	54-3	대	851.5	851.5		
41	서문로 1가	1-1	대	79.3	79.3		
42	서문로 1가	1-2	대	29.8	29.8		
43	서문로 1가	1-3	대	13.2	13.2		
44	서문로 1가	1-4	대	3,471.1	3,471.1		
45	서문로 1가	1-5	학	8,482.6	8,482.6		
46	서문로 1가	1-9	대	6.6	6.6		
47	대안동	75	대	277.7	277.7		
48	대안동	75-1	대	7.0	7.0		
49	대안동	76	공	806.3	806.3		
50	대안동	76-2	대	89.3	89.3		
51	대안동	76-3	대	1.7	1.7		
52	대안동	76-4	공	58.2	58.2		
53	북내동	51-3	학	223.3	223.3		
54	서내동	62	학	2292.9	2292.9		
55	서내동	66	학	578.5	578.5		
56	서내동	71	학	366.9	366.9		
57	서문로 1가	84	도	4836.2	288.1		
58	포정동	87	도	7030.9	2,368.2		
59	전동	72-1	도	316.6	58.4		
60	서내동	72-39	도	114.2	114.2		
계				57847.5	48,378.5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p>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p> <p>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p> <p>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p> <p>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p> <p>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p> <p>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p> <p>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p> <p>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p> <p>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p> <p>마. 제단, 지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p> <p>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p>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정범위는 선화당, 징청각 및 건물지가 확인된 공원구역에 한함.

6. 경주 월성 수목 및 주변 환경정비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의 수목 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신라시대의 왕성인 경주 월성은 무분별한 수목의 성장으로 성벽 훼손 및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 유적 보호와 문화재 경관 개선을 위해 월성에 대한 수목정비와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일원

(3) 신청내용<경주 월성 수목 및 주변 환경정비>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수목정비>

- 정비규모 : 총21종 527주 제거(전체 수목대비 약 16%)

· 외래수종 제거(아카시나무 등 2주, 가중나무 등 3종 균식 제거)

· 고사목 제거(40주)

· 밀식목 및 시각 차단 수목 제거(월성 남동측 대나무 군락 제거/1,000m²)

<주변 환경정비>

- 우물주변 및 진입로 잡초 제거(280.0m²)

- 우물주변·진입로 마사토 포장(두께 10cm/면적 127m²) 및 경계로프 설치 (길이 80.0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문가 자문 후 시행

7. 여주 영릉과 영릉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내에 효종대왕 영릉 석물보존처리, 금천교 정비, 효종 영릉 재실 정비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효종대왕 영릉의 석물이 지의류 등에 의해 오염된 상태로 석재의 내구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존처리하고자 함
- 금천교 석재가 이완·침하되어 있어 원형복원을 위한 드잡이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 훼손된 여주 효종 영릉 재실의 담장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높게 복토된 지반을 정비하여 묻혀있는 기단을 드러내고,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반정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제195호)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1
- (3) 신청내용<문화재 보수·정비 공사>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효종대왕 영릉 석물보존처리 : 석마 8기, 석양 8기, 석호 8기, 무인석 4기, 문인석 4기, 장명등 2기, 망주석 4기, 난간석 2식, 정자각 기단 1식
 - 금천교 드잡이 공사 : 석주 2기, 귀틀석 2기
 - 효종 영릉 재실 정비 공사 : 담장, 지반 및 배수로 정비 1식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

- 금천교는 이완된 석재를 해체하여 드잡이한다.
- 석물과 정자각 기단은 오염 종류에 따라 세척 및 보존처리 한다.
- 건물 배면은 기존 석축을 정비하고 자연배수를 유도하며 개거식 배수로는 안향청 전면과 채실 동쪽 담장선에만 설치한다
- 외곽담장은 콘크리트 기초까지 해체하여 전면수리하되 지반 높이 조정에 따라 내외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담장 최고 높이는 기존 높이를 유지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8. 고양 서삼릉 내 정문 정비 공사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내 정문 정비 공사를 하
고자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양 서삼릉 능제복원기본계획에 따른 현진입부를 복원정비 실시하고 현 정문에서 남쪽 나대지로 정문을 변경하여 관람객 편의를 위한 매·수표소, 해설사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삼릉(사적 제200호)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
- (3) 신청내용<정문 정비 공사>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문화재구역)
 - 공사내용
 - 정문 이전설치 공사
 - 매표소, 수표소 재설치
 - 정문 진입로 정비(657.42m³)
 - 의령원·효창원 관람로 신설설치(99.48m³)
 - 종합안내판 이전설치 등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6.09.29/문화재전문위원 ○○○, ○○○)
 - 매·수표소는 의령·효창원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탐방교차로 남쪽으로 배치하도록 함.
 - 의령·효창원 전면지형(현 정문지역)은 회복하도록 하고, 탐방로를 개설하도록 함.

- 소방도로는 정문 출입구와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함.
- 매·수표소 신축시 주변 수목은 최소한으로 이식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14-080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연결 유적지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21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종로구	○○○	<한양도성 연결 유적지 내 엘리베이터 설치, 바닥흔적표시, 보행길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창동 235-1 ○ 사업내용 :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변경 (남측으로 5m 이동)	허가	'16.12.01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중구	○○○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 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26-33 ○ 사업내용 : 건축물 용도 변경(점포 및 주택→근린생활시설(소매점,사무소)) - 변경공사 없음	허가	'16.12.05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종로구	○○○	<서울기상관측소 리모델링 등>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1-1 ○ 사업내용 - 서울 기상관측소 리모델링(건물 외관 1/4 이내 및 내부) - 서울 기상관측소 용도변경 : 사무실 →박물관	허가	'16.12.09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8-1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68.00m ² - 건축면적 : 100.24m ² - 연 면 적 : 290.06m ² - 규 모 : 지상4층(12.95m) - 용 도 : 다세대주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허가	'16.11.2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송파구	○○○	<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93-2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21.73㎡ - 건축면적 : 72.00㎡ - 연 면 적 : 199.62㎡ - 규 모 : 지상4층(11.5m) - 용 도 : 다세대주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16.11.28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수목 벌채>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산39-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0m 이격/1, 5구역, 구역외) ○ 내용 - 사업면적 : 7.48ha(작업로 950m)	허가	'16.11.2'4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 행단	충남 아산시	○○○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242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28㎡ - 건축면적 : 99.06㎡ - 규모 : 1층(최고높이 6m, 경사지붕)	허가	'16.12.06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충남 서산시	○○○	<근린생활시설 증축> ○ 위치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7-1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증축(1층, 당초 건축면적 75.32㎡, 금회 증축면적 42.96㎡)1	허가	'16.11.24
사적 제124호 덕수궁	서울시 중구	○○○	<이동통신IP주 설치> ○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5-5 ○ 사업내용 - 이동전화 품질개선을 위한 이동통신 IP주(H=5.0m) 2본 설치	허가	'16.12.01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전남 진도군	○○○	<토석 채취> ○ 위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송산리 5, 10번지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m 이격/2구역) ○ 내용 -사업면적 : 3,698㎡	허가	'16.11.24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와 성균관	서울시 종로구	○○○	<가건물 이전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53 ○ 사업내용 : 가건물(가로2.8m×세로 5.8m×높이2.5m) 이전(유림회관 서측에서 비천당 남측으로) ○ 허가조건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 시 가건물은 철거합니다.	조건부 허가	'1611.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경북 경주시	○○○	<황복마을 상강선 농로정비공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897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농로포장(면적 944㎡) - 토공 : 소형고압블럭철거 A=944㎡ - 포장공 : 소형고압블럭포장 A=944㎡ - 성토최고 높이 : 현재 도로높이와 동일	허가	'16.12.01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	<이동통신주 설치>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25번지 24호(4구역:경사18m) ○ 사업내용 - 강관주(H=25m)	허가	'16.11.18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시 송파구	○○○	<석촌지하차도 복개공사(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99, 308 ○ 사업내용 : 지하차도 도로 구조 개선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16.11.26~'16.12.31→ (변경) '16.12.5~'17.12.31 - 복개 규모 축소 : (당초)폭34.9m→(변경)23.4m	허가	'16.12.05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서울시 종로구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38-2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36.50㎡ - 건축면적 : 102.00㎡ - 연 면 적 : 482.56㎡ - 규 모 : 지상5층(19.8m)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주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허가	'16.11.28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전남 나주시	○○○	<도로 개설> ○ 위치 : 전남 나주시 남외리 12-18 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4구역) ○ 내용 - 연장 86m / 폭 8m	허가	'16.12.05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시 종로구	○○○	<보행환경 개선>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9-3 일대 ○사업내용 - 범위 : 길이 240m(폭 6~8m) - 시설 : 도로 포장, 도로 영역 재구성, 공공시설물(진신주, 맨홀, 재활용센터 입구 등) 정비, 지장목 제거, 이동식 화분 설치 등	허가	'16.12.05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	제주도 제주시	○○○	<관아 내 수목정비>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이동 1045 번지 1호(문화재구역) ○ 내용 - 태풍 차바 피해목 수목 13주 전정, 팽나무(향토수종) 3주 식재 ○ 허가조건 - 식재시 담장과 이격거리 확보	허가	'16.12.05
사적 제414호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충북 진천군	○○○	<입목벌채> ○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산40-1 ○ 사업내용 : 입목벌채 후 조림 - 면적 : 3.73ha	허가	'16.11.16
사적 제414호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충북 진천군	○○○	<농로 포장> ○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13, 14, 594-40 ○ 사업내용 : 농로 포장 60m(폭3m)	허가	'16.11.22
사적 제415호 청주 정북동 토성	충북 청주시	○○○	<배수관 등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군 정북동 515, 502 ○ 내용 : 배수관(1m*1m*206m) 및 용수관(0.6m*0.6m*368m) 설치	허가	'16.11.17

다. 의결사항

- 접수